

# 不法建築物處理등眞相把握特別委員會會議錄

第39回平昌郡議會

第 2 號

平昌郡議會事務課

日 時 : 1996年 3月 15日(金)10時00分

場 所 : 不法建築物處理등眞相把握特別委員會會議場

議事日程 (第2次 不法建築物處理등眞相把握特別委員會議)

1. 不法建築物處理등眞相把握의件

審査된 案件

1. 報告事項 \_\_\_\_\_ 2 面

2. 不法建築物處理등眞相把握의件(質疑·答辯) \_\_\_\_\_ 2 面

(10時 00分 開議)

○ 委員長 李慶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불법건축물처리등진상과악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어제 있는 현지확인 활동

에 한분도 빠짐없이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실시한 현지확인과 서류 검토 결과를 중심으로 관계인에 대한 질의·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명쾌하고 심도있는 질의와 소신있는 답변을 통해 진지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

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李慶鎭 :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1. 報告事項

(10時 03分)

○ 議事係長 咸京鎭 : 의사계장 함경호입니다.

오늘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금일 당특위에 출석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부군수, 사회과장, 축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봉평부면장, 봉평면 산업개발계장, 이상 7명입니다. 외부 참고인으로는 봉평면 평촌리 황보한 전 면장님과, 동마을 광희중, 창동1리 문종옥씨, 이상 3명이 되겠습니다. 금일 출석대상 공무원중 도시과장과 건설과장은 장기 출장으로 주택계장과, 지역계획계장이 각각 출석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2. 不法建築物處理等眞相把握의件

(質疑·答辯)

(10時 07分)

○ 委員長 李慶鎭 : 의사일정 제1항 불법건축물처리등진상과악의견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특위에 출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3월 11일 당특위 제1차 회의 의결로 서류제출과,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토록 요구하여 현지확인파 서류 검토를 거쳐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행은 사전에 협의 된 대로 관련분야에 대한 상황보고는 기 제출되어 배부한 유인물로 가뵐하고, 곧바로 관계인에 대한

<p>일괄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p> <p>또한 질의는 오늘 출석하여 주신 관계인 중 안전과 관련된 어느분에게도 할 수 있으며,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분야별로 답변을 듣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건은 주민과 직결된 중요 사안임을 염두에 두시고, 질의와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p> <p>따라서 의제 외의 질의는 가급적 지양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p> <p>그럼 출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자기 소개가 있겠습니다.</p> <p>먼저 축산과장님부터 차례대로 자리에서 일어 나서서 소관 사무명과 자기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畜産課長 鄭義秀 : 축산과장 정의수입니다.</p> <p>저희과 담당사무는 축사시설분야 입니다</p> <p>○ 社會課長 金榮柱 : 사회과장 김영주입니다.</p> <p>담당사무는 식품위생접객업허가 분야입니다.</p> <p>○ 地域計劃係長 李永範 : 건설과 지역</p>	<p>계획계장 이영범 입니다.</p> <p>담당사무는 하천무단점용 분야입니다.</p> <p>○ 住宅係長 朴鍾吉 : 주택계장 박종길입니다.</p> <p>담당사무는 불법건축물 분야 입니다.</p> <p>○ 蓬坪 副面長 李聖均 : 봉평 부면장이성균입니다.</p> <p>담당사무는 불법건축물처리등 종합 분야 입니다.</p> <p>○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蓬坪 産業開發係長 유영환 입니다.</p> <p>담당사무는 불법 건축물처리등 종합 분야 입니다.</p> <p>○ 委員長 李慶鎭 :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p> <p>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李洙現 委員 : 이수현 위원 입니다. 먼저 산업개발계장님한테 문종옥 불법건축물에 대한 질의를 몇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p> <p>도시계획구역내의 건축행위는 건축법 제9조에 의거 신고후 이루어져야 하나, 신</p>
--	--

고 절차없이 무단 증축하여 건축법 제 80조 규정에 의거 고발하게 되었다고 우 경운씨의 임의 진술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고발하게 된 날짜가 몇일입니까?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고발하게 된 날짜는 9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고발이 늦어진 경위가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고발이 늦어진 경우는 당초 6.27지방선거에 불법 사항이 이루어진 걸로 제가 파악 했습니다. 그후 2차에 걸쳐서 원상복구 지시를 내렸고, 그런 시간적 여유가 9월달 까지 가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그리고 경위서에 보면 7월 19일 건축물불법증축사항에 대하여 군청에 보고를 하셨는데, 사회과에 보고를 하셨다고 하였는데, 다시 말해서 도시과에는 보고를 안하셨나요?  
이사실을?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저는 도암면에서 근무하다가 8월 14일자로 봉평면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李洙現 委員 : 그러면 95년 9월달에 건축법위반 건축주 고발조치하셨다고 하셨는데, 서류상으로 보면 면장 미결재로 미시행으로 나와 있는데, 면장님이 미결재 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실무자가 결재를 올렸는데, 면장님이 결재를 안하셨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면장님이 안하신 이유는.

○ 李洙現 委員 : 담당자한테 면장님이 미결제한 이유에 대해서 들으신바 없습니까?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들은 내용은 준수님하고 얘기가 있지 않으셨나, 담당자로 부터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부면장님과, 산업개발계장님께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면장님의 미결재로 공문을 시행하지 못 했는데, 고발조치 그과정에서 산업개발

계장님과 부면장님은 결재를 다 하셨어요?

○ 蓬坪 副面長 李聖均 : 네, 했습니다.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네.

○ 禹康鎬 委員 : 그럼 계장님하고 부면장님은 하셨는데, 면장님 혼자 안하십니까?

○ 蓬坪 副面長 李聖均 : 네,

○ 禹康鎬 委員 : 95년 8월달, '95년 9월달, 2건 다 그렇습니까?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네.

○ 禹康鎬 委員 : 그다음 '95년 7월 19일 건축물불법중축사항에 대해서 군청 사회과에 보고 하였는데, 사회과에서는 이것을 보고받은 후에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 社會課長 金榮柱 : 사회과에서는 읍면에서 보고 들어온것이 7월 19일자로 들어 왔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네,

○ 社會課長 金榮柱 : 읍면에서 시행한 일자가 7월 19일인데, 우리가 접수한 일자는 7월 20일로 접수 되고, 이규을씨

가 명의변경허가하고, 구조변경을 신청한것이 7월 20일, 같은 날짜로 들어 오게 되었는데, 사회과에서는 제일 먼저 식품접객업 구조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서류 보안을 냈는데, 20일자로 신청한 일반음식점 구조변경 허가는 영업자 승계신고 신청건은 신고처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명의 변경은 신고 입니다.

구조변경관계는 허가 사항인데, 건축물 대장에 명시된 면적에 불일치 하기 때문에 보안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보안을 시켜서 원상복구 이후에 다시 처리해 주겠다고 1차 보안을 했습니다.

명의변경하고 지위승계는 그때 즉시 해주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러면 그부분에서 나중에 영업허가를 내줄때 불법건축물하고 상관없는, 그러니까, 고래뱃속 건물상 우측면에 튀어 나온 부분, 그부분은 실지 불법건축물하고 상관없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를 왜 막으라고 했습니까?

○ 社會課長 金榮柱 : 저희들이 1차 보완이 나갈때도 우리 제출서류에 다 있지만 오른쪽으로 무허가 중축분에 대한 제한 통보를 1차로 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오른쪽 부분이 불법건축물이 아닌데, 어떻게 통보를 합니까?

○ 社會課長 金榮柱 : 위생계에서는 현지에 나가 보니까, 건물의 도출부분이 불법건축물로 판단을 하고, 건축물대장에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 도출된 부분이 아니고, 앞면이 전부 돌출되어 있으니까 오른쪽 부분을 불법건축물로 판단을 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판단을 자기 판단이지 실질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이라든가, 아니면 서류를 확인 안해 보고 가서 그 즉시 판단해서 불법건축물로 간주한 것이 아닙니까?

○ 社會課長 金榮柱 : 네,

○ 禹康鎬 委員 : 업무 미숙으로,

○ 社會課長 金榮柱 : 그러니까, 누구든지 현장에 나가니까, 건축물대장상에 일

직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돌출부분이 불법건물이 아니냐, 실무자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부분을 보완 지시를 했죠.

○ 禹康鎬 委員 :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李洙現 委員 :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몇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서는 서류를 검토해 보면 불법건축물인줄 알면서도 결국에는 허가를 내준 결과가 되었어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社會課長 金榮柱 : 사실상 현재에 와서는 왼쪽 부분이 불법 건축물이고, 오른쪽은 불법 건축물이 아닌데, 그때 당시 파악을 1차 보완때부터 계속해서 오른쪽 부분이 불법 건축물로 파악 되었기 때문에 오른쪽을 보완하여 신청면적이 오른쪽 부분만 막으면 전체 면적이 되고 또, 우리는 영업허가를 불법건축물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위생계에  
에서는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구조변경  
에서 안쪽의 뒷쪽면으로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뒷면적만으로 신청 면적이  
다 카바되기 때문에 앞쪽을 가려서 민원  
을 처리해 주는데, 사실 세를 들어 있는  
사람, 이규을씨라든가, 지금 현재 영업  
을 하고 있는 사람이 세를 주고 있던 상  
태에서 계속해서 영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업허가가 들어 올때  
시설을 먼저 하고 들어 옵니다.

전에는 우리가 나가서 시설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현재는 영업허가가 들어  
올때 시설을 다 한후에 우리가 나가서  
점검만 하고 거기에 맞으면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어, 제도상 이렇게 바뀌  
었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구조 변경을 해  
놓았습니다.

식당안의 객실을 앞으로 늘리고, 조립식  
으로 뒤를 늘리는 구조 변경을 다 한 상  
태이기 때문에 신청한 면적을 다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민원해결 차원에서 문  
제가 없지않나 해서 허가를 해준 것은

사실입니다.

○ 李洙現 委員 :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관계공무원의 출장복명  
서에 보면 불법면적 1.5m'에 대하여 합  
판으로 박아 벽지를 붙인점을 감안 변경  
처리하여 영업을 할수 있도록함이 타당  
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의 현지확인  
결과 우강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영  
동한 부분을 불법건축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그 지역을 합판으로 막아서 면적을  
맞추는 형식을 갖추었어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확인 하는 과정도 잘못되었고,  
사회과에서는 이부분이 불법건축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도 모르고 시행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  
십니까?

○ 社會課長 金榮柱 : 현재 위원님 말씀  
이 타당하다고 생각 하는데, 그때 당시  
에는 우리 실무자들이나, 현지에 나간  
분들이 전부 돌출부분이 무허가 건물로  
판단을 했던 것이 착오가 되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분명히 그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죠?

○ 社會課長 金榮柱 : 네,

○ 李洙現 委員 : 그당시 면사무소 관계 공무원은 만나왔습니까?

○ 社會課長 金榮柱 : 면사무소 공무원은 만나왔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이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실지로 뒤에 있던 내실을 구조변경을 하여 판자로 막아서 면적을 맞추기 위해서 막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10평정도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허가 사항이 아닙니까?

○ 社會課長 金榮柱 : 구조가 늘어난 것은 허가 사항입니다.

84년도부터 허가 났을때에는 22㎡인데, 건물면적 전체는 76㎡입니다.

현재 허가 면적은 58㎡ 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늘릴때 36㎡가 늘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실지 10여평 늘어난 사항이죠?

○ 社會課長 金榮柱 : 예, 한 10평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때는 지금 조리실 있는곳을 안쓰고, 조리실을 뒤쪽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10평정도 늘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그러면 영증한 부분을 잘못알고 행정지도를 하신 사항인데,

○ 社會課長 金榮柱 : 저희들은 사실 영세민들이고 해서 계속해서 영업을 안한 상태에서 신규로 허가를 낼때에는 모르겠는데, 계속 영업을 했습니다.

84년부터 꾸준하게 영업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승계 되어도 계속 하고, 우리가 구조변경허가하고, 명의변경 허가를 할때도 계속 그장소에서 영업을 계속 했습니다.

쉬고 있을때가 아니고, 계속 한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세를 든 사람들의 생계문제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착오로 돌출부분을 착오로 막은 해당 면적에 대해서 영업 허가를 해준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시인 합니다.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 하려고 하고,

저희들이 늘 교육을 받기를 문민정부 이후에 관용심사위원회라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업무를 조그만 법적인 착오 문제가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라, 그래서 그런 문제는 관용심사위원회에서 전부 카바를 해 주겠다. 이런식으로 교육을 2년동안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자세를 갖다 보니까, 그런 착오를 일으킨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洙現 委員 : 산업개발계장께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처음에 고래뱃속 영업집이 사실 저희들이 어제 현지확인을 나갔을때에는 불법건축물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측량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기 전에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을 면사무소에서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지역주민의 고발이 있었다든가, 실지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하여 그결과를 알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것 같은데,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그부분

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파악을 했습니다. 인적사항은 어느분이라고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실무자에게 직접 전화가 온걸로 불법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해 달라는 전화가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지역주민의 고발로 인해서 처음에 적발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네,

○ 李洙現 委員 : 알겠습니다.

○ 金鍾永 委員 : 김종영 위원입니다. 지금 6페이지 첫장에 보면 임의진술서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무단중축이라고 해서 고발을 하셨는데, 무단중축이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그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구역내에 소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중축신고, 모든 사항이

접수처리가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신중하게 파악하기를 벽체만 벽돌로 가는걸로, 본인이 와서 수선을 하겠다고 해서 구두로 벽체만 하나 그렇게 하라고 얘기가 되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도시계획구역내에 소방도로라든가 저촉사항이 없었다면, 신고가 가능한데, 그부분이 도시계획상 소방도로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신고처리를 할 수 없는 완전 불법이 되었습니다.

○ 金鍾永 委員 : 일단은 가옥 주인이 면사무소에 신고는 했죠?  
수선 하겠다고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金鍾永 委員 : 수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무단은 아니잖아요.

이사람이 신고를 해놓고 중축 할때 조금 불법을 했다는 거지, 무단중축이란 것은 아무말없이 공사를 한후에 발견된것이 무단 중축이 아닙니까?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그것은

우경운씨가 파악하기를 그분이 오셔서 지붕도 새고해서 지붕하고, 벽체만 벽돌로 다시 쌓겠다고 해서 절대 중은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해 놓고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鍾永 委員 : 그러면 조금전 답변에 9월초에 고발 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고발후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었습니까?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고발하려고 서류를 면장님 결재과정에서 결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후에는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 金鍾永 委員 : 그러면 일단 담당계장님은 고발조치를 했는데 면장님께서 결재를 안해서 고발을 못했다는 말씀이죠?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예

○ 金鍾永 委員 : 그다음장 경위서를 보면 주요구조부 지붕틀 3개이상 해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리가가능하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때 고래뱃속 수리 한것을 봤을 때 크게 수리를 했다고 봅니까?

소 수선입니까?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대수선

은 아니고, 소수선입니다.

○ 金鍾永 委員 : 그런데 사실 여기에 보면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얘기를 할때 여기는 소방도로가 접촉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안된다는가 하는 이런 얘기를 안해주었잖아요?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조금전과 중복된 말씀입니다마는 당초에 그분이 오셔서 벽채만 벽돌로 수리하고 지붕도 일부만 수리하겠다고 해서 하라고 한것이지 증축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축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 金鍾永 委員 : 계장님 이집은 불법건축물이라고 하기는 어려운것 같은데, 공무원이 어떻게든 답변을 했어요. 소수선은 가능하다. 그런데 사실 이집이 한것을 보면 대수선이 아니라 소수선이인데, 차후에 소방도로에 지축이 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것은 불법건축물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사실 읍면에서 행정을 하기는 주민의 약간의 불법이라든지, 위법은 다소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것들을 강력히 단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될수 있으면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넘어가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전화상으로 고발이 들어 왔기 때문에 어차피 처리를 하지 않을수 없었던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金鍾永 委員 : 그리고 면장님이 결재를 안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책임은 전부 면장님 한테 있네요.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책임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를 할려고 해도 면장님 결심이 나지 않으니까 처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 金鍾永 委員 : 면장님이 무엇때문에 결재를 안한다는 이유가 없었어요?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조금전에 말씀 드렸지만, 군수님하고 전화 통화가 있지 않았나 생각 합니다.

○ 李洙現 委員 : 그러면 그부분에 대해

서는 담당계장으로서 부면장까지는 결재가 나지 않습니까?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예

○ 李洙現 委員 : 면장은 결재를 안했죠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예

○ 李洙現 委員 : 그러면 현재 고발조치를 안한 상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으로서 책임이 면장한테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담당 계장한테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책임 한계를 물으신다면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 李洙現 委員 : 현재 담당계장은 결재를 하셨잖아요.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예

○ 李洙現 委員 : 부면장까지 결재가 났고, 면장 결재가 나지 않아서 고발조치를 안하신 사항 아닙니까?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예

○ 李洙現 委員 : 제가 생각하기에는 책

임이 면장한테 있다고 생각 되는데,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일단은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저희들도 황면장님을 강력히 설득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내포되니까, 면장님이나, 저나 모두에게 있는 걸로 생각 합니다.

○ 李洙現 委員 : 지금 말씀 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계장님은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고, 서류상으로 봤을때는 결국 결재하고 고발처리하지 않은 책임은 면장한테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책임이라는 것은 한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어떤 문제라도 복합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꼭 면장님만 책임이 아니고,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 金鍾永 委員 : 한가지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고래뱃속하고, 불법건축을 해서 거주하는 봉평 주민인데, 두사람이 면장을 찾아가서 잘좀 봐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두집은 잘 봐 주겠다고 면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마는 그것은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해 봐야 알겠죠.

일단 이것을 볼 때에는 공무원들이나 계장님은 고발하려고 했는데, 면장의 미결재는 면장한테 책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劉燉文 委員 : 유돈문 위원입니다. 부면장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우경운씨가 출장복명서를 낸 것을 보면 부면장이 결재하시고, 면장이 결재를 안한 사유를 알고 있으리라 생각 하는데, 면장님이 결재를 안한 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린 적도 없습니까? 안한 걸 봐서는 면장이 봐주라는 것을 양성화 시킨 것 아닙니까?

부면장이 뭐라고 얘기를 해 봤어야 되잖아요.

○ 蓬坪 副面長 李聖均 : 제가 결재한 후에 담당 직원이 면장님 결재를 득하려 가니까, 저는 올라 가면 말아 오는 줄 알고 당분간은 몰랐죠?

○ 劉燉文 委員 : 지금까지 몰랐다면 말이 안되고, 또 출장복명서를 보면 부면장님이 결재를 했잖아요.

○ 蓬坪 副面長 李聖均 : 예

○ 劉燉文 委員 : 또 면장 결재를 못 받았어요.

그때까지 못받은 것을 몰랐다면 말이 안되고,

○ 蓬坪 副面長 李聖均 : 결재 과정에 평상시 제 결재가 나면 면장님이 해주는데, 이 사항은 했는지, 안했는지 당분간은 몰랐습니다.

○ 劉燉文 委員 : 모른 대신 민원인한테 공문이 갈수 있습니까?

민원인한테 나간 것 아닙니까?

불법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면장도 결재를 해야지, 부면장만 결재하고, 민원인한테 어떻게 공문을 시행할 수 있습니까?

○ 蓬坪 副面長 李聖均 :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다가 면장님 결재가 만나서 시행을 못한 거죠.

○ 劉燉文 委員 : 그러면 직원이 부면장한테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 민원인한테 발송을 못한것을 부면장이 알고 있어야 하는데, 몰랐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면장님이 양성화 하라고 해서 봐 준것 밖에 안되잖아요.

이서류를 보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토목기사가 또다시 결재를 맡았습니다. 계장님 말고, 부면장님한테 또 맡았어요.

그럴때에는 불법건축물이라고 통보를 못했다고 해서 다시 출장을 나가 출장복명서를 올렸을때 면장님이 또 안했어요. 그런데도 부면장이 아무응답이 없이 넘어 간다면 면장이나, 부면장님이 양성화 하겠다는것 밖에 안된다고요.

서류를 봐서는, 밑에 계장님이 아무리 해도 안되잖아요.

위에서 묵인해 버리니까 안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물이 양성화 된것 아닙니다.

조금전에 사회과장님 말씀 하시는데, 면사무소에 고발되어 불법 건물로 되어 있

는데 영세민이라 해서 영세민 업자를 돌보기 위해서 불법건물에 허가를 해준다면, 평창군내에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양성화 시킨것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蓬坪 副面長 李聖均 :차후에 제가 확인을 못한것이 제 불찰입니다.

○ 劉燉文 委員 : 면사무소앞인데 확인을 못했다는것 보다는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할때 눈으로 보이고, 지나가면서 다 보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니까, 지금 문제화 되어 지금 현재 와서 부면장님이 면장님이 결재를 안한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면장님과 면장님 사이에 얘기가 있어야지, 없었다는것은 양성화 시키겠다고 면장이나, 부면장의 타협이 다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저희는 그것밖에 인정을 안합니다.

○ 禹康鎬 委員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부면장님께서나, 산업개발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모회의때 혹시 면장님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있었던 말씀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참모회의때 고래뱃속에 관해서 특별한 얘기가 단 한번도 없었습니까?

○ 蓬坪 副面長 李聖均 : 특별히 말한 사항은 없었는데요.

○ 禹康鎬 委員 : 부면장님께 개별적으로, 산업개발계장님께 개별적으로도...

○ 蓬坪 副面長 李聖均 : 개별적으로도 없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럼 부면장님이나 산업개발계장께서 면장님한테 한번 말씀 드린 적은 있어요?

그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이든, 아니면 유돈문 위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이든, 사실 민원화 되고 있는데, 결재를 안하고 계시는 이유에 대해서, 아니면, 결재를 하시도록 중용했던 적은 있습니까?

○ 蓬坪 副面長 李聖均 : 제 기억으로는 없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산업개발계장님은?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그부분

대해서 면장님께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산업개발업무중 이 건축분야에서 불법건축물은 다소간에 작던 크던간에 단속을 애시당초 못하면, 차후에 생기는 건물에 대해서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실무자에게 이러 이러한 사항들은 강력히 하고, 막말로 나가서 불법이 되면 험 정도로 해야 된다, 강력한 지시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제가 나가 보니까 다 완공된 부분이고, 1차 철거통보까지 한 사항에서 제가 2차 통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면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해서 주민의 여론이 많으니까, 철거를 해야 되지 않나,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때 면장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말씀 하셨습니까?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면장님께서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

지 않나, 강력한 부분에서 하면 그 나름대로 문제가 파산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어려우면서도 정식으로 부면장까지 결재를 하셨는데, 면장님 결심을 안 얻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후에 확보한 면장님과 중점적으로 그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불려고 제가 두분께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제가 산업개발계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고래뱃속문제를 소수선에 해당 된다고 하신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예

○ 李慶鎭 委員 : 주택계장님 이부분이 소수선입니까? 대수선입니까? 중축입니까?

○ 住宅係長 朴鍾吉 : 기존건물에 내부수선에 해당하는것은 건축법상에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산업개발계장님이 소수선으로 답변을 한것

같습니다.

허가 대상이라고 하면, 대수선이라고 말씀하였을텐데, 기존 건물은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중축된 부분은 수선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허가대상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 李慶鎭 委員 :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수선이나, 대수선이나, 중축이나, 이상황에 따라서 여러가지 적용하는 법이 다른데, 소수선에 해당하는지 대수선에 해당 되는지, 째뽕되는 부분도 있고, 앞에 새로된 부분은 중축된 부분이 있는것 아닙니까?

○ 住宅係長 朴鍾吉 : 예

○ 李慶鎭 委員 : 위원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洙現 委員 : 부면장님께 한가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처리계획에 보면 본인이 도시계획상 도로편입된 불법 중축된 건물에 대하여 도시계획 집행시 반드시 본인의

비용으로 자진 철거 하고, 보상등 일체의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도시계획 이행시까지 계속 영업할 수 있게 하며, 위 사항에 따른 일시 철거 및 유보 조치코자 합니다.

결국 이야기는 불법건축물을 인정하겠다는 내용 아닌가요?

○ 蓬坪 副面長 李聖均 :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당장 소방도로가 안나니까, 소방도로가 날때까지는 당분간 영업은 하되 소방도로가 나게 되면 자진철거 하고 모든 보상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뜻에서 이것을 처리 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당초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라면 모를까, 현재 이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데, 계속 인정하겠다는 내용으로 받아 들이는데, 다른 사람이 만약 이런 행위를 했을 때 또 이렇게 처리 하실 겁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야기되고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계속 일시 철거 및 유보조치코자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불법건축물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해서야 앞으로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개인 사정이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봤을때에는 저도 부면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이 이것을 계속 유보조치만 해서 될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蓬坪 副面長 李聖均 : 그래서 처리계획은 앞으로 유보조치를 안하고, 고발조치 할려고 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고발조치해서 철거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불법건축물처리계획에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이부분은 새로운 면장님이 오시자마자 강력하게 집행 할 수 없는 사항이 있고 해서 일단은 내부적으로 처리계획을 세워보려고 해서 세운것이고, 이것은 사실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고발을 하는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 金斗經 委員 : 김두경 위원 입니다.  
처음에 건물 수리신고시에 지붕 일부 수리냐, 그렇지 않으면 벽체 수리냐, 어느 것이 신고입니까?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신고는 지붕 3개이상을 뜯었을때, 도시계획구역 내에 15평미만에 중축한다든지,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고사항이 아니고, 본인이 와서 단지 벽체만 다시 벽들로 쌓는다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고 사항은 아닙니다.

○ 金斗經 委員 : 이것을 제가 왜 묻냐 하면, 문종옥 민원인께서 지붕수리로 신고를 안했다, 분명히 이것을 왜 지붕 신고 수리로 넣었느냐, 하면서 지난번에 전화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담당 직원의 출장복명서도 있고, 면에 서류가 있으니까 면에 가서 검토를 해 보시고 말씀을 하세요.

하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분명히 처음 신고시에는 지붕수리가 맞

죠?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구두로 지붕일부 하고 벽체를 벽들로 쌓겠다는 말을 실무자한테 들었습니다.

○ 金斗經 委員 : 그것은 처음에 구두로 말씀을 하셨죠?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예.

○ 金斗經 委員 : 물론 벽을 쌓자면 기초부터 들어 가야죠, 처음부터 제지를 못한 이유를 다시한번 자세하게 말씀해주세요?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강력하게 제지를 못한것은 이미 제가 갔을때에 건축이 다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력히 제지를 못한 것은 우리 실무자가 구두상으로 단속을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제 의원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저도 그곳에 두번 가서 철거를 종용했었습니다마는 문종옥씨는 답변을 피하고, 그 부인이 답변을 하시는데, 너무 강력하게 항변을 하기 때문에 어떠

한 대화가 통용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런 사항을 보고 우리 우경운씨가 몇번 나가서 단속을 못했다는 심정을 이해 할 수 있었습니다.

○ 金斗經 委員 : 강력한 단속을 제지 못한것에 대해 상사로 부터 부탁이나 압력의 제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곳에 갔을때 완공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할 시기의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아니, 하고 나서 현재 상태에서 산업개발계장님께서 봉평면에 가셨을때, 군수나 면장으로부터 이리 이러한 사유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어느 정도 유보하라든가, 어느정도 그냥 지나 가라든가 하는 내용이 있었는지?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 金斗經 委員 : 전혀 없었습니까?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네,

○ 金斗經 委員 : 전 황면장의 탄원서를

보면 고래뱃속에 실무자가 나갔을때 보호하라는 내용이 기재 되어 있다라고, 그 내용은 물론 황면장을 모시고 질의할 문제이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죠?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 金斗經 委員 : 실무자가 고래뱃속 단속을 나갔을때 이것은 보호하는 집이다 상사가 얘기해서 강력하게 제지 못했다는 뜻이 기재 되어 있어요, 탄원서에 그것이 사실인지, 산업개발계장님은 모르고 계시는지?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斗經 委員 : 면사무소 9월 12일자 담당 출장자의 복명서에 의하면 건축물 대장과 면적 차이가 나는데, 9월 12일자 출장복명서를 보면 영업장 확장 22.0㎡에서 58.12㎡로 36.12㎡를 확장했는데, 건축물대장과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禹康鎬 委員 : 건축물대장에는 직선화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지 건물은 오른쪽 부분이 튀어 나와 있잖아요.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예.

○ 禹康鎬 委員 : 그 부분을 얘기 하시는 거죠.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데, 건축물대장하고의 많은 차이에 대해서,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오른쪽 부분이 튀어 나온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 禹康鎬 委員 : 그러니까, 면적이 틀릴수 밖에 없죠?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오른쪽 부분은 당초 건축물대장상에 보면 직사각형 입니다.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불법으로 증축이 된것이 15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특 붙어난 부분이 기존 살던 사람들이 증축을 하여 옛날부터 특 붙어 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산업개발계장께서 저

도 개인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봉평뿐만 아니고 평창군 대한민국 어디든 간에 비밀비제 하게 있는 상태 아납니까?

보일러실이든, 창고든간에 불법건축물 몇평정도 안지은 사람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업무 애로사항은 많으실텐데, 최초로 산업개발계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집이 고발조치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하실것 아납니까 굳이 많은 집들도 있을텐데, 굳이 이집이 대상이 되었던 이유?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대상이 되었던 이유를 첫번째로 든다면 봉평면 소도읍정비가 '94년부터 올해 마무리 됩니다.

소도읍정비를 하면서 철거도 여러 가옥들이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는 과정인데, 그것이 사실 면적은 미흡한 사항이지만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도시계획상 도로변에 단 1cm든 10cm든 불법으로 증축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봉평면 지역의 후미진 곳에는 불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 도로변에는 불법이 없는걸로 알고, 모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고발을 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禹康鎬 委員 : 확실하게 법을 집행하는 뜻에서 준법정신에 의해서 했다고 하시는 거죠?

개인적인 사감정이나 다른 별다른 이유 없이,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예.

○ 禹康鎬 委員 : 속된 표현으로 나는 안되는데, 저집은 되니까 화가 나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다음 같은 식당이면 저집이 생기면 내 영업상 문제가 온다든가, 그런 차이가 있을텐데, 그런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적이 없으십니까?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그런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는 전 주민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변에 경미한 사항이라도 그런 사항은 다른 지역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러면 면사무소에 두루 고발한 사람은 준법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적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인적 파악을 전혀 안해 두셨어요?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실무자에게 물었더니, 전화로 신고를 했는데 누구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최소한 기본적인 인적 사항은 나와 있을것 아닙니까?

그정도 준법정신이 투철한 분이 신고를 하든가 고발을 했으면, 거기에 상응한 포상제도를 한다든가 해서 면사무소에서 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감정차원이 개입되어 있지 않나 해서 여쭙어 봤습니다.

꼭 그런것만이 아니라면?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사람이

살아가는 주위에는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는 분도 있겠죠, 제가 봐서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누가 고발을 했다가,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 禹康鎬 委員 : 인근 주위에서 증축을 조금 앞으로 내서 할려고 하다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제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곤란한데, 제가 얼피 듣기로는 저도 사실 몇번 봉평에 들어가 보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적이 있거든요. 나는 할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저집은 그냥 밀어 부쳐서 했다, 할려고 했던 분들이 못했으니까, 우리 순수한 시골말로 오랍뜰에서 같이 살면서 나는 못했는데 저놈은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억하심정도 없지 않을까, 발단의 계기가 거기부터 시작된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 하는 겁니다.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발단의 계기가 거기 보다는 조금전에 말씀드렸

습니다마는 주위에 악한 사람도 있고, 서로가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그런 몇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그사람들의 의견은 아닙니다.

○ 禹康鎬 委員 : 이참에 산업개발계장님께서 산업계하고 개발계 업무가 상이한 업무인데, 상이한 업무를 한계에서 담당하는 애로사항이 많을텐데, 저희 위원님들 다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산업계와 개발계의 분리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이 있을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량이 많습니다. 사실 건축, 토목, 이분야는 농업분야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해서 그것은 기술적인 전문 분야가 필요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누차 군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군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언젠가는 분리하여 그직종에 전문분야가 있어서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직

이 해서 이분야는 다른 분야로 분류되어 확실하게 행정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禹康鎬 委員 :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은 이유중의 하나가 실지 산업개발계장께서 토목직원을 거느리고 계시는데, 토목직원한테 업무 시달을 했을때 그 직원이 물론 소신껏 잘 하시겠지만, 자기가 상이한 업무쪽에서 지시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 반응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쭙어 보았습니다.

직원들을 통제하는데는 별로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煥 : 그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전문직종의 상사가 지시를 하면 더 낡을것이고, 요즘 젊은 직원들이 사실 계장말 잘 안듣습니다. 거기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사회과장님 말씀이죠 영업허가가 나게된 경위에 대해서 혹시 향간에 떠도는 얘기처럼 군수로부터 어

떤, 빨리 허가를 내 주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없었습니까? 일체 허가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까?

○ 社會課長 金榮柱 : 예, 그런건 없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판단할때 사실 그 영업허가 문제는 구조변경 문제는 그전부터 쪽해오던것이고 단지 면적이 10평 정도 늘었는데 우리 사회과에서는 건물과는 위생법상에 관계가 없고 시설 내부 구조변경만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 면적이 ... ..

○ 李洙現 委員 : 군수로 부터 별다른 어떤 허가 사항에 대한 별다른 지시가 없었습니까? 그다음 주택계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은 현재 도시계획의 결정에 의해서 지금 봉평에 현재 그 건물이 중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맞죠?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에 볼것 같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의 건물및 대지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또는 건축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된 경우에는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고 그건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이 법령등의 규정 건축물이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라 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건축물을 허가 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불법건축물처리계획에 봉평면에서 백지화 되었다는 계획중에 무조건 아무런 근거 없이 유보조치코자 한다하는 사항 보다는 이러한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축물을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住宅係長 朴鍾吉 :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항은 우리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라든가 법령등의 제정개정으로 인해서 기존 대지나 건축물이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때 그것을 일종의 보상을 해주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지면적에 최소한

도의 규정, 그러니까 주거지역내에서 10 m',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미달된 대지라든가, 그리고 건폐율이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뀜으로 해서 건폐율이 오버 되었다든가, 법령의 개정으로 불이익 처분된 대지나 건물에 대해서만 구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설치된 이후에 다시 신규행위는 사실상 구제 받기 지난한 실정입니다.

○ 李洙現 委員 : 이조항에 의해서는 양성화 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 住宅係長 朴鍾吉 : 그렇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어떤 주민의 편의라든가 어떤 재산권이라든가, 그런것을 가지고 검토를 한다고 하면 가설 건축물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때 차후에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앞으로 불법건축물 단속에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예, 알겠습니다.

○ 委員長 李慶鎭 : 잠시 질의를 중단하시고 위원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후 11시 20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5分 停會)

(11時 20分 續開)

○ 委員長 李慶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이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劉燉文 委員 : 부면장님께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면장님이 결재를 두번 다 안 하시면서 아무말씀도 없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오후에 황보한 면장님이 나오시면 저희들도 다시 물어 보겠지만, 부면장님께서 솔직하게 면장님이 안한 이유를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황보한 면장님께서 부면장님하고 이것은 상사가 지시를 해서 봐주라고 했 다든가, 아니면 면장님 재량에서 이것은 봐주어야 되겠다든가 이런 말씀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그런것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 蓬坪 副面長 李聖均 : 하나도 없었습니다.

○ 劉燉文 委員 : 면장님이 오후에 오셔서 부면장에게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하면 금방 얘기가 달라 질텐데요.

○ 蓬坪 副面長 李聖均 : 나중에 그런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면장님한테 그런 지시받은 일도 없고, 제가 결재를 왜 안했는를 물어 보지도 않았 습니다.

○ 劉燉文 委員 : 지금 민원인한테 직원이 불법건물 2차통보를 할려고 부면장님한테 결재를 득한후 면장님 결재를 못받아 민원인한테 통보를 못했다고 했지 않 습니까?

○ 蓬坪 副面長 李聖均 : 예 그랬습니다.

○ 劉燉文 委員 : 그런 미결 서류가 있

어도 면장님한테 말씀을 한번도 안합니까?

○ 蓬坪 副面長 李聖均 : 제가 그것을 챙겨야 되는데 챙기지 못했습니다.

○ 劉燉文 委員 : 그리고 뒤에 보면 8월 22일날 토목기사 우경운씨가 또다시 출장을 나가 복명서를 냈는데, 계장님도 결재를 하시고, 부면장님도 결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 蓬坪 副面長 李聖均 : 네.

○ 劉燉文 委員 : 그래도 면장님한테 보고를 안했습니까?

○ 蓬坪 副面長 李聖均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제 결재까지 나면 통상시에 면장님 결재는 다 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는줄 알고 있었죠.

○ 劉燉文 委員 : 토목기사 얘기로는 부면장한테 면장님 결재가 안났다고 보고를 했다는데, 어떻게 부면장이 면장한테 결재 안한것에 대해 말을 안합니까?

○ 蓬坪 副面長 李聖均 : 그것은 제 자신이 미리 챙기지 못한것 같습니다.

○ 劉燉文 委員 : 그러니까, 면장한테 두번 결재를 안한것을 직원이 보고를 했으면 면장하고 무슨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도록 보고를 안하고 그냥 넘어 갔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잖아요.

○ 蓬坪 副面長 李聖均 : 사전에 들은 얘기가 없습니다.

○ 李相薰 委員 : 이상훈 위원입니다. 먼저 축산과장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평의 광희중씨 축사방목장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기 전에 축산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젓소경쟁력사업 현황이 본 위원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 보다는 불필요한 자료가 많이 제출되어 있고, 그리고 그 자료를 보니까, 경쟁력제고사업에 용자를 받는 사람도 있고, 용자를 해주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중씨는 95년 1월 부터 4월경까지 평촌경지정리 지구에 나오는 토사를 운반하여 하천에 성토를 했는데, 그 신청 용자금 날짜를 보니까, '95년 1월 24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축사 공정 70%가 되어 있을때 용자금 2,000만원시 사업확인서 명세를 발급하게 되면 사전에 축산과장님이 본위원이 생각 할때에는 현지에 출장을 몇번이나 갔으며, 곽희중씨가 추진하고 있는 축사 자리가 하천인줄, 다시말해서 무허가인줄 알면서도 경쟁력제고 사업에 대한 자금을 용자해 준것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상식으로서는 이러한 사업자금을 지출할때에는 전체적으로 불법인지 아닌지를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을때에 지출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이내용을 알면서 자금을 지원해 준 것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畜産課長 鄭義秀 : 축산과장 정의수입니다.

이상훈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젓소경쟁력제고 사업중 용자가 지원되는 사업과 지원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분류 입니다.

사업지침상 사업의 종류별로 재원별 지원조건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나 창고등 사육시설분야에 대해서는 용자 70%에 자기부담 30%사업으로 진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기반조성사업인 농로개설이라든가 용수개발 이사업이 직접 기용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전기 인입시설 같은경우에는 축산발전기금 보조와 일반 지방비 보조, 그리고 자부담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초지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축산발전기금보조 50%와 본 기금 용자 50%로 지원사업에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곽희중씨 같은 경우에는 축사 시설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 소유사업비중에 용자70%기준, 나머지 분야는

자기부담으로 신청 되었고 아울러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용자 2,000만원 사업확인서발행 문제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당해 농가의 사업진행공정에 따라 용자금을 축협이 지급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봉평면장이 사업공정 확인서를 발행하여 이 확인서에 의해서 평창축협이 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축산과에서 현지출장지도여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 포기농가에 대한 포기분 재지원이기 때문에 사업신청자의 연내 결빙기 이전에 사업시행 가능여부가 사전에 검토되어 심의 되는 과정 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실무자들이 당해 면의 축산담당실무자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이미 이사람은 주위의 하천부지외에도 자기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더욱이 92년도에 축사시설 60평을 할때 그 주위로 총80평정도의 농지전용절차를 이미 완료

한 잔여 면적이 있다고 하여 비록 사업자 책정이 늦게 되었다 하더라도 토지이용에 관한 관련 인·허가 사항은 이미 끝을 내고 있다고 보고, 다만 건축관계만 부지런히 진행하면 결빙기 이전에 사업이 완성될 수 있는 농가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도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부지 확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드린 사항과 같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축산과장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조금 상이한 답변을 하고 계신데, 광희중씨의 축산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들어 온것이 있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사업신청서가 들어 왔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확실히 검토해 보셨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예

○ 禹康鎬 委員 : 사업계획서를 지금 보

여 주실수 있습니까?

○ 李相薰 委員 : 지금 본위원이 조금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이 축산과에서 제출한 관련 서류와 참고자료가 전부 현황 위주로, 젓소경쟁력사업에 대한것으로 알맹이가 없는 자료를 제출해 놓았어요.

'95년 1월 부터 4월 까지 토사를 운반하여 하천에 매웠는데, 축산과에서는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전혀 되지 않아요.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전 지도를 관계공무원들이 해주었으면 오늘날 같이 농가들이 큰 경제적 손실도 없을 것이고 말썽도 없을텐데 아무래도 안 이상 목인 해준 것인지, 지도 소홀인지, 또, 축산과에서 면사항이니까 면에 위임을 하고 신경을 안썼는지 이해가 안가는것이 1월 4월까지 하천을 성토하였고, 그자리에 축사를 지었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지 않는데,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畜産課長 鄭義秀 : 지금 말씀하신것

과 한가지로 '95년 4월달에 하천부지중에 일부가 성토되어 기존의 축사시설 부지와 평평한 상태로 되어 있었던 것이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당해농가가 축산사업시설 이외에 인근 토지에 대해 성토를 한다든가, 다른 곳에 사용하기 위해 사용허가를 받는다든가의 문제에 대해서 총체적인 축산농가에 대해 사업진행 경위를 소상하게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안 사항이고, 다만, 농가지도과정 또는 방목과정에서 그 축사 주위에 축사시설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면적이 충분했다고 생각되고, 아울러서 면축산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미 농지전용 허가도 이미 받은 면적도 있다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적 하자 없이 시설이 가능하리라 판단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우강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봉평면의 사업계획서는 광희중씨 건이 98페이지 부터 99페이지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작성된 부분이 축산분야 사업신청서를 안본 것이 아니고, 실제 사업계획신청서인데, 신청서 말고 사업 계획서가 있을것 아닙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사업신청서 뒷면에 사업계획서가 원안에는 표기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뒷면이 지금 복사가 안되었습니다.

지금바로 보충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면답변 - 끝에 실음 )

○ 禹康鎬 委員 : 제가 왜 다시 그러냐 하면, 사업신청서도 그렇고, 그말에 신용대출가능검토의견서는 축협에서 만든 거예요.

사업신청서도 축협에서 만든 거예요. 관회중씨가 만든것이 아니고,

○ 畜産課長 鄭義秀 : 집행 요령에 보면 신청서 뒷면에 사업계획서를 기록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복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다시 보충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내면 이건을 가지고 군수가 축협장과 농촌지도소장한테 축협장

에 대해서는 신용문제와 자금의 대출능력 문제의 판단을 받고, 농촌지도소로부터는 사업의 경영능력의 판단을 받아 군농발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축협의 자료는,

○ 禹康鎬 委員 : 지금 축협자료가 문제가 아니고, 사업신청서 자체가 축협에서 만들어 졌다고요.

지금 뒤에 축협에서 만든 검토의견서 글씨하고 이 신청서 글씨하고 한사람 글씨예요.

관회중씨가 만들은 것이 아니고 축협에서 작성 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사업계획서를 이양반이 만들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축산과에서 만들수 있도록 지도를 해 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축산과에서 읍면에 사업희망자 선정 조사를 할때 면장은 관내 축산농가로부터 본 사업에 대한 사업 희망자에게 홍보를 하고 지도 하는 과정에서 공통된 서식에 의해 계획서 작성은 농가가 스스로 해도 되고, 농촌지

도소나 축협, 면사무소, 어디서나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지도 내지는 대리 작성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러면 대리 작성을 해 주었다면 이것을 지도 관리할 책임이 축산과에 있어요? 면사무소에 있어요?

○ 畜産課長 鄭義秀 : 사업진행과정에서의 책임은 1차적으로 면에 있고, 2차적으로 군에 동시에 있다고 봅니다.

또 읍면의 면장한테만 책임이 있다고 판정 짓기는 어렵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축산과에도 있고, 면장님한테도 있고,

○ 畜産課長 鄭義秀 : 예.

○ 禹康鎬 委員 : 그러면 이사업을 시행할때 이 사업을 담당하는 안내원이나, 상담원이 지정 되어 있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읍면단위는 축산 전담공무원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면의 축산담당공무원이 행정업무추진 및 행정지도를 전담 하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러면 지정이 되어

있어요.

○ 禹康鎬 委員 : 지정되어 있다면 그사람은 누구예요?

○ 畜産課長 鄭義秀 : 봉평면 같은 경우에는 축산담당 공무원인 축산주사보 변훈남씨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과장님 그 안내원이 그 역할을 충실히 했는지 한번 점검해보셨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물론 과장이 했다가 이전에 군의 관련계에서 사업진행사항을 수시로 전화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는데, 면담당 공무원의 답변에 의하면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질차상 별 문제 없이 조기에 완성 가능하다고 상당히 낙관적으로 항상 답변이 되고, 군단위에서도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러면 축산과장님이 직접 지도출장한 적이 있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저는 이걸 진행과정에서는 죄송하지만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러면 이 진행 되는

과정에서 실제 광희중씨는 선의의 피해자 아납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예.

○ 禹康鎬 委員 : 공무원들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해 선의의 피해자인데, 이사업계획 및 추진안내에 보면 반드시 전문인력, 사업안내나 상담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봉평면에 있는 축산직이 배치되어 있다면 토지에 관한 모든것부터 시작하여 기술등을 포함하여 농지전용, 건축허가등 인·허가 및 절차에 대해서도 상담하고 안내 하도록 되어 있어요.

○ 畜産課長 鄭義秀 : 예

○ 禹康鎬 委員 :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 畜産課長 鄭義秀 : 지금 말씀 드린 한가지로 당해 면의 축산직 전담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 착수전 인·허가 절차 지도라든가, 또는 공사공정 기간중에 현장 지도, 또 마무리 과정에서 지도를 면 축산담당직원이 맡아서 하도록 지시가 되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면축산 담당직원한테만 전가 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상담원이나 안내원이 지정되었으면 이러한 오차는 생길수가 없어요.

건축허가나 인·허가 절차까지 상담하고 반드시 안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자율사업이 잘못될 경우 예상되는 책임 및 기타 필요사항까지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을 포함해서 면장이고, 담당직원까지 다 안했어요.

세분이나 네분이 전부다 농민한테 물어 줄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되었는데요.

일단은 도시과에서 건축문제가 나오기전에 상담원이 먼저 이것을 준비하여 이상이 없도록 처음부터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직무유기죠?

안그렇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예, 그 건에 대해서.....,

○ 禹康鎬 委員 : 도시과로 가기 전에 먼저 축산과에서 문제가 최초로 대두된 것입니다.

돈없는 농민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축산 농가에 피해를 주어요.

○ 李相燾 委員 : 과장님 말이죠, 광희중씨 사업계획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산과에서 젓소경쟁력 사업의 용자금 예산을 배정할때에는 어떤 소정의 절차가 있을 겁니다.

사업계획서를 받는다는가, 그것을 심의 분석한후에 그자리가 바로 불법건축물인지 한번에 확인할 수 있고, 사전지도로 축산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축사에 대해서 관계법령을 잘 검토하여 오늘날같이 광희중씨한테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을텐데, 한마디로 말해서 축산과에서 현지 확인 출장을 한번도 안갔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 줄수 있어요?

○ 畜産課長 鄭義秀 :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바로 제출 하겠습니다.

○ 李相燾 委員 : 지원 용자금을 줄때에는 사업계획서를 받고 소정의 절차가 있어서 불법건축물이라는것이 나타날텐데, 덮어놓고 지원을 해주고,

○ 畜産課長 鄭義秀 : 사업계획서상에 사업장 위치는 자기 발번지에 사업계획서가 제시된 사항이지, 어떻게 감히 사업자 역시 국가땅에 자기 건물을 짓겠다고 마음 먹은 사항이 없을것이 뻔하고, 그다음 공직자 역시 하천부지내에는 건물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사항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고, 하천부지에 건축물 짓겠다고 정부지원 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 심사를 해 줄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상식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시공 과정에서 본인이 경계측량을 다시 한번 하고 일을 시작 했더라면 농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주지 않았을텐데, 그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는 물론 관련된 공직자 역시 책임을 통감 하겠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 하시는 중에는 '92년 6월 달에 농지전용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농지 부분은 별로 신경을 안쓰셨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산업개발계장님 '92년도 6월 20일날 농지전용신고한 사실이 있는데, 그 유효기간은 아무때나 사업을 하면 되는 겁니까?

1년이 지나도 그만이고, 3년이 지나도 그만이고, 예를들어 10년후에 돈이 생기면 하고, 5년후에 돈이 생긴후에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유효기간이 있는 것인지?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제가 알기로는 180평을 신고하여 전용 받았고, 전용받은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측사를 일부 짓고, 나머지 부지의 100여평에 짓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나머지 지목변경이 되었습니까?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본인이 지목변경의 내용을 몰라 지목변경을 아직 안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지목변경이 아직 안 되었으면 행위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인데, 제가 알기에는 농지전용을 한번 받으면, 2년이고 3년이고 기간이

지나가면 시효가 소멸되어 재신고나 재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항으로는 3년 6개월이 흘러 갔습니다.

3년 6개월전에 받은 농지에 측사를 짓겠다는 판단을 하시고 처리해 주신것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을 했어야 하는 부분이 보여 지는데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사업착수지도과정에서 농지전용 신고가 되어 있는 구역안에 시설을 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지만 충분히 결빙기 전에 사업이 가능하다는 측산담당 직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농지전용 신고는 틀림없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군단위에서 신고증을 확인한 다거나 그런 절차는 못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시간이 상당히 흘러간 사항이기 때문에 농지부분은 농지를 전담하는 부서에 어떤 해석을 정확하게 받아서 추진을 하셔야 하는데, 이 금액이 어머어마한 돈인데 그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 李相薰 委員 :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곽희중씨 측사 용자금은 아무래도 농가에 피해를 입을것 같은데 어제 제가 현지에 가보니까 눈시울이 벌게져서 그런 감정을 억제하고 왔는데,

이월을 시킨다던지 농가에 피해가 안가도록 하는 어떤 방안은 없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에 사업을 마감하지 못하겠다는 확실한 사항이 연말 이전에 판단이 되도록 거쳐서 축협중앙회장의 사전승인을 얻어내가지고 자금지원을 사고이월 내지는 연도이월 조치가 가능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도말 이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사업 마감이 불가능 하겠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군단위에서 판단을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일단은 축협에서 사업자가 사업자 책정과 동시에

자기 앞으로 지원계획된 용자금 전액에 대해서 용자대출 수속을 끝내고 자기가 직접 다 수령하는것이 아니고 일단은 여신관리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여신관리 계좌에 입금이 된후에 읍면장이 발행하는 사업공정 확인서에 의해서 해당되는 비율만큼 당해농가한테 지급되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액이 용자대출 수속이 끝나서 지금 현재 여신관리 되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금 운영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6개월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사업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28일날 축협으로부터 용자금 해당액 전액이 대출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 5월 28일까지 6개월간 이 자금을 운영 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내에 정상적인 사업이 보완 시행이 가능하다면 이 자금은 계속해서 당해 사업자가 쓸수 있는 상황이고 다만 그렇지 못한 어렵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이 되고 의원님들도 어제 가 보

셨을때 다시 그런 규모로 재 신축하기는 농가 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젓소농가의 운동장 톱밥발효장 설치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00평 규모로 농가당 총사업비 1,500만원중에서 900만원을 지방비에서 보조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이 군내 8개소가 있는데, 그 8개소 농가중에 하나를 광희중씨 한테 지원을 해줘가지고 원래에 있던 축사 뒤 언덕쪽 밭에다가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조기 착공하도록 시행하도록 해가지고 지금현재 상당히 과밀 밀집사육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젓소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아울러서 군수가 일단은 기존 건물에 대해서 철거 명령이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 명령 이행도 축산농가에서 따라 줘야 될 입장이라고 보고 100평짜리 운동장시설을 조기에 완성을 하면 우선은 급한 정도의 문제는 해결이 되겠습니다.

○ 李相薰 委員 : 잘알았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畜産課長 鄭義秀 : 알았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사업계획서 제출하실 때 지도점검 일지가 있지요?

○ 畜産課長 鄭義秀 : 지도점검 일지는 군에서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면단위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 사후 관리 책임은 시장이나 군수가 반드시 지도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부장관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사후관리 책임을 지도도록 되어 있는데 광희중씨가 행정소송 들어오면 꼼짝없이 물어줘야 합니다.

과장님이 한번도 사업장에 안나가 보셨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 畜産課長 鄭義秀 : 행정소송 문제까지 발전되지는 않으리라 판단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자신이 자기가 말하자면 시설착공전에 분명한 토지형질을 가리고 난다음 해야할 사업자의 규칙사무지, 이것이 면사무소나 군수의 행정지도 소홀로 인해서 농가에 손실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책임을 통감하지만.....,

○ 禹康鎬 委員 : 그 자체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요.

○ 畜産課長 鄭義秀 : 그러나 사업주체는 역시 당해 농가이기 때문에 농가가 자기 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지 이문제까지는 농가가 생각조차도 안하고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어렵게 판단을 안하셔도 될것으로 생각 합니다.

○ 禹康鎬 委員 : 자기 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그 실수를 막을수 있는 사람이 상담원, 공무원 입니다. 반드시 임명하고 그 사람이 관리하도록 그다음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관리대장까지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해가지고 농민이 피해를 입었으면 당연히 할수 있지요.

어제 나가 보셨겠지만 어느 누구도 마찬

가지 일겁니다. 그정도 상태를 보고 가슴 아프지 않은사람 한사람도 없을 겁니다.

○ 畜産課長 鄭義秀 : 네. 없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렇게 까지 농민이 피해를 입도록 과장님께서 단 한번도 그 현지에 나가보지 않았다는 것도 과장님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으신 겁니다.

군수를 대신한 한과의 책임자로서....., 저나 김두경 위원님 입장이 곤란하신데 다른사람이 누가 가서 군수님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 들어올 경우에 변상안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사람이 이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변경조치 요구하면 군에서 옮겨주고 군비로 지원해서 이것을 다 옮겨줘야 합니다. 안해줄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께서 과장님께 이 광희중씨 농가에 관한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었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별도로 지시된바는 없습니다.

○ 禹康鎬 委員 : 황보한 면장님과의 관

제로만 이어 졌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축산과장님이 여기에 관한 보고를 드린바는 있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일단은 2월달에 확보한 면장님께서 사표를 내실 그무렵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럼 보고 드릴때 군수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진행과정과 현재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과장님이 보고드릴때 군수께서 그 사항을 알고 계신 상태였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그렇지요. 그때 먼저 다른 채널을 통해가지고 감사부서나 모든사항을 통해가지고 알고 계시는 상황이였지요.

○ 禹康鎬 委員 : 다른 채널을 통해서 알고 계실때까지 과장님이 그럼 군수님께 보고를 한번도 안드렸단 말입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직무에 관한 사항

입니다만, 알면서 보고를 못드린 것은 아니고 그 시점까지도 실질적으로 면단위에서 면장을 비롯해서 누구던지간에 축산과 부서에다가 실무자나 담당자 조차도 이 사항은 들은바가 없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은 2월말 정도면 전년도 사업분에 대한 사업완료 보고서가 들어 오거니 하는 정도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면사무소에 이 담당 직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 畜産課長 鄭義秀 : 네.

○ 禹康鎬 委員 : 그럼 그 관리책임자도 과장님한테 보고를 한번도 안했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못들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럼 관리책임자도 문제지만 과장님도 직원관리 못한 책임은 있지요.

○ 畜産課長 鄭義秀 : 알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냥 알고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가지고 다른것도 포함되었겠지만 확보한 면장 탄원서를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문제도 있지만 이 부분도 상당한 그런 하나의 요인이고 보통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요인중의 큰 요인인데, 실질 많은 내용인데 과장님은 한번도 안 나가 보시고 담당직원한테 보고 들은것도 없고 뭐가 전혀 맞지 않는것이 아닙니까?

지정할때 지정은 누가 합니까?

평창군수가 지정하는것이 아닙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농가선정 결정은 군수가 하지요.

○ 禹康鎬 委員 : 농가선정도 군수가 하지만, 관리책임자.....,

○ 畜産課長 鄭義秀 : 물론 관리책임자도 시장, 군수입니다.

시장·군수라고 되어 있을때에는 보조기관인 읍면장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 禹康鎬 委員 : 아니지요. 읍면장이 왜 거기 포함됩니까? 시장, 군수가 관리책임자를 지명하도록 되어 있으면 관리책임자 지명한 공문이 있을것 아닙니

까, 축산과 누구누구를 광희중 사업장에 관리책임자로 지명을 한다던가, 아니면 상담원으로 지명한다 라는 서류가 있을것 아닙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개별적으로 어느 사업장에 대해서 관리책임자 지정이다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읍면단위에 축산직 공무원이, 전담공무원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면 축산담당공무원이 다루어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럼 담당직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당연히 내가 담당이라고?

○ 畜産課長 鄭義秀 : 네.

○ 劉燾文 委員 : 어제 저희들이 그곳에 나갈때 주인이 콘크리트 바닥을 할때 담당직원이 와서 위치를 확인했다고 분명히 했는데 어느직원이나고 물으니까 아직까지는 답변할 시기가 못된다, 이제 우리가 왔다가고 오늘 이 의회가 속개되어가지고 2시에 오는데 그때는 밝히겠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 과장님께서서는 직원

이 출장갔다와서 복명을 한번도 못받았다고 하는것은 이자리에서 답변이 안됩니다. 그리고 여기 서류를 보면 127페이지 여신관리 명세서, 확인서 해가지고 2,000만원 70% 사업이 되어서 돈을 주라고 했는데 광희중이가 어디에다 뒀는데 또 담당직원도 기명날인도 하나도 안되어 있는것이 서류로 되어서 저희들한테 올라 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사를 하러 의회에서 나갔는데 이런 서류를 어디에서 가지고와서 어떻게 뒀는지 답변해 주세요. 본인 도장도 없고 담당직원 도장도 없는데 부군수 결재까지 났습니다. 이런것도 됩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죄송합니다만 127페이지 지적해 주신 사항은

○ 劉燉文 委員 : 그럼 이서류는 어디서 꾸며 된것입니까? 어제 그저께 만든것이지요?

○ 畜産課長 鄭義秀 : 이 쪽지는 면사무소에서 제출된 자료를.....,

○ 劉燉文 委員 : 젓소 경쟁력 사업이라 해가지고 70%가 되었으니까 2,000만원을

주시오 하는 본인이 신청한것이 도장이 하나도 없는데 돈이 어떻게 나가는가 말입니다. 담당 축산공무원도 도장을 안 찍었는데 이런 서류가 어떻게 의회에 올라 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죄송합니다만, 군청에 비치된 것이 아니고,

○ 金鍾永 委員 : 김종영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축산 광희중씨의 축사 시작서 부터 끝까지 지도감독, 사후관리한 책임이 면장에게는 얼마나 있고, 축산과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극히 어느 기관에 비중을 둔다거나 할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 金鍾永 委員 : 그렇지 않지요. 업무라는 것이 면장이 할일이 따로 있고 또 면에 근무하는 축산직이 하는 업무가 있고 또 축산과장이 군에서 할 업무가 있는데 그 한계를 분명히 말씀올 해주시기 바랍니다.

○ 畜産課長 鄭義秀 : 농가선정 문제는

면장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 사업신청자를 군수가 받아가지고 그 농가에 대한 여신관리 능력과 사업수행 능력은 군수가 축협장과 지도소장 한데 검토요구를 내가지고 검토회신이 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회신이 온 결과에 의해서 적격사업자라고 판단된 경우에 농어촌발전 심의회에 부의해서 심의 결정이 나면 군수가 최종 사업자로 확정을 하고 사업착수 과정에서의 현지지도는 조금전에 말씀하시던 읍면의 축산직 공무원이 현장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마무리 보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최종점검은 군에서 다시한번 합니다.

○ 金鍾永 委員 : 그럼 면장한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면 축산담당 직원이 결국은 면장과 연계되어 있는 소속직원 이니까.....,

○ 金鍾永 委員 : 그리고 147페이지에 보면 고발 하셨지요?

1996년 2월 29일 건축법위반협의회자 고발

은 군에서 고발했지요?

○ 畜産課長 鄭義秀 : 네.

○ 金鍾永 委員 : 그런데 고발한 이후에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이것은 도시과에서 시행된 문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는.....,

○ 住宅係長 朴鍾吉 :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평면에서 2월 28일날 무허가 건물 발생보고를 받았습니다.

받고 2월 29일 오전에 현지조사를 해서 2월 29일 오후에 평창경찰서에 지금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경찰서에서 지금현재 이 관계사항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 金斗經 委員 : 김두경 위원입니다.

곽희중씨의 축산농가에 대한 처음의 발단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제가 발단된 동기가 방목문제인지, 축사 신축관계의 문제인지,

○ 畜産課長 鄭義秀 : 발단동기는 지금 문제의 진행과정 조차도 군에서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있었다는 질책을 주셨습

니다만, 발단 동기에 대해서는 면 관계 관에게 여쭙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 金斗經 委員 : 봉평면 산업개발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발단 동기는 광희중씨가 하천변에 소를 매는 이런 불법사항이 있었고, 그 시점에서 축사가 신축되는 과정에서 하천에 침범된 사실로 인해서 그때부터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斗經 委員 : 방목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었던 사항이 있습니까?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방목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된 사항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인근 지역 주민이라던지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그렇게 느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민원이 야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 金斗經 委員 : 방목문제 때문에 광희중씨는 각서를 징구하려 면사무소에 갔다가 다시 각서를 가지고 왔을때 그 내

용이 불충분 하다고 해서 다시 각서를 써라 하는 바람에 그분이 술을 한잔먹고 속이 상해서 소를 들여매고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소가 죽었다, 또 다쳤다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면장님이 각서를 징구 하시해서 제가 축산담당자에게 각서를 받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산담당직원이 각서를 받았습니다.

○ 金斗經 委員 : 알았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축산과장님, 젓소경쟁력제고 사업비가 9월 16일날 이경희씨로부터 포기서가 접수 되었지요?

○ 畜産課長 鄭義秀 : 네. 그렇습니다.

○ 李洙現 委員 : 그다음 광희중씨한테 확정 통보간 날이 10월 25일입니다.

○ 畜産課長 鄭義秀 : 네. 그렇습니다.

○ 李洙現 委員 : 그럼 포기서를 받고 확정 통보하는 기간이 40여일 걸렸습다. 그러면 광희중씨는 그다음 확정 통보를 받고 축산과로 부터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마무리 지을수 있도록 해달

라 하는 공문만 계속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분이 마음이 조금했겠지요.

그해에 다 못지으면 큰일나는것으로, 사업자금을 반납해야 하는것으로 알겠지요 그렇게 본인은 생각하겠지요?

○ 畜産課長 鄭義秀 : 반납이라기 보다는 겨울이 되면 우사 시행이 안되고 그러니까 빠른시일내에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겠지요.

○ 李洙現 委員 :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소지가 충분하 있습니다. 그다음 공사기간이 약 3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니다. 30일동안에 축사 다 완공 할 수 있다고 생각 하 셧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지금 건축된 시공 방법이라면 보통 여타 농가도 한가지 입니다만, 한농가에 한달간 소요되는 공사는 별로 없습니다. 그 기간내에 다 끝 이 납니다.

○ 李洙現 委員 : 지금 광희중씨 사업장을 가서 보니까 성토부분 하고 기반 콘크리트타설 작업만 해도 보름 이상 가져

야 합니다. 어떻게 한달내에 축사를 다 지어요?

○ 畜産課長 鄭義秀 : 지금 말씀하시는 콘크리트타설 분야만 그 정도 기일이 가고 나머지 기둥세우고 지붕 조립하는 문제는 대개 시공하는 사람들도 지방인부들을 쓰지않고 자기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인부들을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께지에 와서 사업하면서 공기가 장기화 되면 시공하는 사람들 역시 손실이 되기 때문에 축사 짓는 사람들은 일단 시작이 되면 빠른시일내에 전력을 기우려서 부지런히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 합니다.

○ 李洙現 委員 : 충분하다는 것은 과장님 판단이고 동절기에 공사를 하게 되면 사실상 부실공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40여일간의 선정기간이 소요가 되었고 실질적인 공사 기간은 약 3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입장은 상당히 조금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광희중씨가 제출한 현황실측 평면도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

니다. 이자리에 축사를 짓겠다 하는 사항이 13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실지로 축사를 지은 부분은 이도로 밑 부분입니다. 육안으로 봐도 측량을 안 해도 이것은 뉘히 알수가 있습니다. 축산과 직원이라던가 면사무소 직원이 한번만 나갔더라도 축산농가가 피해를 안봅니다. 확인절차를 한번만 했더라도, 사실상 광희중씨를 제가 대했을때 처음 느낀것은 순수한 농민의 축산농가입니다. 무슨 하천에 공작물을 설치하느니, 못하느니 이런 사항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이런분이 아닙니다. 도면상으로 보면 분명히 도로상 밑에 지어 놓았습니다. 제출한 서류를 보면 위에다 짓겠다고 했습니다. 측량을 안해도 눈으로 봐도 뉘히 알수 있습니다.

○ 畜産課長 鄭義秀 : 사업자가 일건서류를 갖추어 가지고 면사무소 면장한테 서류를 갖추어 놓으면 죄송하지만 저희 과에서 자료로 쓰는것이 아니고 다른과에서 들어온 자료를 가지고.....,

○ 李洙現 委員 : 어떻게 되었던 이 현

황 평면도 같은것도 과장님이 검토를 하셨지요.

○ 畜産課長 鄭義秀 : 글썽 이 평면도가 군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 李洙現 委員 : 어디에 짓는다는것은 알고 있었다는것이 아닙니까?

번지수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629가 전이고 하천은 505 천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천에 짓는지 밭에 짓는지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측량을 안해도 이부분은 알수가 있습니다.

○ 畜産課長 鄭義秀 : 이 서류가 군 축산과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가 아니고 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가 총괄적으로 제시되는 바람에 지금현재 들어와 있는데 이 서류는 지금현재 저희가 제시한 서류가 아닙니다.

○ 李洙現 委員 : 어떻게 되었던 제가 판단했을때는 말이지요. 이 사업자체가 조금하게 선정이 되어서 조금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소를 방목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오늘과 같은 이런 사태가 발생

하였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은 그렇다고 치고 앞으로 지금 광희중씨가 이전을 하는 비용이 약 2,3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까 우강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과장님의 판단은 그런지 모르겠으나 저희 판단으로는 행정소송하면 군청에서 옮겨줘야 합니다. 단, 책임의 구분이 어떻게 구분이 지어지는가 하는것이 궁금한 사항이지, 군청에서 분명히 책임져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나는 과정까지 전혀 집행부서에서 돈만 내주면 되고 서류만 받았지 돈만 나가면 된다하는 그런 것이지 한번도 나가서 행정지도를 해준적이 없습니다.  
면사무소고 축산과고 말이지요. 결국에는 그 책임이 본인한테만 피해가 되돌아 오는데 군청에서는 지금 3월 15일까지 철거하라고 통보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부분을 과장님께서 시인을 하신다면 과연 광희중씨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신중히 검토해 보십시오. 3월 15일까지 철거하라고 해도

철거 능력이 없습니다.

철거 할수 있도록 다른곳에다 철거해서 그 옆의땅에다 이전할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하시고 책임을 통감하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책임을 통감하시는 만큼 광희중씨의 부담이 덜어질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畜産課長 鄭義秀 : 알겠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주택계장님께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급공사 동절기공사 중지명령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용자사업은 관급공사에 적용할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는지, 없는지 그 문제를 주택계장님이 건축을 하시니까 오후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住宅係長 朴鍾吉 : 알았습니다.

○ 委員長 李慶鎭 :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12시 15분이 지났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오후에 계속 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오전질의를 마치고 의

부 참고인에 대한 질의후 집행부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후에 다시 출석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2時16分 停會)

(14時15分 續開)

○ 委員長 李慶鑽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외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두분에 대한 경위 청취와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본 특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두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특위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세분을 출석토록 요구한것은 최근 봉평면 지역

내에서 주민의 집단민원이 되고 있는 일련의 행정처분들에 대하여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그 진상을 파악 민선 지방자치시대의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집행부의 적법한 행정추진과 위법 부당한 사항들에 대한 시정, 개선의지를 촉구코자 하는 것으로 참고인으로 나와 주신 세분들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진행은 민원 사안별로 참고인 한분씩 개황 설명이 있는다음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확보한 참고인으로부터 문종옥씨 안건과 관련 그동안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參考人 黃普漢 :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제가 봉평면장으로 재직시에 평창군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아 사표를 제출하게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억울하고 눈물나는 저의 사표과정에 대해서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각별히 염려하여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식당하고 축사 방목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직원이 하였지만 제가 세부사항은 잘 모릅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만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와 계신 문종욱씨가 증축을 한 건물은 1평미만을 증축을 한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이 증축 장소는 소방도로개설 예정지 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종욱씨께서는 작년 6월, 일자는 다소 착오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6월 20일경부터, 6월 말부터 증축을 하기 시작한것으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95년 7월 15일에 저희들 직원이 현장에 가보고 와서 이 불법건물을 갔다가 완전히 했기 때문에 철거 지시를 내려야 된다고 면장한테 결재를 받으러 와서 면장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합니다만,

위법사항이 명확하기 때문에 작은 불법 사항이나 결재를 안할수 없어서 부득이 결재를 했습니다. 그후에 서울식당이 완전히된 다음에 서울식당측에서 집을 다른사람한테 임대를 해줘서 그 임대받은 사람이 영업장 시설확장에 대한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명의변경도 하고, 그랬더니 그다음에 이 봉평면에서는 이 건물이 불법 건물이니까 저희들 건설직이 기안을 했는데 저도 결재를 안할수가 없어서 했습니다만, 이 건물이 불법 건물이니까 허가를 영업장시설 확장에 대한 허가를 갔다가 고려해 달라고 군수에게 공문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군에서는 면으로 회답이 왔는데 이 건물은 영업장 시설면적과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이 틀리니까 일치후에 허가서를 내도록 본인에게 알려달라고 공문이 와서 저희들은 공문대로 면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확실히는 모르는데 서울식당에 가서 말씀을 드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은 면적이고 하다보니까 철거를 면에서 중용을 했습니다만, 철거가 안되

는 거지요. 그런데 완전히 일치후에 허가를 해주겠다고 서류를 제출하라고 군에서 공문이 온것을 잤다가 저희들이 전달하니 그다음 몇일후에 군수님한테서 전화왔다고 해서 아침절에 전화를 받으니 저한테 형언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막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말씀드릴것 같으면 증축좀 하는것을 어떤놈이 여론을 만드느냐, 뭐 면적이 조그만 사항을 가지고 민원을 만드느냐, 조금 증축좀 한다고 해서 사람이 다니지 못하느냐 해서 제가 "이 장소는 그전에 지방유지인 박주택씨도 증축을 하다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군수님이 저를 인간으로 취급을 했으면 그렇게 까지 욕을 못할텐데, 약 10분동안 막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욕을 얻어 먹고서는 바로 부면장과 계장들을 소집해서 "야 참 면장하기 힘들다, 이렇게 면장이 못한것도 하나도 없고 단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단속을 했는데 면장은 아무 죄도 없는데 면장한테 이렇게 별욕을 다하고 이러니 어떻게 면

장을 해먹겠느냐" 하고 제가 계장들한테 한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맨처음 일치되어야만 허가중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9월 13일날 허가에 10월 22일날 군에서 공문을 보낸것으로 해서 허가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까 참 뻗은 얘기로 지금 봉평에 번영회가 상당히 조직이 방대하게 되었는데 봉평면 번영회에서 상당히 여론을 조성한 사례는 사실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면장이 번영회였다 얘기한것이 아니라 이미 번영회에서 지금 비밀이라는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군에서 허가가 났다는 것을 알고서는 상당히 여론을 조성한 일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상 서울식당에 대해서는 제가 결재는 우리 직원들이 하는것을 전부 했습니다만, 안할수가 없어서, 면적이 조그만 면적이기 때문에, 또 서울식당에 대해서 제가 찬분합니다. 또 서울식당 아주머니가 평상시에 그 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소방도로가 날 때에는 철거한다고 각서라도 쓰고 집을

것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면장 마음대로 하는것이 아니니까 이해 해 달라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서울식당 얘기는 그정도고 다만 그후로 제가 계속 군수님한테 미움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 축산농가 광희중씨 젓소방목 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는 더 잘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그때 일자가 미상으로 우리 직원들이.....,

○ 委員長 李慶鎭 : 잠시 설명을 중지하시고 축사 문제는 다음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보한 참고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옥 참고인에게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參考人 文鍾玉 : 우선 죄송합니다. 이번 문제의 대상에 오르게 된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집을 1995년도 6월 25일날 이규을 이라는 사람에게 지금 전세 계약서를 복사해왔는데 전세를 주었습니다. 전세를 주고 나서 이집이 식당을 하겠다

고 해서 줬는데 자기들의 안대로 고래벳속을 할려면 거기에 대한것을 벽면을 보기 싫지않게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은 나는 알바가 없고 일단은 도시계획이 되면 집을 새로 지어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에게 전혀 관계치 말고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허술한곳을 부수던지, 나는 어차피 집을 뜯어서 새로 지을 집이니까 알아서 해라, 이내용의 단서에 모든 수리허가 문제는 세입자가 책임을 지는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뜻을 밝고 그렇게 새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고기를 넣는 수족관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봉평면 사무소에 있는 우기사 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저는 모릅니다. 가서 이야기를 해서 허락을 받았답니다. 허락을 받는것이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계단에다가 수족관을 놓겠끔 허락을 받아가지고 일단 주위는 시켜놓고 어디를 갔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모릅니다. 그후에 이런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벽을 반

쫓 쌓았다는데 그래놓고 나니까 단속을 해서 이것을 왜 37cm를 내 쌓았느냐 하니까 밟는 발판인데 어떻냐, 이렇게 얘기 하니 면에서는 담당직원이 이것은 안된다,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받은 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나를 찾아와서 이것을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요 하길래 자네들이 알아서 하기로 했으니까 알아서 해라 했더니 "네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고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후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그냥 있으면 안되겠어서 찾아 갔습니다. 우기사를 찾아가서 이것을 선처할 방법이 없겠느냐고 하니까 이것은 아이들이 고의적으로 한일이 아니라 식당을 할려고 하니까 수족관을 바깥으로 가면 얼어서 안되니 집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그 발판에다가 수족관을 놓으라고 허용을 했으니 거기다 쌓아도 괜찮을 것이다 하고 그집 수리하는 사람이 그렇게 벽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얘기를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면장님을 찾

아 갔습니다. 찾아가서 사실 이렇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민생 편의 차원에서 민폐를 끼친다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힌다거나 또는 국가에서 어떤 문제가 야기되어 큰 문제를 발생시킨것이 아니니까 민생차원에서 어떻게 선처를 해주십시오, 하니까 면장님이 나야 부성이네를 잘알고도 남는 사람인데 200%라도 이해를 하겠다, 그런데 밑에 김동린이라는 계장이 있는데 그사람이 좀 까다로우니 거기가서 그사람의 이해만 얻으면 나야 문제할것 없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증축을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해를 해주는 방면에서 해결수 있는데 그렇게 밑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마음대로 증축허가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보수라는것을 해준다는것을 해결수는 없다,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김동린씨를 찾아 갔습니다. 찾아가서 사실 이러하니 선처를 해주십시오 하니 이미 그때는 군에다가 보고를 했기 때문에 안된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수 없어서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면 안된다 하며 뜯어서 들여놓아라 너희들이 하는것이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책임질 일도 없고 그러니까 들여놓아라 이렇게 두차례를 했습니다. 그렇고 나니까 내일이 바빠서 일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던중에 그사람들이 다해서 허가를 넣고 그랬다고 해요. 그다음에 허가증이 다 나왔는데 한번은 허가증을 안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가증을 왜 안보내주냐고 면사무소로 왔느냐고 전화 하니깐 안왔다고 하더라고요. 군에서는 보냈다고 하는데, 그래서 왜 안왔냐고 하니깐 면사무소에서 김동린씨가 집짓는데 문제가 있을테니 허가증을 보내주지말라 그래서 안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람들 두사람이 쫓아 나갔습니다. 군으로 나왔는데 그 이튿날 군의 계장님이신가 직원 두분이 나오셨습니다. 나오셔서 지로 우리집이 한쪽이 튀어 나왔습니다. 그 튀어 나온것을 보고 왜 튀어나오게 되었느냐, 이것을 단속하는 측면에서 얘기하니깐 그곳 사람들이 이것은 원래 있

던것이라고 해명을 했답니다. 그러니 이것은 원래 있던것이고 발판있는데 약 30cm나왔습니다 하니깐 별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하고는 그다음에 할수 없다 그러면 1m 나간곳을 안에 사람이 다 쓰게 나무였는데 그곳을 막으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밤에 그곳을 막았습니다 각목을 세우고 판자를 놓고 도배를 하고 했는데 그다음날 군에서 나와서 사진을 찍고, 고치기 전에 사진을 찍고 고치고 나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허가증을 내려보내서 장사를 하게 되었는데 금번과 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이상의 것은 제가 얘기할 소지도 아닌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오늘은 집세를 얻은 사람이 와서 여기에 와서 답변을 해야 할 것인데 그동안 집주인이라고 해서 모르는척 할수 없어서 얘기를 했던 사실이 있어서, 또 어제 군의원님들이 오셔서 수고를 해주시고 그랬는데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제가 가서 현실대로만 얘기를 해드려야 겠다고 생각되어 오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李慶鎮 : 문종옥 참고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康鎬 委員 : 황보한 전 면장님께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95년 8월 22일날 문종옥씨 건축물 증축분에 대한 2차 철거통보 문서에 결재를 하지 않으셨는데 하지 않으신 이유는 뭡니까?

○ 參考人 黃普漢 :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군수님한테 10분간 모진 모욕을 당하고 증축하는것을 왜 못봐주느냐 거기에 사람이 못다니느냐, 나름대로 난리를 치고 그러니 그다음 뭇한 얘기로 이 군수님이 계시는 동안 거기에다 결재를 하면 저는 평생에 결재 반려되기는 처음입니다. 또 제가 상사한테 가서 결재가 반려된것도 없고, 그때 결재를 또한번 하면 군수한테 찍혀서 금방 야단이 날것같고 그다음 군수님이 양해라도 한다면 결재를 해도 이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철거명령을 보내고 그 문제에 대해

서는 법적으로 뭇하면 그다음 군수님은 일단 명의를 면장 공문으로 나가면 군수님은 나중에 면장만 난리치고 할테니까 억압에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결재를 못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결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특별하게 고래뱃속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 參考人 黃普漢 : 고래뱃속에 대해서 다른 말씀도 없었고, 단지 그날 제가 욕을 얻어 먹을때는 그날은 10분간 얘기했으니까 별 난리를 다 친것이지요.

○ 禹康鎬 委員 : 그 난리중에서 고래뱃속에 대한것을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해 주실수 없습니까?

○ 參考人 黃普漢 : 단지 욕을 하는것인데, 제가 소방도로라고 그러니까 "거기가 소방도로인데 거기 길가에 조금 늘린다고 해서 사람이 못다니느냐, 어떤사람이 못다니게 하느냐" 등등 옛날에 박주택씨도 증축을 조금 할려다가 여론이 많아서 못했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다 그얘기를 하니까 들은척 만척 하여간

" 민원사항만 매일 만드느냐" 등 제가 10분간 모욕을 당하고 해서 즉시 제가 계장들을 소집해 가지고." 민선군수님 이라고 이렇게 면장이 잘못된것도 없는데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야지, 어떻게 행정을 해야 할것인지" 제가 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재를 또 하다가 보면 난리가 날텐데, 그때 결재를 가지고온 우리 직원에게 서울식당에 대해서는 면적이 적으니까 어떻게 철거할려면 간단하니까 구두라도 설득을 해서 철거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공문은 군수님이 난리를 치니까 내가 또 결재를 하다보면 빛한 얘기로 당장에 어려우니까 건설담당자한테 어떻게 그냥 이해와 설득으로 철거를 하도록 해보라고 얘기한적이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바쁘신 생업에도 여기에 나와주신 문중옥씨에게 감사드리면서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전 황보한 면장님께서는 건축물 증축분에 대해서 말씀하신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현 김용욱 군수님께도 그런 말씀

드리고 어제도 한말씀 하셔서 부탁을 드린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면사무소에서 상당히 심하게 제재를 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말씀하신적이 있으십니까?

○ 參考人 文鍾玉 : 한번도 찾아간일도 없고 전화한 일도 없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여기 해명서에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봉평면 번영회에서 성명서를 내셨는데 이 성명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參考人 文鍾玉 : 사실 그 성명서가 된 동기를 알고 싶어서 했었는데 우연의 일치로 그 고래뱃속을 이번 이런 문제가 생겨서 갔을때 고래뱃속 주인이 이 황면장님의 탄원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번영회에서 거기다가 갔다가 읽어보라 하고 갔다 준것이 왜 그런가 하면 면장님이 탄원서를 서울식당에서 두 부부가 군수님을 찾아가서 어쨌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고래뱃속에 대해서는 고래뱃속도 그다음 성명서를 낸다음 고래뱃속은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다

고 해서 성명서를 또 냈습니다.

그렇게 내고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고난 다음에 그애기에 대해서 그것을 보여주더라구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 탄원서 내용에 이 면장님이 얘기를 해서 알았지 그이상은 해본일도 없고 모릅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알겠습니다. 그다음 황보한 전면장님께서 성명서가 나오게 된 동기를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參考人 黃普漢 : 군에서는 7월 22일에 면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저희들이 7월 25일에 공문을 접수했는데 그때는 영업장 허가가 영업장 허가면적과 건축물 대장과 상이한 처지에서는 허가를 안내주겠다고 분명히 공문이 왔는데 느닷없이 9월 13일에 허가가 났습니다. 또 군수님이 어떤 근거가 있는가 하면 저를 욕할때에 저는 알지도 못했는데 증축한부분 옆에 옛날에 증축한것이 있습니다. 그 증축한것이 있는데 저를 욕 할때에 왜 옛날에 증축한것은 철거 명령을 안내고 요즘 조그만것을 증축하

는것은 철거명령을 냈느냐고 난리를 치는데, 그래서 그때 봉평 시장에서도 전부가 서울식당이 군수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군수가 옛날에 조그맣게 지은것도 알지 왜 얘기를 안했는데 어떻게 아느냐 여론이 봉평시장에서 일단 얘기했다는것은 자자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겠다면 사전에 얘기를 했냐고 양케이트를 갔다고 해도 그것은 나올겁니다. 저는 지금 생각에 여기에서 그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 禹康鎬 委員 : 문종옥씨는 군수님을 전혀 빈적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면장님 사실 탄원서에 보면 문종옥씨가 평소 지면이 있는 군수님을 찾아가서 봉평면에서 증축을 못하게 하니까 직접 요청한바 있다라고 쓰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參考人 黃普漢 : 글썄 전혀 부탁을 안했으면 군수가 왜 나한테 욕을 하고 왜 허가가 군에서는 안된다고 그래놓고,

그때 위생계장도 와서 군수가 봐주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수십번 면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변칙적으로 허가를 군에서 건축물 대장하고 면적이 상이하면 허가를 안 해주겠다고 면에서 왔는데 일방적으로 허가가 9월 13일에 나서 그때 허가가 낫다는 소문이 나니까 여론이 나쁘니까 그 허가중이 10월 22일에 면에 왔습니다. 한달간 있다가 오니까 봉평면의 여론도 나쁘고 그랬는데 하여튼간에 군수님이 누가 부탁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옆에 불인것을 봉평에도 언제 불였는지 아는 사람이 면사무소도 없고 저도 그때 군수한테 욕을 얻어먹을때 옛날에 어떻게 불였는가 짐작을 했지, 전혀 그것을 불인것을 아는사람도 없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정확하게 문종욱씨가 군수님한테 부탁을 했다라는 것은 안가지고 계시네요. 그러니 면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는 것이지요?

○ 參考人 黃普漢 : 생각이 아니고 그때 봉평시장에서 여론이.....,

○ 禹康鎬 委員 : 여론은 그랬는데 면장님 쓰신것 보면 봉평면에서 증축을 못하게 하니 군수의 협조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쓰셨으니까 면장님이 확실히 알고 쓰신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 參考人 黃普漢 : 저는 그때 주민들이 도시계획 관계로 해서 그당시에 군에 여러번 드나드신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때 계속 드나들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가지로 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때 여론이 전부다 잦다왔다고 해서 그사항에 대해서는 그겁니다.

○ 禹康鎬 委員 :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으로 나와있는 내용들이 사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까지 많이 거론이 되어서 매일나오다시피 여러날 나왔습니다 언론보도 내용하고 지금 성명서 내게된 내용에 면장님이 개입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 參考人 黃普漢 : 저는 개입해본적이 없습니다. 요즘 제가 그만둔 다음에는

경찰서에 요전에 출두한 외에는 매일 집에 가만이 들어앉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봉평면의 어떤 사람에게 물어봐도 알겁니다. 제가 봉평면의 변영희나 누구에게나 내가 그만두었으니까 뒤에서 도와달라고 전혀 누구에게도 얘기해본적도 없고 또 제가 집에 들어앉아 있었기 때문에 햇별을 사실상 못보았기 때문에 얘기만 하면 골이 텅하고 그래서 전혀 시장에도 무엇을 사러 두번 올라갔는지 전혀 누구에게 부탁이 없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후에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34년간 공직에 계시다가 이번에 사임하신 황보한 면장님께 경위가 어떠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오늘 우리 의회진상파악특별위원회에 참고인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있는 세분께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황보한 면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우강호 위원님께서 간단

하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문종옥씨 말씀으로는 전혀 군수를 찾아가 부탁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황보한 면장님께서 그 탄원서 내용에 봉평면에서 중축을 못하게 하니 군수의 협조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사실을 정확하게 면장님이 눈으로 보거나 확인한 사실은 없으시지요?

○ 參考人 黃普漢 : 눈으로 본일은 없습니다.

○ 李洙現 委員 : 그럴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 參考人 黃普漢 : 결과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 李洙現 委員 : 그렇게 짐작을 하시는 내용이지요?

○ 參考人 黃普漢 : 네.

○ 李洙現 委員 : 그다음 두번째로는 형언할수 없을 정도로 질책을 군수가 면장님을 하셨다고 탄원서에 표현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실수 없습니까?

○ 參考人 黃普漢 : 전에 말씀드린대로

" 왜 옛날에 그 옆에 붙인것은 철거를 안하고 그앞에 조금붙인것은 철거명령을 했느냐, 증축좀 한다고 사람이 다니지 못하느냐, 증축좀 한것인 무엇이 불편하느냐, 증축좀 한것에 대하여 어떤놈이 여론을 만드느냐, 면장이 조그마한 사항을 가지고 민원만 만든다" 주 내용이 그것입니다.

○ 李洙現 委員 : 그 외에 다른사항은 없습니까?

○ 參考人 黃普漢 : 다른 사항은 옥을 계속 하는거지요.

○ 李洙現 委員 : 구체적으로 옥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參考人 黃普漢 : 옥은 제가 모욕적으로 당해서 계장들을 올라오라 해서 나서울식당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제재를 가한것도 없고 단지 우리 직원들이 단속한것을 법에 있으니까 결재를 안할수가 없어서 내가 결재를 했고 그런것인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호통을 치고 난리를 치니 한 10분동안 옥을 얻어먹었으니 저는 평생에 그렇게 옥을 얻어먹기

는 처음입니다. 주내용은 아까 말씀드린것이고 다른 옥을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 李洙現 委員 : 그다음 불법증축 부분에 대하여 철거를 종용 하였으나 군수가 보호하여주는 집이므로 다시 손을 못쳤다 라고 탄원서에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래서 면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재도 못하셨습니까?

○ 參考人 黃普漢 : 네. 그래서 그다음 결재를 못했습니다. 그다음 결재를 하면 명의를 봉평면장으로 나갔으니 군수님은 또 어떻게 알던지 알테니까 봉평면장은 뱃한애기로 재가되니 하루라도 공무원 생활을 해먹으려면 방법을 그렇게 봉평면장 이름없이 직원들한테 이것을 이해와 설득으로 작은면적이니까 큰면적 같으면 철거하기 힘들지만 작은면적이니까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바꿔 보라고 얘기 했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면장님 혹시 공무원이 상부로부터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參考人 黃普漢 : 그것은 알고 있지요

○ 李洙現 委員 : 인간적으로는 면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렇지만,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상부의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않을 의무가 면장님한테도 있으신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다음 그동안 계속된 언론보도내용을 잠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 민선군수가 일선면장에 대해 사퇴를 강제종용해 사표를 받고 하루만에 전격 수리해 무리를 빚고 있다" 이런내용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 參考人 黃普漢 : 네.

○ 李洙現 委員 : 여기에 보면 말이지요 또 사퇴를 강제종용한 이유가 공무와 관련 면장이 적법하게 처리했는데도 민선군수가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삼아 전격 조치한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기 이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과 같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 參考人 黃普漢 : 제가 적법, 부적법하게 처리한것은 없으니까 사실과 같지요.

○ 李洙現 委員 : 그다음 역시 2월 28일자 언론보도에 보면 "일선면장이 민선군수의 강압적인 사퇴종용에 못이겨"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상 이 강압적인 사퇴종용이 면장님 생각에는 맞다라고 생각 하십니까?

○ 參考人 黃普漢 : 그것은 확실합니다. 내무과장이 저한테 와서 봉평면장은 소방목 문제때문에 군수님하고 인연이 맞지 않는것 같다, 그러니까 사표를 내는 것이 좋겠다, 만일 사표를 내지 않으면 직위해제를 군수가 시킨다고 한다, 이러니까 저는 사실상 아시다시피 공무원생활 34년간에 조그마한 징계조치도 받아본 일이 없는데 막상 면장 3년제인데 이제와서 내가 불명예 퇴직을 하면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먹다가 나왔다고 그럴것이 아니냐, 직위해제를 당하면, 그러니까 내가 불명예 퇴임을 하는것 보다는 차라리 명예롭게 사표라도 내면

불명예스러운 직위해제라도 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사표를 썼던 사실입니다

○ 李洙現 委員 :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지금 면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면장님이 그런 사표강요를 받아서 어쩔수 없이 사표를 쓰셨다 라고 주장하시는 부분이고 또 상대방 측에서는 사표강요한 사실이 없다라는 논쟁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 그부분에 대해서 혹시 면장님 별정직 공무원이 직위해제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 參考人 黃普漢 : 저는 그때까지는 사실상 몰랐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저희가 생각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면장님이 34년동안 공직에 가시다가 사표를 내는 마당에 쉬운 말로 무서울것이 뭐 있겠습니까?

○ 參考人 黃普漢 : 그렇지요.

○ 李洙現 委員 : 그러면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이라던가 또 충분히 군수의 어떤 사표강요에 못이겨서 별 정도라면 사실상 사표를 내시기

전에 투쟁을 할 가치가 충분히 있었지 않느냐, 이러한 점을 저희들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 參考人 黃普漢 : 저도 상당히 아쉬운 것은 같습니다

○ 李洙現 委員 :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의 약간 뭐라 그럴까요, 조금함이라할까 이런부분은 면장님.....,

○ 參考人 黃普漢 : 저는 직위해제를 한다고 그러니 나중에 안 사실입니다만 별정5급공무원은 직위해제를 한다고 그러니 나중에 나옵니다만, 인사위원회에서 협의를 했느니, 이렇게 공갈을 쳐서 나를 사표를 안내면 직위해제 한다하니 나는 공무원생활 34년에 명예롭게 그만 두어야 하는데 직위해제를 하면 낮을 어떻게 들고 다니냐, 제가 오늘 나올때도 잘못은 없습니다만, 우리 평촌사람들이 나를 볼까봐 유리창앞의 문을 닫고 왔는데 내가 큰 잘못은 없이 그만 두었으니 이렇게 다니거나 하지 직위해제라도 되었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겠느냐 이런 생각도 참 들어갔는데,

○ 李洙現 委員 : 제가 면장님을 어떤  
그렇게 말씀드리는 차원이 아니고 34년  
동안 몸담고 계시던 공직인데 사전에 충  
분한 검토를 하실 시간의 여유는 있었지  
않았나, 너무 조급하지 않으셨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 參考人 黃普漢 : 지금 아쉬운것이 뭔  
가 하면 내무과장이 나한테 와서 직위해  
제를 한다고 할때에 내가 녹음이라도 해  
놓았어야 하는데 녹음 못한것이 아쉽고  
그래서 제가 그다음 이튿날 봉평면 번영  
회에서 유지들, 이장 몇하고 봉평면 회  
의실에서 봉평면장이 사표를 내게된 과  
정을 얘기하라 해서 제가 그 과정대로  
얘기 했습니다. 내무과장이 12시 20분  
에 면사무소의 면장실에서 만나서 하는  
말이 면장은 우리 군수님하고 인연이 없  
는것 같다, 그래서 사표를 내지 않으면  
직위해제를 시킨다더라, 이것은 인사위  
원회에서 다 통과되었다 이렇게 제가 봉  
평면 번영회에다가 그대로 얘기한적이  
있고, 그다음 27일날에 봉평면 번영회  
에서 내무과장을 봉평면에 와서 봉평면

장 사표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내무과장이 봉평면에 갔습니다.  
그래서 봉평면 회의실에서 강영환 목사  
가 질의를 했습니다. 봉평면 번영회원  
11명이 있는 자리에서, 뭐라고 질의를  
했는가 하면 봉평면장한테 25일날 칭취  
를 하니까 내무과장이 봉평면장을 평창  
군수가 직위해제를 시킨다고 했다는데  
그러면 직위해제의 대상이 됩니까 하니  
까 봉평면장은 지금까지 한일은 완전히  
직위해제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경찰  
서 대질신문에서도 시인 했습니다.  
그다음 그러면 이사항을 어떻게 협의  
를 했느냐 하니까 이사항은 군에서  
군청내에서 충분히 봉평면장 직위해제  
건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봉평면의 11명이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오늘 경찰서에 그분들이 진술을  
하러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총괄적으로 면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로 인

해서 어떤 면장님과 군수의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여러사람, 상당히 여러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물의를 빚고 있는데 면장님 앞으로 이일에 면장님이 어떠한 방향을 선택하실지, 현재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參考人 黃普漢 :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축산농가도 와있고 문종욱씨도 조그맣게 짓다가 법이라는것이 무서워서 출두를 하고 그랬는데, 저는 평상시부터 일평생을 누구한테 해를 한번도 끼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때문에 어떤 공무원이 처벌 받는다는것도 바라지 않고 축산농가나 문종욱씨나 조그만 문제를 가지고 처벌받는것을 희망하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공갈협박에 의해서 민선자치단체장은 별정 5급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권한도 없는데 직위해제를 시킨다는 공갈협박을 해서 제가 본의 아니게 그만두다 보니까 지금도 어제 그저께 저희들 동네에 어떤 아주머니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신문을 보고 개명

된분들은 봉평면이 어떻게 되어서 그만두었다, 죄는 없다는 것을 다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봉평면장이 재직시에 돈을 먹어서 군수가 사표를 내라고 그랬다, 이렇게도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법적인 명예회복만은 해야되겠다, 저는 이겁니다. 또 아울러서 제가 예들들어 복직을 한다 할때 이 군수 밑에서 재직한다면 어떤것을 잡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명예회복과 동시에 내가 요즘 청심환 먹고 지냅니다. 그래서 내가 정신적인 피해라던지 피해보상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金鍾永 委員 : 김종영 위원입니다. 면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듣기 언짢고,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지금 면장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세부사항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면에는 면장님이 행정책임

자지요?

○ 參考人 黃普漢 : 책임자지요.

○ 金鍾永 委員 : 군에는 군수가 전 군을 담당해서 행정책임자고, 그러면 면장님께서 주민들의 여론이 많아지고 또 여러가지 주민들에 대한 건의라던가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군수로서는 우선 면장님을 상대로 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면장님을 상대로 해서 사건여하의 어떤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또한 상급자로서 상사로서 또 면장님께 여러가지 언짢은 얘기도 할수도 있고 또 질책도 할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면장님께서 쪽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거의다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전에 공갈협박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갈협박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공갈협박이라고 하셨습니까?

○ 參考人 黃普漢 : 공갈협박이라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것 보니까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인 군수는 별정5급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권한이 없는데 직위해제를 한다고 해서 저를 사

표까지 내게된 것은 완전한 공갈협박이 아니겠습니까? 직권남용이고,

○ 金鍾永 委員 : 내무과장께서 방문을 해서 면장님께 그렇게 강요를 했습니까?

○ 參考人 黃普漢 : 강요보다도 공갈협박으로 나를 사표를 안내면 직위해제를 시킨다고 한다.....,

○ 金鍾永 委員 : 그것은 내무과장이 방문해서 면장님께 사표를 안내면 직위해제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더라 그런 오고가는 얘기를 했겠지요.

○ 參考人 黃普漢 : 오고가는 얘기가 아니고 사표를 내라고 하는것이지 오고가는 얘깁니까?

○ 金鍾永 委員 : 그러니까 면장님께서 공갈협박이라고 소리를 질러가며 안내면 어떻게 하느냐고,

○ 參考人 黃普漢 : 그러니까 군수가 별정5급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권한도 없는데 자기네들이 인사전문가 아닙니까, 지방자치법이 생기고부터 새로 그런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런 군수한테 별정5급에 대해서 직위해제 권한이라도 있으면

서 얘기했으면 좋은데 전혀 권한도 없는 데도 저한테 얘기한것은 공갈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金鍾永 委員 :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장님께서 직원들이 담당계장이 부면장까지 결재를 해서 결재를 해주십사 하고 가니 면장님께서 결재를 안하셨는데 아까 말씀이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결재를 안했다고 하는데 지금 결재를 안하므로 해서 지금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문제점이라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 參考人 黃普漢 : 저는 그당시에는 공문을 내는것 보다는 좋게 출장을 해가지고 가서 이해와 설득으로 철거하도록 하는것이 좋겠다 이야기만 했고 지금 그런것까지는 생각을 안해보았습니다.

○ 金鍾永 委員 : 직원들 말에 의하면 면장님이 결재를 안하셨기 때문에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이 안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밀의 직원들한테 모든 문책이 직원들에게 돌아 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參考人 黃普漢 : 그것때문에 서울식당 때문에 모든 책임이 밀의 직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0.7명 증축을 제가 결재를 안해서 그때 고의적으로 결재를 안한것도 아니고 진정서에 있는것 같이 군수가 나에게 욕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결재를 하면 하루라도 면에 붙어있지도 못하고 나는 재발이 될것이니깐 그렇게 억압을 하는데 어떻게 제가 결재를 합니까? 서울식당 또 철거 하라면 군수가 또 저를 그냥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문보다는 그냥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철거하는것이 좋겠다, 제가 직원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 金鍾永 委員 : 그때 업무처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처리가 안되어서 지금 불법 건축물로 고발이 되어 문제가 발생되었습니까?

○ 參考人 黃普漢 : 그것은 제가 그만두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이지,

○ 金鍾永 委員 : 그리고 면장님 재직하시는 동안에 문종욱씨 부부도 여기와서

있습니다만, 면장님 별도로 찾아뵙고 부탁을 받은바 있지요?

○ 參考人 黃普漢 : 서울식당에서 문종옥씨가 얘기했다고 했던 그때는 내가 대답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증축을 하고 그런것이 아니고 증축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냥 벽을 고치고 그런다고 해서 그런것은 이해할수 있다고 그랬지 증축을 하라고 어떻게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서울식당이 조금 표현을 잘못된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서울식당과도 평상시에 가까운 처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증축을 하라고 한것이 아니고 증축이 문제가 된것이 뭔가하면 조금 0.7평 , 1평도 안되는것 조금 늘린것이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증축을 하라는것이 아니고 그냥 벽을 그대로 고치는것, 그대로 벽을 고치는 것은 괜찮지 않습니까?

난 그냥 그대로 고치는것은 뭐한데, 내가 자세한것을 아느냐, 산업계장한테 가서 알아보라고 말씀을 드렸지, 그것이 분명히 생각이 나는데,

○ 金鍾永 委員 : 그리고 지금 재직하시는 동안에 지금 봉평면내에 불법건축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 參考人 黃普漢 : 글쎄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金鍾永 委員 : 면장님 문종옥씨 외에 찾아가신 분이 있지요? 면장님 찾아가서 잘봐달라고 한.....,

○ 參考人 黃普漢 : 나를 찾아와서 봐주라는것은 불법으로 하라는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 金鍾永 委員 : 하라는것이 아니고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있는분이 혹시 찾아가신분이 있지요?

○ 參考人 黃普漢 : 그것은 생각이 안나는데요.

○ 金鍾永 委員 : 면장님 여러가지로 오늘 답변도 많이 하시고 상당히 피로움이 많을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가지로 볼때에 우리 면민들이 편안하게 잘살고 또 군민도 잘살고 서로 도와가며 사는것이 제일좋은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우리 같은 동료위원이 문

의를 하셨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 參考人 黃普漢 :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축산농가나 서울식당이 조그맣게 지은것을 뺏아서 제 개인생각 같아서는 철거를 하는것 보다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 드렸지만 소방도로가 날때에는 철거를 한다던지 그러는 것이 내 개인생각으로는 좋은것 같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나 여기 농가나 어떤 조그만 처벌도 조금도 양심적으로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저의 명예만은 회복하는것이 저의 할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金鍾永 委員 : 그러면 군이나 면행정이나 또 지역주민이나 잘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할 용의는 있습니까?

○ 參考人 黃普漢 : 협조요?

○ 金鍾永 委員 : 네.

○ 參考人 黃普漢 : 협조야 당연히 저도 봉평면민의 한사람이니까 협조는 해야지요. 또 저는 솔직한 얘기로 저때문에 봉평면이 이렇게 시끄럽다는 것은 제가 사실상 잘했던 못했던간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빨리 나름대로 묘책이 나와서 수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金鍾永 委員 :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 委員長 李慶鎭 : 위원여러분, 시간관계상 가끔적이면 중복된 질문을 피하시고 요점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斗經 委員 : 김두경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하여주신 전 황보한 면장님과 아울러 문종욱 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보한 전면장님께 묻겠습니다. 사표를 내게된 동기가 바로 고래뱃속 문제냐, 그렇지 않으면 광희중의 축산농가 때문이지 그 두가지 중에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參考人 黃普漢 : 저는 사표낸 동기는 단지 내무과장이 봉평면의 면장실에 와 가지고 미리 그때 아침에 총무계장을 통해서 내가 봉평면장을 만나러 가겠다, 그러니까 눈썰매 대회를 하다가 내가 왔

다고 만나게 해달라, 총무계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12시에 총무계장이 내무과장이 왔느냐고 전화를 거니까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무과장을 면장실에 오다보니까 12시 20분에 만났어요. 그래서 악수를 하고서 내무과장이 하는 얘기가 아까처럼 봉평면장은 군수하고 인연이 없다, 그래서 사표를 내지 않으면 직위해제를 한다고 하니까 사표를 내는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표를 낸것이지 직위해제를 한다는 그 요건이 원인입니다.

○ 金斗經 委員 : 아니 그 발단 동기가 고래뱃속으로 인한 문제나.....,

○ 參考人 黃普漢 : 그것은 군수 얘기가 봉평면장은 방목때문에 군수하고 인연이 맞지 않는것이다, 이렇게 얘기 하더래요. 내무과장 말로 그러니까 방목 관계겠지요.

○ 金斗經 委員 : 사표는 현재까지 황면장님께서 자의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요라고 생각하십니까?

○ 參考人 黃普漢 : 저는 제가 사표를

자의로 냈다면 제가 솔직한 얘기로 우리 직원들한테 전부 계장들이라도 모아서 나는 이렇게 공무원생활 오래 하다보니까 싫으니까 사표를 내겠다 이렇게 협의 해가지고 내가 정식으로 사표를 써가지고 총무계에다 공문으로 전달하라고 이렇게 줬겠지, 제가 불시에 아무도 모르게 우리집에도 우리 안들도 제가 사표를 냈다니까 깜짝 놀래서 제가 평상시에 정식으로 자의에 의해서 사표를 낸다면 적어도 우리 식구하고는 의논해서 우리 아들딸 하고는 의논을 했어야 할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무과장이 나한테 와서 법에도 없는, 제도에도 없는 직위해제를 시키겠다고 하고 그다음 봉평면 변영회에 와서 봉평면장이 직위해제 사유가 되느냐고 하니까 봉평면장은 지금까지 한 일이 직위해제가 된다, 또 이사실을 군청내에서 충분히 협의했다, 또 인사위원회에서 협의했다, 이렇게 얘기한 사실이 있고, 저는 절대적으로 제가 자의에 의해서 아무도 모르게 내식구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그날 토요일날 저녁때 킁킁

해서 퇴근을 하는데, 제가 봉평면장으로 간다음에 제일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황보한 이었습니다. 참 찜찜한 얘기로 제 사무실이 2층에 있는데 내려가다보면 직원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참 내가 사표를 내던날 우리 안들에게 관사라고 지도소 사무실을 관사라고 만들었는데 거기서 한 반절은 자고 그러는데 그래서 나중에 책, 옷, 이불등을 가지고 가라고 전화를 거니까 우리 안들에게 전화를 거니까 " 왜서요" 그래서 내가 그만두었다고 하니까 우리 안들도 놀라는 겁니다. 왜 당신이 무엇을 잘못해서 그만두었냐는 겁니다. 그래 그때도 눈물이 나고 그러고 계장들 한테도 그날 요전에 군수님한테 욕을 얻어먹고 눈물을 흘리고, 그날 사표를 써가지고 주경미한테 불이라고 하고 눈물을 내고 그다음 2월 1일날 사표는 계장들이 저한테 와서 봉평면장이 잘못된것도 없는데 왜 사표를 내느냐고 해서 제가 30분만에 처리를 하고서 직원들하고 서울대가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들어왔습니다

다만, 그다음 제가 계속 근무를 잘하는데 느닷없이 2월 24일날 봉평면 축제행사날인 군수님은 거기서 그런 축제를 하는데 군수님이 벌써 주태원 전 초대의원님하고 변영희장하고 불러가지고 봉평면장을 인사조치 할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해서 그분들은 봉평면장이 일 잘하는 사람을 갔다가 인사조치 하느냐, 맨처음에 그분들은 다른면으로 보내는가 이렇게 알았답니다. 그래서 절대 반대한다, 당신이 일잘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러니까 듣지않고 그다음에 25일날 우리 주태원 의원님하고 변영희장하고 또한분하고 해서 세분이 군수님이 봉평면장이 사표냈다고 그랬기 때문에 사표낸 다음날 군수님을 찾다가 찾다가 찾은것이 보광 11층 호텔에서 묵고 있는것을 찾아가지고 봉평면장 인사조치만은 고려 해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사정사정해도 군수는 소신이 자기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하고 참 제가 이번에 이사표를 낸 동기를 갔다가 일일이 얘기를 하면 참 눈물이 납니다. 제가 그래

서 우리집에 가도 우리안들하고 나하고  
올고불고 우리 직원들 있는데도 내가 2  
월 1일날 군수한테 욕을 얻어먹고 처음  
서울식당 증축에 따라 군수가 나를 욕을  
하고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왜 올니까,  
내가 올고불고 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해  
주고 그래서 제가 사실상 직위해제 한다  
고 안그랬으면 왜 갑작스럽게 그만두겠  
습니까, 공무원이라는것이 명예가 중  
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명예로 그  
만두면, 저는 그때 군수한테 직위해제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랐으니까, 제  
가 알았더라면 직위해제 시킬려면 시켜  
라 하고 우기고 나서는데, 작년에도 법  
이 개정된것을 몰라서 제가 참 아쉬웠는  
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 金斗經 委員 : 잘알았습니다. 면장  
님 감사합니다.

문종욱 사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증축신고시에 지붕수리 신고를 했습니까  
벽수리 신고로 들어갔습니까?

○ 參考人 文鍾玉 : 그것은 제가 수리  
신고를 한것이 아니고요. 그사람 수리

하는 사람들이 그냥 말로 기사한테 찾아  
가서 이야기를 하니깐 그것은 허용 받기  
를 집을 뚫어진곳은 비가 세니까 받은  
수리하고 받은 수리를 안하니까 수리를  
하계끔 이렇게 합의를 얻어냈다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족관 나오는곳은 허용  
을 해서 수족관을 뜨락에다 놓으라고 인  
정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일을 시작했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는 거기까지밖에 모릅니다.

○ 金斗經 委員 : 면으로부터 공사 불법  
증축이다 해가지고 공문으로 통보받은것  
이 있습니까?

○ 參考人 文鍾玉 : 있습니다.

○ 金斗經 委員 : 몇회나 됩니까?

○ 參考人 文鍾玉 : 두번 받은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 金斗經 委員 : 앞으로 이 증축부분에  
대해서 문사장님께서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參考人 文鍾玉 : 증축부분은 제가  
해명서에 밝혔드시 주민이나 혹은 군이

나 어떤 도로상이나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다음 그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김위원님께서 저한테 물으니까 제가 답변을 하는것으로 답변 하겠습니다. 그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한것이 아니고 그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30cm 나온것을 자기 편의상에 수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것을 지금 어떻게 뜯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이것을 뜯어라, 나중에 그런문제가 생겨서 들여놓아라, 2차에 걸쳐서 역시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듣지않고 그냥 했던 겁니다. 그러면 집을 세를 얻은 사람이 시행하는 방법을 동원했으면 모르는데 집을 수리하는 사람들이 면에 찾아가서 우기사를 보고 이야기를 해서 납득을 시키고 이해를 얻어낼려고 주민들이 전혀 단 1cm도 도로로 점용한 사실도 없고 그전에 발판으로 밟고 올라다니던 발판에다 세운것 뿐인데 1cm도 도로로 접하지 않았는데 말이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만든

것으로 제가 봅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성명서가 나온 동기를 보면 중복된 얘기를 할필요는 없는데 50cm이상을 도로에 점용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의원님들께서 와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단 1cm도 나온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대로 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보면 금이 간 밟고 다닌 계단에 그 위에 그냥 찌꺼기 현저하게 있고 단 1cm도 도로점유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황면장님께서 제가 도시계획 문제 때문에 군에 자주 드나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신군수가 민선군수가 들어올때가 아니였고 전에 계시던 군수님이 계실때 그때 지금 보광으로 가신 이용세 과장님이 도시계획 과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도시계획 문제때문에 오늘 그것도 참고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저희집과 그 도로와 관계가 있어서 신경을 썼던 분야입니다. 도시계획도를 보니까 이 도시계획도가

봉평면으로서는 소방도로로서는 가장 잘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어서 이문제가 이 도시계획과에 와야만 해결되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서 도시계획과에 94년도인가 95년도에 이용세과장님이 계실때 와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잘못된것이 아니냐고 도시계획에 소방도로가 디긋자로 불이나면 직선으로 소방차에서 달려올수 있게끔 되어 있어야지 4통 8달이 되어야지 디긋자로 구불구불 돌아와서 이미 불이 다 탄다음에 와서 되겠느냐,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제가 못을박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장님께서 아마 경제적인 면에서 그랬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경제적이라면 새로 우리집 옆으로 내는 도로를 예를들어 100m라면 그쪽에 정석으로 내면 50m도 안된다, 반밖에 안되는데 경제적으로 덜들어가는데, 이런 답변이 맞는 답변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송계장이라는 사람이 오더니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평창군내에 도시계획을 한곳을 가

보면 하나도 이렇게 된 도시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시정될것이니 우리가 시정 될때에는 반드시 통보가 있을테니 와서 해명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사실은 민원으로 벨려고 왔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군수한테 민원을 못내고 갔습니다. 그것이 한번이 아니고 두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전 계서던 군수님 계실때 이용세 과장님이 계실때 두번 왔다간 사실은 있으나 지금 신민선군수가 된다음에는 한번도 와본일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金斗經 委員 : 두분 감사합니다.

○ 劉燉文 委員 : 유돈문 위원입니다. 면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면장님 결재하신것이 불법건물이라고 직원이 결재할때에 6월 29일은 철저히 결재를 하셔서 민원인에게 나갔는데 그다음 22일날 결재를 안하셔서 직원이 민원인에게 통보를 못해서 2차 통보를 하고 고발 조치를 내려야 하는데

면장님이 결재를 안하셔서 2차 통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담당공무원이 직무를 수행못한것으로 되어서 공무원이 견책이나 문책을 당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면장님 결재를 안하셔서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왕 면장님이 결재를 하셔도 군수님한테 어떻게 입에 못담는 얘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면장님 책임은 당연히 결재를 하셔야 할줄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하셔서 직원이 민원처리를 못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장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參考人 黃普漢 : 저는 그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작은평수이기 때문에 이해와 제가 그때 분명히 그랬는데 그것을 공문으로 하는것 보다도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철거를 하도록 해라, 큰평수라면 몰라도 작은평수는 이해와 설득을 시키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 한 사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는 제가 생각해본적이 없습니다.

○ 劉燾文 委員 : 지금현재는 서류로 보아서 면장님이 결재해서 담당 산업개발계장님하고 토목기사 우경운이가 정계를 먹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면장님 결재 하나때문에 기왕이면 한번 마주 했으면 직원은 살릴수 있지 않습니까?

○ 參考人 黃普漢 : 저는 지금 그만둔 입장인데 제가 지금.....,

○ 劉燾文 委員 : 지금 그만 두었을때는 답변이 맞는데 그때 면장님이 재직해 계실때 안하셔서 직원이 지금.....,

○ 參考人 黃普漢 : 그것은 제가 군수가 제가 결재만 하면 내가 재가 되는데 그때의 형편으로는 어떻게 할수가 없지 않습니까?

○ 劉燾文 委員 : 면장님 권한인데 군수한테 욕을 당하시더라도 공무원으로서 불법지시는 옹하지 않게 공무원의 신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무원에 발탁이 되셨으면 군수님이 야단을 치시더라도 결재를 해야지 밑의 사람은 안다치잖아요.

○ 委員長 李慶鎮 : 그부분은 중복되는 질문성격이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相薰 委員 : 이상훈 위원입니다. 가득이나 심정이 착잡하신데 오늘 주민 신분으로 의회에 출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 합니다. 두어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내무과장한테 사표 중용을 받고 현재 김용욱 군수한테 대단히 좋지 않은 꾸중을 듣고 그래서 강압에 못이겨서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군수나 내무과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명예훼손이라던지 법적 절차를 밟은적이 있습니까?

○ 參考人 黃普漢 : 지금 현재까지는 진정서 낸것 외에는 법적 절차를 밟은것이 전혀 없습니다.

○ 李相薰 委員 : 본인이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지난 95년 1월서부터 4월까지 더군다나 면장님이 살고 계신 평촌인가 거기는 객토, 흙을 갔다가 앞에 광희중씨 하천에다 복토를 했는데 아침 저녁으로 다니면서 면장님 내용을 매일 보고

출퇴근 하셨을텐데.....

○ 委員長 李慶鎮 : 광희중씨 문제는 이것 끝나고 다음에 답변을.....,

○ 參考人 黃普漢 : 저는 저녁에는 주로 밤에 퇴근하는것이 95% 이상입니다.

또 아침에는 일찍가니까 겨울에 추우니까 누가 눈여겨 봐야지 모든것을 보는것이지 눈여겨 보지 않으니까 그런것은,

○ 委員長 李慶鎮 : 시간이 너무 장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음 시간에 서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해주면 회의진행이 원만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훈 부의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相薰 委員 : 알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우강호 위원입니다. 제가 황보한 전 면장님께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시간에 있을 공무원 들하고 대질 질의때문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군수께서 일반음식점 구조변경 중용 사실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사회계장께서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까?

○ 參考人 黃普漢 : 공문이 그렇게 왔고요. 사회계장이 그때 면에 수차례에 왔다 갔습니다. 그것은 봉평면 직원들이 다 아는 일입니다.

○ 禹康鎬 委員 : 오서가지고 면장님한테 군수가 허가를 내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면장님께 얘기 했습니까?

○ 參考人 黃普漢 : 네. 맨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랬지요. 나중에 이상하게도 원인은 알수 없습시다만, 공문은 일치후에 허가를 내준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아무 얘기도 없이 허가가 나오니까 그래서 봉평면 번영회에서 상당히 얘기가 많았지요.

○ 禹康鎬 委員 : 네. 알겠습니다. 다음 봉평면 부면장님하고 산업계장께서 군수께서 면장님 질책하신 내용, 하소연 내용을 면장님께서 참모들을 불러놓고 아까 말씀하셨다고 그랬지요?

○ 參考人 黃普漢 : 내가 욕을 얻어먹은 것을 계장들한테 얘기 했지요.

○ 禹康鎬 委員 :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이런식으로 하소연을 했

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參考人 黃普漢 : 네.

○ 禹康鎬 委員 : 다음 세번째로 구조변경 허가처리가 9월 13일자로 통보 되었지요?

○ 參考人 黃普漢 : 네.

○ 禹康鎬 委員 : 그런데 10월 13일까지 지연통지한 특별한 이유가 됩니까?

○ 參考人 黃普漢 :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번영회에서 허가가 났다는 소문을 듣고서는 번영회에서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군에서 보낸 공문이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 禹康鎬 委員 : 군에서 발송한 공문이지만 어차피 면사무소를 경유해서 면장님 결심을 얻어서 공문이,

○ 參考人 黃普漢 : 우리가 전달을 면에서 했지요.

○ 禹康鎬 委員 : 전달을 해도 면장님 결재를 통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조변경 허가처리가 9월 13일자로 되었는데 10월 13일 한달동안 민원인한테 주지

않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 參考人 黃普漢 : 글썸 그것이 군에서 13일날 허가는 났는데 10월 22일날인가 한달 있다가 군에서 공문이 봉평면으로 왔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군에서 그렇게 보냈습니까?

○ 參考人 黃普漢 : 군에서 왔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면에와서 한달동안 있었던것이 아니지요?

○ 參考人 黃普漢 : 허가는 9월 13일날 났는데 10월 22일날인가 23일날에 봉평면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慶鎮 : 보충질문 하실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그럼 이상으로 두분 참고인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후 4시에 다시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 15時 46分 停會 )

( 16時 00分 續開 )

○ 委員長 李慶鎮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외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주시는 광희중씨에 대한 경위 청취와 질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확보한 참고인에게서 광희중씨의 안전과 관련 그동안 있었던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參考人 黃普漢 : 이옆에 광희중씨가 와 계십니다만, 광희중씨가 젖소를 약 40두 가량 키울수 있는데 방목을 하다보니까 하천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소가 하천에도 가고 그래서 여론이 있었습니다. 방목을 저지해 달라고 또 여론이 없더라도 면장으로 봐가지고는 소가 하천에 방목된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제가 우리 산업계장이

면장실에 온것을 갔다가 하천에다가 소를 방목하는 광희중씨가 평촌에 사는데 나하고도 친하지만 소 방목된것은 바람직 하지 않으니까 소를 하천에 방목하지 말라는 각서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왜서 그랬는가 하면 그 바로 밑에 200m 지점에는 팔석정이라는 것이 있고 또 직선으로 4km 미만 지점에는 용평면 상수도가 백옥포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이 생각할때도 하천에다 소 방목하는것은 바람직 하지 않기 때문에 하천에다가 소를 방목하지 말라는 각서를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은 겨울동안이기 때문에 광희중씨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1월말경에 축협조합장이 봉평의 광희중씨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거기서 우리 광희중씨 부인께서 소를 여러마리 키우다 보니까 애로사항을 얘기한 모양입니다. 소방목도 면에서 저지하고 그래서 또 소가 옛날 조그만 축사에서 여러마리 있다 보니까 송아지 두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소가 두마리가 죽었다는

얘기며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월 1일날 느닷없이 군수님이 저한테 전화를 받으라고 해서 전화를 받으니까 " 소방목좀 한다고 오염된것이 뭐냐" 해서 주민의 여론이 많다고 하니까 " 어떤놈이 소 방목을 못하게 하느냐? 하천을 임대하여 소 방목좀 하는것이 무엇이 잘못이나, 축사는 왜 허가를 해주지 않느냐" 하면서 그때 저한테 한 10분동안 모욕적인 욕을 하고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즉시 총무계장을 올라오라고 했더니 부면장이 같이 올라왔더군요. 그래서 내가 군수한테 형언못할 욕을 다 얻어 먹었는데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작년에도 욕을 하고 난리를 치더니 또 욕을 하고 난리를 치니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제가 거기서 사표를 썼습니다. 사표를 써가지고 우리 회계 여직원 주경미를 올라오라고 해서 주경미가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군수가 나는 죄도 없는데 이렇게 소방목 때문에 욕을 하니까 그만둔다,

하면서 오후에 보내라고 그랬지요.  
그랬더니 주경미는 내려가고 그다음 총무계장이 계장들 다 올라오고 그런곳에서 내가 이렇게 군수한테 욕을 얻어먹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한탄하니까 면장은 34년간 공무원 생활을 한분이고 군수님은 행정경험은 이제 불과 6-7개월에 불과한데 면장이 참아야 되지 않느냐, 저를 설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30분만에 계장들이 그러니까 사표낸것을 찢어 치워야지, 그래서 우리 총무계장이 주경미한테 사표 찢어 치우라고 하고 계장들이 식사를 하러 가자고 해서 봉평면 대가집이 있는데 그곳에서 중식을 하고서 오후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저는 축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한 얘기로 전혀 아는 사항이 없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2월 24일 그것이 군수한테 미움을 먹어서 사표를 내지 않으면 직위해제시킨다는 것이 동기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축산관계에 대해서는 단지 각서를 받으라는 얘기밖에 한것이 없어서 말씀

을 드렸습니다.

○ 委員長 李慶鎭 : 황보한 참고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광희중 참고인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參考人 郭喜中 : 저는 우사들 12월 중순께 면사무소 변훈남씨가 축산담당을 하는데 그때 황계 어디에서 질려고 하던 사람이 안짓는다고 지을수 있으면 지으라고 그리고 그전에도 환경과에서 오물나가고 그런것은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2월도 다 오고 눈올때도 되고 그랬는데 아주 공사가 임박해 가지고 그런데 내년 봄이라도 환경과에서 또 나오면 주의를 주지 않나 해서 했던김에 하자 해서 그것을 12월말쯤되어서 우사를 시작 했습니다. 시작하는 동안에 그전에는 우장 소 내매고 그랬던 곳에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 의원님들도 어제 와 보셨겠지만 저쪽의 하천을 점유해가지고 하는곳을 우장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좁으니까 그곳을 쳐가지고 룬밥 우사니까 우사가 될때 까지

만 내 땀려고 했던것이 각서까지 쓰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주민 등록등본을 띠려고 갔는데 산업개발계장이 오라고 하면서 각서를 써야 된다고, 왜 소를 자꾸 내매고 그러냐고 해서 그것이 발인데 내년엔 내가 일찌감치 땅만 녹으면 똥도 오염이 절대 안되게 일찌감치 트랙터로 쳐가지고 그렇게 하고 내가 내년엔 농사를 지으면 안되겠느냐, 고 하니까 면장님이 내매지도 말고 이자가 커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저도 난감하잖아요. 소가 60평에 47마리 큰소가 있는다는 것은 1평에 하나 꼴인데, 그것도 소가 뿔나서 사나운 소들이 몇마리 있습니다. 도저히 저녁으로는 잠잘때는 우장을 쳐놓은곳에 약한놈들은 자고 그러는데 내매지도 말고 그것을 하라고 각서를 소먹이는 우사가 될때까지는 봐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위의 지시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식사하러 갔는지 없었어요. 한참 추운때인데 포크레인이 와서 땅을 파 옮길수도 없고 어디 기둥을 뺄수도 없고 그래서 단,

우사 될 동안만이라도 봐줘야 되지 않느냐, 어디 개도 쫓겨나갈곳이 있어야지 내 모는 것이지 그냥 소를 오징어 처럼 포개놓을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한번가서 면장님한테 얘기를 하던지 어떻게 해서 우사 될때까지만 해달라고 사정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위의 지시고 그러니까 하라고 그러더라구요. 집에와서 그러니 또 내매지 말라는거 또 내매고 이러니 안돼겠더라구 그래 내려 오며 즉시 우사 60평에다가 47마리를 넣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그러니 약한놈들은 자꾸 들여 박고 초저녁에 한 10시까지나 9시까지는 좀 싸움하고 이러는것들은 몽둥이로 두드리고 이래가지고 자꾸 말려 났습니다. 그리고 다른소들은 조금 힘이 센놈들은 들어놓고 이래가지고 이젠 좀 괜찮겠다, 해서 집에 가면 아침 5시나 이정도 되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소가 여섯마리중에서 네마리는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두마리는 쓰러져서 소가 밟고 넘어가도 꿈틀꿈틀하고 숨만 붙어있고 이

런 정도 였습니다. 그다음에는 숨이 떨어지면 못팔지 않습니까, 새끼날때 되면 배가 무겁고 쫓겨가지 못하는 놈들이 당하기는 더 많이 당했더라구요. 두마리는 한마리에 그냥 싯가로 받아도 330만원에서 350만원은 받는데 그것을 식육점에다 얘기하니까 한마리에 80만원을 준답니다. 하두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냥 소만 있어도 그냥 걸어만 가도 고기 값으로만 쳐도 250만원짜리 인데 이것이 누워있다는것 뿐이지 그러냐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100만원씩 받았습디다. 그리고 나머지는 매일 주사놓고 그러니 이소는 못팔잖아요. 점점 마르기만 하고, 사람같으면 갈비뼈가 부러졌으면 옆구리가 아프다던지 그러는데 소니까 대충 어림짐작으로만 하지 어디가 아픈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 한달동안에 그냥 마르고 비틀비틀하니 젓을 한번도 못짜는 겁니다. 30kg씩 나왔었는데 지금 유대값이 1kg이 500원정도 받으니까 15,000원씩 수입을 주던것이 이틀에 7,000원짜리 마이신 같은것을 한병씩 놓

고 그러니 주사놓고 그런 젓은 조금만 섞여도 고름우유로 인한 우유파동도 있어서 조금의 항생제가 섞였거나 그러면 우유 한차에 300만원씩 되는것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도 팔지 못하는 실정이고 두마리는 3-4일 되어서 회복이 되어서 다른소와 합작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 소가 죽고 이틀후에 나는 속이상해 그냥 누워있고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놈이 있는데 그아이와 집사람이 소를 몰고 울고불고 할때 나는 그냥 아파서 누워 있었는데 축협장님이 오셨을 때 저같으면 얘기를 안하지요. 그런데 집사람이 울며불며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올해 제일 추웠을겁니다. 소장사가 추울때 누가 소를 입식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줄 모르는 겁니다. 나도 답이 안나와서 어떻게 할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앓고 있는데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 委員長 李慶鎮 : 광회중 참고인께서는 건축부분에 지어지는 과정, 그런부분을 보충해서 설명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 參考人 郭喜中 : 건축은 11월 중순께  
쯤 되었을 겁니다. 그때 면사무소 변  
훈남씨 하고 주택담당하고 횡계로 가던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지을 의향이 있으  
면 갔다가 지으라고 변훈남씨가 축산담  
당이니까 그렇게 얘기 하더군요. 그래  
서 그것을 짓는데 처음에 시작한 동기도  
구덩이를 파놓고 밀가루로 이만큼 짓겠  
습니다 하고 기둥 설 자리를 구덩이를  
다 파놓았습니다. 또 그전에 우사를  
조금 하였을때 전용을 받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전에 우리가 부치고 그랬던 우장  
안에도 안치고 그랬다 해서 저는 하천이  
들어간지도 모르고 그냥 그자리에다 그  
렇게 짓겠다고 해서 짓던것이 지금 하천  
이 얼마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이  
옛날 아버지대에서 부터 부쳐먹고 그러  
던 곳입니다. 하천을 제가 지금 같으면  
중장비가 있어서 포크레인 같은것이  
흙을 파고 그럴수 있지만 아버지가 부치  
고 한 30년전만 해도 그런것이 없으니  
도저히 한 두필 되는것을 비울수가 없거

든요. 그래서 제땅인줄 알고 거기다가  
짓는데 지금은 하천이 들어갔다니 그런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 委員長 李慶鎮 : 관희중 참고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洙現 委員 : 이수현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마음 복잡하심에도 불구하고 하  
시고 오늘 이렇게 우리 진상과악특별위  
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관희중 참고인에  
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서류에 보면 9월 16일날 사업이 도암쪽  
에서 반납이 되어 가지고 10월 25일날  
확정 통보를 받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  
다. 그런데 공사는 11월 중순에 시작  
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 參考人 郭喜中 : 그때 받지는 않고,  
짓겠느냐, 안짓겠느냐, 축산담당이 자꾸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힘도 모자  
라고 지금 돈을 들여서 해놓으면 죽을때  
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나도 이제 25년

동안이나 해서 소에 골병이 들었는데 어지간히 하면 안되겠느냐, 집사람하고 저녁으로 들어가서 의논을 했지요. 애들이 원주로 학교를 가니까 한아이에게 하숙하고 그러니 70만원씩 들어 갑니다.

○ 李洙現 委員 : 네. 좋습니다. 그럼 10월 25일날 확정통보를 서면으로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 參考人 郭喜中 : 서면으로는 없고, 전화와 말로 짓겠느냐고 물어봐서 나는 생각해 보고 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그럼 결국에는 11월 중순경 확정을 하셔가지고 공사가 시작된 것이지요?

○ 參考人 郭喜中 : 네.

○ 李洙現 委員 : 그때 공사를 시작하시면서 매립을 하고 기초타설 공사를 하고 그다음 철골을 조립하는 과정이 다시 말해서 동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충분히 공사를 할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하신 겁니까?

○ 參考人 郭喜中 : 콘크리트만 치면 지금은 개방식 우사니까 철은 눈이 와도

되고 위의 두경만 씌우면 톱밥우사는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월 25일까지 하면 그때는 눈도 크게 많이 안왔고 그러니까 된다고 생각을 했지요.

○ 李洙現 委員 : 저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혹시 올해 안지으면 내년에는 이 용자금을 받을수 없지 않겠냐 하는 조바심에서 굳이 추운 동절기에 공사를 강행 하셨나 해서 여쭙 본겁니다.

○ 參考人 郭喜中 : 그것도 그렇습니다.

○ 李洙現 委員 : 그런 이유도 있습니까

○ 參考人 郭喜中 : 네.

○ 李洙現 委員 : 그다음 기초 콘크리트를 칠때 처음에 면사무소나 축산과 직원이 나와서 측량을 해서 혹시 하천부분하고 광희중 선생님 농지하고 경계측량을 한 사실이 없습니까?

○ 參考人 郭喜中 : 그것은 없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직원이 나와서 행정지도를 한 사실도 없습니까?

○ 參考人 郭喜中 : 없고, 건축담당하고 축산담당이 나와서 나는 이렇게 짓겠습니다, 우장 자리니까 먼저 그 자리에다

시멘트는 해 놓았었습니다. 그리고 소  
를 방목하고 그런자리에다 나는 이렇게  
짓겠다, 밀가루를 가지고 이렇게 짓겠다  
하고 그림을 그려 놓았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면사무소 직원이 나와  
서 봤습니까?

○ 參考人 郭喜中 : 봤습니다.

○ 李洙現 委員 : 면사무소 직원이 누구  
니까? 혹시 기억이 나시면.....,

○ 參考人 郭喜中 : 주택담당하고 변훈  
남씨하고 나왔습니다.

○ 李洙現 委員 : 그다음 저희들 자료를  
보면 관선생님이 제출하신 서류중에 현  
황실측 평면도를 보면 지금 그 부분이  
측량을 하지 않아도 육안으로 확실히 구  
분이 됩니다. 하천부지 하고 농지하고  
도면만 들여다 보면 확실히 구분이 됩니  
다. 그래서 처음부터 혹시 관선생님께  
서 하천부지가 조금 들어갔다 하는 사항  
을 아시고 시작한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  
을 하게 됩니다.

○ 參考人 郭喜中 : 저는 그것을 절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열여섯살때

그 터에 왔는데요. 독방으로 잣나무를  
제가 심었었거든요. 그러니 이십몇년  
잣나무가 컸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지, 지금 같으면 독이 변동이 된  
다고 하지만 그전에는 포크레인 같은것  
이 없지 않습니까?

○ 李洙現 委員 : 그러니 전혀 하천부지  
라고는 생각을 안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 參考人 郭喜中 : 네. 몰랐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조금도 몰랐습니까?

○ 參考人 郭喜中 : 네. 저는 조금도  
몰랐습니다.

○ 李洙現 委員 : 네. 좋습니다. 그  
다음 황보한 전면장님께 한가지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문종옥씨 사건하고 똑같이 이번  
에도 군수에게 미움을 먹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사표를 강요 당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상부로 부  
터 불법 지시를 따르지 않아야 할 의무  
도 분명히 면장님한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잘못을 떠나서 면장님께서 이 두가

지 사건을 사실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건입니다. 좀 아쉬운 생각이지만 지혜롭게 처리를 하셨더라면 이 민원 문제가 커다랗게 야기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이 광희중씨 문제도 지금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물론 본인의 잘못이 있겠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한 피해를 보는 그런 입장이 되버리고 말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면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參考人 黃普漢 : 특히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할애기도 없습니다. 제가 축산농가에 대해서 지어라 말아라 한적도 없고 저는 또 12월 겨울동안에 공사를 하니까 사전에 안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짧은 기간에 나에게 보고한것도 아니고 저는 다만 제가 사표를 안냈더라면 군수가 욕을하던 말던 나를 직위해제를 한다고 그래도 직위해제를 당하더라도 사표만 안냈으면 이런일이 안생기는것은 사실인데 저는 다만 확대되는 것을 바라

는것은 아니고 저의 입장에 대해서는 축사를 지금이라도 지을수 있게끔 하는것이 좋겠지 않느냐, 이런 생각 뿐입니다.

○ 李洙現 委員 : 지금 사실상 면사무소 직원이 주택담당 하시는분 하고 축산담당 하시는분 하고 두분이 가서 확인을 하고도 계속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지금에 와서 광희중씨 본인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당시에 면장이 책임자로서 면장님에게도 어떤 약간의 책임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면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여쭙 보는 것입니다.

○ 參考人 黃普漢 : 제가 책임이 있다면 감독 소홀이지 그때까지 허가를 해준것이 아니고 그사람들이 나갈때 저에게 그것때문에 나간다고 이야기를 안하니 직원 감독소홀 입니다.

○ 李洙現 委員 : 네. 알겠습니다.

○ 劉燾文 委員 : 유돈문 위원입니다. 공사할때에 축산과에서는 직원이 한번도 만나왔습니까?

○ 參考人 郭喜中 : 나와서 증도금 타라

고 안재구씨가 나와서 이만큼 되었으니까, 나는 돈도 아쉽고 그사람들은 자꾸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돈을 타면 안되겠느냐고 하니까 증도금을 타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 劉燾文 委員 : 그리고 시작할때 대장동본이나 이런것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면에다 제출한 일이 있습니까?

○ 參考人 郭喜中 : 없습니다.

○ 劉燾文 委員 : 여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하나도 안냈으면, 아까 이수현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여기 도면을 보면 발에다 분명히 짓는다고 그랬지 하천에다 짓는다고는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천에다 지었던 말입니다. 지금 모르고 지었다고 하시는데 모르고 진것이 아니고 손해가 많이 납니다. 신청서에는 629 전에다 짓겠다고 썼는데 지금은 505 하천에다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르고 지었다 하더라도 신청서의 도면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혀 모른다면 이것은 누가

만든 서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많이 보잖아요. 이 손해 보는것을 지금 한탄해서 무슨 소송이 있습니까? 본인이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면사무소 직원도 와서 하천이라고 얘기를 안했다고 해서 거기다 지어서 불법건물로 고발이 되어서 지금 혼자만 당하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들 전체가 보았을때 참 안타깝고 무엇이랄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우강호 위원입니다. 제가 광희중씨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확정통보를 받은 날짜를 기억하십니까?

○ 參考人 郭喜中 :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11월 중순쯤, 15일정도 됩니다.

○ 禹康鎬 委員 : 공문으로 받은것이 11월 중순쯤입니까?

○ 參考人 郭喜中 : 공문으로는 안받고 지으라고 해서 했지요. 그런데 공문 같은것은 하도 바빠 돌아치니까 아침에 나가면 먹이도 그렇고 해서 마루에 언제

왔는지 알지도 못하고 안보는 공문서도 몇일 지난 다음에도 그래서 그것을 본 기억은 안납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러니까 95축산분야 경쟁력제고 사업에 추가로 광희중씨가 들어 있다고 통보받은것은 기억상으로 11월 중순쯤이 된다는 얘기지요?

○ 參考人 郭喜中 : 네.

○ 禹康鎬 委員 : 그런데 군에서 공문을 시행 한것은 10월 23일인가 24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에서 10월 24일날 공문을 시행해가지고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동안 나중에 추가로 된 3개 농가까지 현지확인을 나가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공문상으로도 광희중씨는 그때 서류로 내가 확정되었다, 안되었다, 이것도 모르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지요?

○ 參考人 郭喜中 :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날짜를 기억하는것도 아니고,

○ 禹康鎬 委員 : 그러니까 아까 11월 중순쯤 아신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0월달에 이미 확정 통보가 나갔

거든요.

○ 參考人 郭喜中 : 10월달에는 내가 안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렇습니까? 그런데 10월달에 이미 그렇게 나가있고, 또 사업계획서에도 보면 세부사업별 추진일정에 부지정리를 10월 2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축사 설치를 11월 20일, 부대시설을 11월 30일까지 하도록 축산분야 사업계획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성은 광희중씨가 하신것이 아니고 담당공무원이 했는데 도장은 광희중씨가 찍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것인가 하면 95년 10월달로 되어 있거든요. 광희중씨가 전혀 쓰지않고 실지 광희중씨 글씨하고는 전혀 아닙니다. 면사무소 담당공무원이 한것인데 10월달에 했습니다.

○ 參考人 郭喜中 : 그런데 10월달에 그런것이 있으니까 하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꾸 빗지고 그러면 갇지 못하지 않느냐 하다가 내가 11월 중순께 짓겠다고 해서 되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럼 10월달에 안한다고 그랬는데 공문서를 임의로 작성 했습니까?

○ 參考人 郭喜中 : 내가 할까 말까 망서렸지요. 그때는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럼 담당공무원이 광희중씨한테 도장을 받아갔을때는 언제쯤 될까요?

○ 參考人 郭喜中 : 기억을 그런데까지는 잘못하겠는데요.

○ 禹康鎬 委員 : 11월 중순쯤 될것 같습니다.

○ 參考人 郭喜中 : 잘 모르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아니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 參考人 郭喜中 : 시작은 11월 중순부터 했으니까요.

○ 禹康鎬 委員 : 담당직원이 나오셔서 가지고 처음되는 부분부터 담당직원이 상담원이던 안내원 자격으로던 군수가 지정을 하셔서 그 지정된 공무원이 광희중

씨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에 같이 동참해서 토지라던가, 형질변경이라던가 건축에 대해서 전부다 의논해서 같이 협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협조를 받으신적이 있습니까?

○ 參考人 郭喜中 : 협조는 했지요. 나는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짓겠다, 건축담당이랑 왔으니까 우장이 있고,

○ 禹康鎬 委員 : 그러니까 광희중씨가 우사를 거기다가 지으려고 했는데 육안으로 봐도 하천으로 나와서 짓게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여기다가 짓겠다고 했는데도 담당공무원이 거기다가 지으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 參考人 郭喜中 : 먼저 측사가 나온것은 나중에 나왔고, 그전에 아버지가 보던 도면이 있어서 여기겠구나 그랬지요. 육안이라는것은 나중에 나왔습니다.

○ 禹康鎬 委員 :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용자금 3,550만원정도 되는것을

○ 參考人 郭喜中 : 3,550만원이 아닙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럼 얼마입니까?
- 參考人 郭喜中 : 용자금 2,400만원을 준다는데 3,550만원은 착유기 냉각기가 들어가서 그것입니다.
- 禹康鎬 委員 : 3,599만1천원이거든요
- 參考人 郭喜中 : 냉각기 하고,
- 禹康鎬 委員 : 첫번째 돈을 받은것이 언제쯤 됩니까?
- 參考人 郭喜中 : 잘 모르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액수가 큰데 그정도는 기억을 하실것 같은데요.
- 參考人 郭喜中 : 12월 중순께,
- 禹康鎬 委員 : 그럼 확보한 전면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까.  
첫번째 돈을 내주실때 담당직원이 출장 가서 출장복명서에 의해서 이상이 없다고 확인을 하면 이것은 면장님 결재로 축협이나 어디서 돈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12월달에 면장님 결재를 하셨습니까, 여기 자료에 없습니다.
- 參考人 黃普漢 : 듣느니 처음입니다.
- 禹康鎬 委員 : 듣느니 처음인것이 아니고 이것은 면장님 결재가 없으면 돈을

못내줍니다. 담당직원이 출장을 갔다 와서 복명서를 면장님 결재를 받기전에는 돈이 절대로 나갈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장이 모르는데 돈이 나갔으면 부하직원이 면장님 결재도 안받고 임의대로 돈을 내주었다는 애긴데요. 축산과장 허락받고 내주었습니까? 반드시 면장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 결재자가 면장님 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96축산분야 경쟁력제고사업 진도 확인서 해가지고 예를들어 광희중씨면 광희중씨가 내가 이렇게 어느정도 추진이 되었다 추진 진도율에 따라서 전부다 포함해서 소요액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신청을 하면 담당직원이 갔다와서 사업 추진사항과 투자소요를 확인한바 적정한 내용임을 인정한다, 라고 출장복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면장님이 반드시 확인하고 이 확인서 하나에 의해서 바로 돈이 나갑니다. 그런데 광희중씨는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면장님이 확인해준 사실이 없다면 이것은 상당

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 參考人 黃普漢 : 저는 결재한 생각이 안납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러면 광희중씨는 어디에서 돈을 받았습니까?

○ 參考人 郭喜中 : 축협에서 받았지요.

○ 禹康鎬 委員 : 축협을 직접 가셨습니까?

○ 參考人 郭喜中 : 네.

○ 禹康鎬 委員 : 누가 돈을 받으러 오라고 그랬습니까? 담당직원이 그랬습니까, 축협에서 연락이 왔습니까?

○ 參考人 郭喜中 : 나는 달라고 그래서 쪽지를 하나를 주니까 거기서 받았습니 다.

○ 禹康鎬 委員 : 도장을 찍어주고요?

○ 參考人 郭喜中 : 네.

○ 禹康鎬 委員 :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에게 달라고 그랬습니까?

○ 參考人 郭喜中 : 그럼 쪽지하나 얻어 가지고,

○ 禹康鎬 委員 : 그러니까 광희중씨가 담당직원에게 돈을 받아야 하니까 돈받

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담당직원이 이것 가지고 와서 도장찍어 주시고, 면장님 직인이 없으면 돈이 안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민원사무 전용 도장으로 찍힌것이 분명히 아닐겁니다. 그랬으면 면장님이 반드시 확인해서 직인사용 등록부가 있을것 아닙니까? 그런데 면장님이 모르시면 담당직원이 면장님한테 허락도 안받고 일방적으로 찍어서 돈을 내준것인데, 돈을 몇번 나누어 받았습니까?

○ 參考人 郭喜中 : 한번밖에 안받았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얼마 받으셨습니까?

○ 參考人 郭喜中 : 2,000만원입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럼 나머지 돈달라고 진도확인서를 안내하셨습니까?

○ 參考人 郭喜中 : 그것을 내기 전에 말썹이 생겼으니 어떻게 받나요, 안주지, 거진 거진 될때에 2,000만원을 받고 말이 생기니까 돈을 주나요, 안주지

○ 禹康鎬 委員 : 그래도 하시느라고 어쨌던 다 지었으면 돈달라고 해서 돈을

받으셔야지요. 그럼 2,000만원만 받고 나머지 1,599만원은 포기 하시나요?  
받으셔야지요.

○ 參考人 郭喜中 : 2,000만원을 가지고 오라고 하던데요.

○ 禹康鎬 委員 : 누가 가지고 오라고 했나요?

○ 參考人 郭喜中 : 축산담당이랑 산업계에서 도로 회수하라고 그러니까.

○ 禹康鎬 委員 : 축산과가요?

○ 參考人 郭喜中 : 축산과는 아니고 봉평면 산업과에서,

○ 禹康鎬 委員 : 산업개발계에서요?

○ 參考人 郭喜中 : 네.

○ 禹康鎬 委員 : 그다음 사업을 하시는 동안 군에서 축산과장님이 나와 보신적이 있습니까?

○ 參考人 郭喜中 : 네.

○ 禹康鎬 委員 : 짓는동안?

○ 參考人 郭喜中 : 네.

○ 禹康鎬 委員 : 나중에 그것을 확실히 얘기 해주십시오. 축산과장님은 한번도 가신적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나중에 확실히 얘기해 주십시오. 안그러면 과장님이 야단을 맞던, 우리 광회 중씨가 나중에 확실히 대답을 하시던 확실히 해야할 부분인데 과장님은 죽어도 거기 가신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혹시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 參考人 郭喜中 : 힘들겠다고 그러면서 천상 혈던지 그래야 한다고, 말이 생기고 왔습니다.

○ 禹康鎬 委員 : 힘들겠다고 말로만 그러면 어떻합니까? 남은 빛지고 그러는데, 안그렇습니까?

그전에는 한번도 안오셨습니까?

○ 參考人 郭喜中 : 안오셨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럼 어떤분이 오셨습니까?

○ 參考人 郭喜中 : 운전수는 잘 모르겠고 안재구씨하고 왔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다음 봉평면사무소에 있는 축산직원은요?

○ 參考人 郭喜中 : 두서너번 왔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안재구씨는 군의 축산

담당 직원이고 면에 담당하는 직원은 두세번 왔었군요.

○ 參考人 郭喜中 : 네. 건축담당하고

○ 禹康鎬 委員 : 축산과장님은 언제쯤 가셨습니까?

○ 參考人 郭喜中 : 이 문제가 생기고 거진 끝날무렵인가, 말썽이 생기고 왔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럼 2월말이나 그때쯤입니까?

○ 參考人 郭喜中 : 그때쯤 될겁니다.

○ 禹康鎬 委員 : 축산과장님은 한번도 안가셨다고 하셨거든요.

○ 參考人 郭喜中 : 말썽이 생기고 와서 어렵겠다고 그랬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광희중씨는 담당직원에게 내가 이것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도와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도 안하셨습니까?

○ 參考人 郭喜中 : 그런얘기를 했지요. 내가 4,400만원 들었는데 이것을 뜯어 옮기자면 3,000만원 들고 내소가 잘받아야 1억조금 넘는데 그럼 다 팔아서 이

빚갚고 나면 회수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는 무엇을 하느냐고 다 팔아치우고 마는것이 낫지, 과장님이 그러더군요. 우시장 소사려 갔다가 잃어버린쪽 치라고,

○ 禹康鎬 委員 : 그렇게 말씀하세요?

○ 參考人 郭喜中 : 네. 그래서 내가 이것이 한두푼도 아니고 소가 한두마리도 아니고 몇십마리씩 어떻게 도둑맞은 쪽 치느냐고 못한다고 그랬지요.

○ 禹康鎬 委員 : 저희들은 여기서 광희중씨의 특별한 진상을 파악하기에는 문제도 있지만 억울하게 희생이 되어될 광희중씨가 우리 군민으로서 피해를 입는 것을 우리 군의회 차원에서 막는것도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 제 1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동참을 해가지고 일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안에 농지전용, 건축허가, 인허가 요건 및 절차에 대해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자율사업이 잘못될 경우 예상되는 농민  
의 기타사항, 불이익 까지도 미리 준비  
를 해서 완벽하게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나 용자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공무원을 지정하도  
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광희중씨가  
정 억울하면 군수를 상대로던 아니면 담  
당 누구를 상대로던 하시고 싶은 행위를  
해서 변상을 받을 용의가 있으면 행정소  
송을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參考人 郭喜中 : 지금 저로인해서  
이렇게 시끄러운데 저하나 피해를 보는  
것이 좋지, 옆의 사람을 자꾸 끌고 들어  
가면 어떻 합니까?

○ 禹康鎬 委員 : 아니 끌고 들어가는것  
이 아니고 광희중씨는 그렇게 부자가 아  
니잖아요. 몇천만원이 없어져도 괜찮  
습니까?

○ 參考人 郭喜中 : 아니 돈은 없지만  
저하나 희생되면 되지 결의사람 자꾸 끌  
고 들어가서 일을 크게 만들고 그러면  
좋지 않잖아요?

○ 禹康鎬 委員 : 저도 남을 걸고 넘어  
가는것도 그런데요. 이것은 남을 걸고  
넘어지는 차원이 아니고요. 너무 억울한  
차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의원들 여덟분이 거기를  
가셨는데 하나같이 광희중씨나 광희중씨  
사모님을 보고 사실 마음이 아파서 돌아  
오는데 발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저희들이 도와 드리고 싶은 생각이지  
그리고 실지 담당했던 분들이 축산과장  
이 한번도 나가지 않았으면 과장님이 직  
무를 잘못했던, 군수님을 대신해서 축산  
과를 대표하는 과장님이 잘못했던, 아니  
면 돈내주는 과정까지 최종 결심자가  
면장님인데 면장님이 제대로 관리를 못  
했던 두분중에 한분은 반드시 잘못된 분  
이 계십니다. 그것을 가리실때 광희중  
씨가 이다음 공무원들과 같이 계실때 그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면 절대 불이익은  
안보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 金鍾永 委員 : 김종영 위원입니다.  
면장님 장시간 수고 하시는데 한가지만  
여쭙어 보겠습니다.

측사 신축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많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금 면장님께서서는 면의 행정책임자로 약 40여명 되는 직원 감독을 하고 행정지시를 하고 면 전체에 걸쳐서 행정을 하시는 책임자로서 지금 측사 신축에 대한 내용을 보면 거의가 인·허가 사항에서 부터 면장님 소관이 라고 생각이 됩니다. 면장님 측사신축에 대한 업무라던가 인허가 사항이라던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參考人 黃普漢 : 저는 대개가 인허가 소관이기 때문에 맨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직원들한테 100명까지의 측사는 면사무소 신고사항이다, 해서 저도 알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알았습니다

○ 金鍾永 委員 : 면장님 그러면 업무 책임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한 업무를 어떻게 추진 하셨습니까

○ 參考人 黃普漢 : 그것은 제가 있을때 그러니까 이분이 집을 겨울에, 지금 완료된것은 아니니까 반절 지었으니까 그때 모르고, 12월달에 들어와서 지으니까

철골집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에도 짓게 되니까 저희 직원들이 가서 보니까 상당히 신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제가 알고 있기는 12월 28일에 1월 9일까지 원상복구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것으로 저는 알고 결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 金鍾永 委員 : 아니 면장님, 철거가 아니고 지금 광희중씨가 측사를 신축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면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그러면.....,

○ 參考人 黃普漢 : 그것은 김의원님 이렇지 않습니까? 봉평면 전체가 면장소관인데 제가 세부사항을 면장이 다 안다는것은 힘들지 않습니까?

○ 金鍾永 委員 : 아니 면장님 돈이 몇천만원짜리 측사 신축을 하는데, 소 키우는것은 환경이라던가 여러가지 문제도 있고 또 지금처럼 발생한 하천에다 측사를 지어서 엄청난 불이익을 광희중씨가 당하고 있는데 이런것도 살펴보아야 하고 여러가지 전반적인 업무를 면장님이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 參考人 黃普漢 : 사실상 솔직한 얘기로 이분의 측사에 대해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고 군수님한테 욕을 얻어 먹은것은 확실하고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 金鍾永 委員 : 아니 면장님이 면의 행정책임자인데 계속 자세한것은 잘모른다, 면장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 參考人 黃普漢 : 제가 그만둔 입장에서 자꾸 그것을 가지고 따지시면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제가 면장이라고 업무를, 그럼 평창군수님이 평창군의 전체를 알수 있습니까? 제가 모르는것을 어떻합니까?

곽희중씨가 말하듯이 겨울동안 지어서 하는것을 누가 눈여겨 보면 알지만 저는 사실상 중축하는 과정을 제가 눈여겨 보지 않으니까 모르는것은 사실 아닙니까

○ 金鍾永 委員 : 면장님 책임하에 측사가 신축되는 인허가 사항이 몇건이나 됩니까?

○ 參考人 黃普漢 : 제가 그것만 합니까 봉평에 상수도도 있고, 쓰레기장도 있고 날마다 면에서 회의를 안하는 날이 없습

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한 얘기로 그런것 까지 100% 다 안다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까?

○ 委員長 李慶鎭 :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를 요점만 명확하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康鎬 委員 :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곽희중씨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건축신청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參考人 郭喜中 : 120평입니다.

○ 우강호 위원 : 면장님이 알고 계시는 평수는 몇평이나 됩니까?

○ 參考人 黃普漢 : 저는 평수를 모릅니다. 나중에 우리 직원들말에 100평을 지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제가 아까 2,000만원 나간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이 모르신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 參考人 黃普漢 : 네.

○ 禹康鎬 委員 :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 參考人 黃普漢 : 제가 그때 아주 여

러장을 가지고 왔더라구요. 그런데 나한테 설명을 하면 생각이 나는데 얘기를 안하니,

○ 禹康鎬 委員 : 얘기를 안해도 2,000만원이나 돈이 나가는데,

○ 參考人 黃普漢 : 세부사항 설명을 했으면 2,000만원이 나가면 2,000만원 하나라도 아는데, 변훈남이가 상당히 어려장 가지고 왔더라구요. 결재를 한 사실은 생각하는데 무엇무엇이라고 설명을 했으면 아는데 설명을 하지 않고 내가 일괄적으로 .. 계속 바빠서 하다보니까 제대로 못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金斗經 委員 : 김두경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참고인으로 오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일로 개인적인 피해가 광희중씨에게 많은 피해가 오는데 대해 진심으로 주민의 한사람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

의 하겠습니다. 처음에 기초를 할때에 공무원이 왔다가 갔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왔을때 이것이 하천부지라는 일체 안했습니까?

○ 參考人 郭喜中 : 안했지요. 옛날에 소 우장이였었으니까,

○ 金斗經 委員 : 직원도 전혀 그런얘기는 없었습니까?

○ 參考人 郭喜中 : 네.

○ 金斗經 委員 : 그다음 축협장이 방문하실때 전화를 해서 오셨습니까? 소문을 듣고 축협장이 다녀갔습니까?

○ 參考人 郭喜中 : 그냥 다니는차 들렀던것 같습니다.

○ 金斗經 委員 : 오셨을때 대화를 하셨나요?

○ 參考人 郭喜中 : 저는 아파서 그랬고 우리 집사람이 고등학교 다니는 애하고 둘이 소 설거지 하다가 그때 아주 추웠습니다. 소가 그저께 죽었다면 오늘 왔습니다. 두마리를 실어 내보내니까워서 병이나서 저는 누웠지, 소장사는 여름같으면 자주오는데 오지도 않고 어

떻게 하느냐고, 붙잡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작은놈이 와서 축협장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집사람을 들어가라고 하고는 축협장님이 참 안되었다고 그러고 나오셨지요.

○ 金斗經 委員 : 제가 소문에 듣기로는 광희중씨가 방목문제 때문에 각서를 제출했다가 다시 내용이 불충분 하다고 해서 2회에 한해서 각서를 면 담당자에게 제출을 하고 그다음 속이 상하니 그날 저녁에 집에가셔서 자다보니까 소가 죽었다, 그런데 죽은것은 아니지요?

○ 參考人 郭喜中 : 두마리가 죽지는 않고 박혀서 숨만 붙어있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 金斗經 委員 : 그래서 많은 피해를 보셨네요. 300만원 가는것을 100만원 씩 받으셨다고 하셨지요?

○ 參考人 郭喜中 : 네. 80만원 준다는것을 100만원 받았습니니다.

○ 金斗經 委員 : 앞으로 행정적으로 조치가 내려져서 광희중씨에게 불이익이 왔을때 여기에 대한 대체방안은 없습니

까?

○ 參考人 郭喜中 : 저는 3월 30일까지 철거 하라는 철거명령을 받았는데 지금 저것은 기술자가 와서 뜯어야 하고 금방 뜯을 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의원님들께서 연기를 해주시던지 이런 방도를 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 金斗經 委員 : 집행기관에서 모든것을 감안해서 인간이 하는것이니까 할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여러가지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李洙現 委員 : 한가지만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황면장님 탄원서에 보면 축산농가 광희중은 군수와 친면이 두터운 관계로 각서도 서류보완 하지 않고 축사에 기등을 세운것이 하천에 포함된것을 알고도 축사신축 허가서를 제출치 않고 있었습니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희중씨 군수하고 어느정도 친면이 두터우십니까?

○ 參考人 郭喜中 : 그렇게 두텁지 않습니다. 그전에 소떡이고 그러니까 봉평

에 분소가 있으니까 분소에 나오지,  
그전에는 분소가 없으니까 분소로 사료  
값 도 값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다른사람보다 조금 잘안다 뿐이지, 얼마  
나 두렵고 그런것은 없습니다.

○ 李洙現 委員 : 혹시 군수님 선거하실  
때 선거운동좀 해주셨나요?

○ 參考人 郭喜中 : 선거는 저혼자 했지  
뭔 선거운동을 합니까?

○ 李洙現 委員 : 그런사항은 없습니까?

○ 參考人 郭喜中 : 없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알겠습니다.

○ 委員長 李慶鎮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이상으로 두분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전  
부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후 5시 15분  
에 다시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7時 00分 停會)

(17時 15分 續開)

○ 委員長 李慶鎮 : 좌석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  
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관계공무원과 외부 참  
고인에 대한 심문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  
한 집행부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본 특위활동도 사실상 마무  
리되는 만치 신중을 기하시어 그동안에  
이루어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相薰 委員 : 이상훈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장시간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우선 봉평면 부면장님하고 산업개발계장  
님께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곽희중씨의 불법측사 건립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사전에 공무원들이  
관계법령을 숙지해가지고 현지도도를 철  
저히 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불미스러  
운 사건이 발생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되

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면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蓬坪 副面長 李聖均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5년 12월 9일날 축사 신고가 들어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결과정에서 하천변이니까 방목을 하면 하천에 오염이 있다는 여론이 대두되어서 면장님께서 각서를 받으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서를 받고 축사 신고 접수를 처리해 드릴려고 그랬는데 그당시 제가 알기는 이미 축산담당자가 나가 보니까 사전에 기초하고 일부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고하기 전에, 그래서 그것을 신고도 없이 했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로 해가지고 언제까지 서류를 제시하라고 공문을 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건축물이 불법으로 건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李相薰 委員 : 산업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무계장으로서 책임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의 첫째는 당초에 건축법 제9조를 보면 축사는 400㎡, 120명 미만까지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0명 이상 120명 미만까지는 신고를 하고 60명 미만은 사후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약 118명의 건축신고로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착수를 하면서 11월 10일경 착수를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건축담당자에게 이것은 건축신고 사항이니까 반드시 건축신고서를 빨리 받아라, 그리고 우리 변훈남씨에게는 변훈남씨가 이런 서류를 할줄 알고 신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서류를 빨리 마쳐서 신고서류를 빨리 제출하라는 독촉을 여러번 했습니다. 우리 건축직에게는 나중에 신경질까지 내고 그랬습니다만, 결국 그러는 과정에서 실무자 애

기가 본인은 건축주가 올라온다 하면서 안올라 온다고 그러고 변훈남에게 다시 확인하니까 지금현재 서류를 만들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계속 독촉과정에 12월 9일날 신고서류가 들어 왔습니다. 신고서류 결재가

들어온것이 현 건축직 담당공무원의 현 지출장 복명서가 안붙었고 그것은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신고수리 통보를 본인에게 해줘야 하는데 기안이 안되었고

해서 가서 현지확인하고 공문서를 붙여서 결재를 올려라 하고 제가 결재를 안했습니다. 그후 약 3일인가 5일인가

지나서 약 12월 13이나 15일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에 건축담당자가 하는 얘기가 하천에 많이 들어갔다는 얘깁니다.

측량은 하지 않았습디만, 도면을 다시 확인해보니까 하천이 많이 침범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아주 캄캄한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분명히 우리 측산담당 변훈남에게 확인하기를 거기는 기 농지전용 받은 곳이고 아무런 건축에 하자가 없는 것으

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신고절차는 독촉하는 과정에서 안되었습니다만, 그런 완전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것으로 알았고, 그렇게 추진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었습디만, 확인 과정에서 하천에 침범이 된것으로 알고 그후에 우리 건축직과 제가 약 보름간 굉장한고뇌를 겪으면서 이것을 사실 우리 건축직보고 그랬습니다.

저하고 우리 건축직하고 막말로 하천에 침범되었습니다만, 목을 내놓고 한번 처리 해주자, 이것이 처리가 안되면 오늘의 이런상황까지 제가 감지를 했습니다. 엄청난 파란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처리를 해주자, 해서 약 보름동안 고뇌와 고뇌를 거듭한 끝에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아서 12월 28일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 李相燾 委員 : 네.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측산과장한테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과정에서 광희중씨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해서 제출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제출된 내용은 교육교재가 와 있습니다. 이 교육교재가 사업계획서를 판단하고 있었는지, 광희중씨의 사업계획서가 필요없기 때문에 우강호 위원하고 본위원하고 두사람이 제출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교육교재가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畜産課長 鄭義秀 : 사업신청서 뒷면에 사업계획서가 유인되어 있는 제출서류를 다시 보완해가지고 드렸고 지금 말씀하시는 농가교육교재는 참고자료로서 드린 겁니다.

○ 李相薰 委員 : 여기에 또하나 유인해 있는것은 축산분야 사업신청서 입니다. 사업계획서하고 축산분야 사업신청서 하고 어떻게 설명좀 해주십시오.

○ 畜産課長 鄭義秀 : 농어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사업신청을 내는 기본적인 농림수산부로 부터 적용되어 있는 서식입니다. 그래서 사업신청서

가 전면에 있고 사업신청 내용에 대한 사업계획이 뒷면에 서식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과 사업계획을 그 양식에 의해서 제출하도록 전국적인 통일사항 입니다.

○ 李相薰 委員 : 이해가 안갑니다.

○ 禹康鎬 委員 : 부의장님하고 제가 축산분야 사업계획서를 축산과장님께 제출해 달라고 했던 부분은 이런 개괄적인 현황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광희중씨에 대해서 제출하실것을 요구 했거든요.

2층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디만, 세부사업별 추진일정이라 해가지고 부지 정리 10월 20일, 축사설치 11월 20일, 부대시설 11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 일정이 얼마나 타이트 합니까? 그리고 광희중씨 한테 군에서 확정된것이 10월 23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10월 25일에서 10월 27일까지 3일동안 점검을 나가시면서 추가로된 3 농가를 포함해서 점검하시라고 그러셨는데 3 농가가 실지면사무소를 통해서 내가 확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였었

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점검을 할 수 있습니까? 농가가 내가 대상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모르는데, 그다음 10월 23일날 확정되었다 그러는데 아까 궤회중씨는 11월 중순에 연락을 받았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 10월 20일날 사업계획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10월 20일날 부지정리, 11월 20일날 축사설치가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23일날 군에서 확정을 해서 내보냈는데 10월 20일까지 부지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 축사설치를 11월 20일까지 그 많은 평수를 다할수 있습니까? 이것은 전혀 실지 이루어졌던 내용하고 이 행정적인 사항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맞는부분이 없잖아요? 그다음 돈 3,590만원을 내주는데 사업계획서 하나하고 신청서 하나만 가지고 내줍니까? 양식이 이렇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이 사람의 자부담 능력도, 아니면 자금조달 계획도 받아보았을테고, 부지 확보 이런것은 농지전용을 미리 받았단니까 그

것으로 가름한다 치고 세부 사업별 추진 일정도 언제 어떻게 무슨 자재로 어떻게 쓴다는 그런 자세한 내용이 하나도 없고 이것 하나만 가지고 돈을 확정해서 내준다는것은 실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아까 제가 말씀 드렸는데 95축산분야경쟁력제고 사업 추진진도 확인원, 이것은 면장님 최종 결심으로 인해서 돈을 내주는 것인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군에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읍면단위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 禹康鎬 委員 : 과장님이 확인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군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군수님을 대신해서 과장님이 하시는 것인데 과장님이 이것을 확인을 안하신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대두 되잖아요?

○ 畜産課長 鄭義秀 : 궤회중씨 당해농가 단독사업에 관한건만이 아니고 농어

촌 발전 대책사업에서 진행되는 모든 농가 및 모든 작목에 대해서 충실적으로 사업공정 확인은 면장이 하도록 기본 지침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읍면장이 개별농가별 진도사항은 전부다 다루기 때문에 수시로 농가의 자금 필요성에 의해서 기술과 확인요청이 있을 때에는 읍면 담당직원이 현장확인을 하고 적정한 범위내에서 자금인출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광희중씨는 지금 문제가 되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이고 나머지 광희중씨를 포함한 두분도 실지 이런 문제가 없다라고는 볼수 없는 것입니다. 실지 신청서 낸부분하고 진행되는 과정이 광희중씨의 것만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는 입장이니 그렇지 나머지 두분도 광희중씨하고 똑같은 일정안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반드시 있다라고 보거든요.

○ 畜産課長 鄭義秀 : 그것은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사업확정을 받았던 농가가 9월달에야 사업포

기서를 냈기 때문에 사업포기서를 접수한 군에서는 어느 특정인을 주겠다고 미리 내정된 상태가 아니고 다시 읍면장으로 부터 총체적으로 사업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시설을 해서 농어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해주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 禹康鎬 委員 : 그 심의자체가 요식행위 아납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물론 그렇지만,

○ 禹康鎬 委員 : 심의자체가 요식행위면 다른사업들은 사고이월도 하고 명시이월을 다하는데 군이 이것을 그때 해가지고 11월안에 끝내라고 했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그정도의 사업범위라면 결빙기 이전에 사업이 끝날수 있다고 군에서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축사 1등은 농가가 자력으로 짓는것이 아니고 거의가 다 축사건축업자를 통해서 짓고 그다음 거기에 부대된 착유기나 냉각기 같은것도 역시 계약주문만 하면 설비업자가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

로 필요한 공기는 물론 바쁘지만 그정도면 충분한 공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 禹康鎬 委員 : 처음 돈 내주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업자 선정을 해가지고 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축산과장님께서 전혀 한번도 광희중씨집에 나간 사실이 없다고 말씀 하셨습니까? 그런데 광희중씨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 하였고 일이 있은후에 한번 오셔서 상당히 애석하다, 힘드는데, 이렇게 말씀 하셨다는데 그런사실은 말도 안되는 애깁니다. 돈 대주고 축산농가 망하게 해놓고 가서 불난집에 부채질 할일 있습니까 사전에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그런일이 안생길텐데 그것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놓고 그런집에 나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신청서, 계획서, 축산농가로부터 받은것이 굉장히 미진한 부분도 있고 사업 진도 확인서도 지금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도 제출된것이 없습니다. 그다음 경비지출 기록대장도 역시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다음 상담원, 안내원

기록대장도 전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는데 안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장관 훈령으로 보면 반드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시행할 때 제11조에 나와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반드시 지정을 해가지고 상담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하셨습니다. 그것을 안하셨으면 과장님이 안하신것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던지 아니면 하지 않아도 과장님이 직접 관장을 하시던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하시고 과장님도 관리를 안하셨기 때문에 직무수행을 상당히 잘 못하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안에 농지전용이나 건축허가, 인허가 요건및 절차, 이 내용을 상담원이나 안내원이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오류는 절대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천에다 그것을 지어가지고 지금처럼 이런사업이 안되었단 말입니다 자율사업이 잘못될 경우에 예상되는 그 책임, 이 필요한 사항까지 상담원이나 안내원이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 조

차도 안해 주었습니다. 두번인가 나가 보고, 과장님은 한번도 안나가 보고, 면장님도 안나가보고, 그럼 누가 나가 봅니까? 제가 아까 광희중씨한테 얘기했지만 이 범조항으로 인해서 광희중씨가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들어오면 안 물어줄 방법이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1,500만원 이상 지원을 받을때는 반드시 일지, 수입지출명부, 경영일지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이 나갔는데 하나도 안되었잖아요?

○ 畜産課長 鄭義秀 : 자료에 제출이 안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농가가 사업시작부터 마감과정까지를 그러한 서식에다가 기록을 하도록 현장지도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역시 면 축산담당직원이 당해농가에 대해서 경비지출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하도록 지도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과장님, 면 축산담당 직원한테 미물것이 아니고 소관업무 총괄자가 과장님이잖아요?

○ 畜産課長 鄭義秀 : 물론 그렇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럼 확인을 하셔야지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안해봅니까? 당연히 확인해야 하는데,

○ 畜産課長 鄭義秀 : 과장으로서 당연히 사업진행에 대해서 총체적인 책임은 분명히 저희들에게 있지요. 그러나 개별농가 하나하나에 대해서 과장의 업무범위로 봐서 확인점검을 할수 있는사항이 미처 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 禹康鎬 委員 : 못되었다는 것은 해태하는 것이고 그것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시장,군수가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다음 시장,군수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관리책임도 반드시 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서류가 하나도 제출이 안되어 있고 또 과장님도 모르시고 또 안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도 나간사실이 없으니까 안되어 있을것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 드리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 저희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개괄적으로 내셔서 저하고 5분만

에 축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추  
가 자료를 내라고 한때가 있었지요?

○ 畜産課長 鄭義秀 : 네. 알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럼 그런 기억을 되  
살려서라도 저희들이 다시 자료요구를  
하기 전에 더 정확한 자료를 제출 해주  
셨어야 되는데 부의장님이나 저나 다시  
요구한 자료에도 이런 개괄적인 현황표  
같은 이런것 하나만 내셨단 말입니다.

그다음 저희 의원이 군 과장님한테 교육  
받을일 있습니까? 교육자료를 이렇게  
내주시면 어떻습니까? 에

곽희중씨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내주셔야지요.

그다음 과장님 생각에도 상담원, 그다  
음 사후관리책임자를 반드시 지정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지요?

○ 畜産課長 鄭義秀 : 혹시 문서상으로  
지정한것은 없습니다만, 축산분야에 대  
한것은 축산과에서 책임.....,

○ 禹康鎬 委員 : 제가 조금전에 말씀  
드린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우

리 공무원들이 행정상으로 할수 있는것  
은 문서화가 아닙니까? 말이 아니잖아  
요? 과장님은 군수님 지시나 명을 받  
아서 수행하시는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 그 직무를 해태했으면 군수님 지시를  
잘 안들으신 것이고 그 밑에 담당직원이  
그것을 시행하지 않았으면 과장님 지시  
사항을 어긴것이잖아요? 그런데 확인  
을 안해보셨다는것은 답변이 불충분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업무 수행을 잘  
못하신 거지요?

○ 畜産課長 鄭義秀 : 잘알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이것 처음부터 잘 진  
행이 되었으면 곽희중씨가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보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전적으로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것이 아닙니까? 법적인 절차를 집행  
하는 부서 스스로가 안지켰는데 그사람  
보고 지키라고 해서 그사람들한테 불이  
의를 줄수 있습니까?

아까 보셨지만 적은돈이 아니잖아요?

그돈을 물려서 다시 형사처벌 받고, 행  
정처벌 받고, 집행부 믿고 누가 국가에

서나 아니면 군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겠습니까? 사업을 한다면 저희 군의 원들이 가서 다 말려야지요. 집행부 스스로가 법을 안 지키고 있는데 그것을 하라고 시킵니까? 말려야지요. 차후에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더 철저하게 해주셔야지 이러한 일로 인해서 다시금 다른 축산농가나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유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畜産課長 鄭義秀 : 네. 잘알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주택계장님 제가 오전에 질문한 내용에 답변이 준비 되셨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住宅係長 朴鍾吉 : 네. 겨울공사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것은 동해 입니다. 동해에는 습식공사를 말씀드릴수가 있겠는데 콘크리트는 타설한후에 한시간 경과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양생이 시작되어서 4주, 28일간 양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8일이 지나면 설계했던 각종 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영하 4℃ 이전까지는 계속 양생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하 4℃ 이상의 날씨가 최소한 28일 이상이 유지 되어야지만 양생이 가능합니다. 우리 평창군에서는 날씨가 12월달이 되면 연평균 기온이 영하 4℃ 이하가 되기 때문에 12월 10일경부터 4월초까지 공사중지 명령일로 하고 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12월 10일쯤 되었을때 기온의 차이에 따라서 몇일간 유동된다는 말씀이지요?

○ 住宅係長 朴鍾吉 : 네.

그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용자사업도 같이 해야되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계 규정이라던가 이것을 찾아보니까 관 발주공사 외에는 민간인에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단지 사업추진의 여건이라던가

사정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어떤 추진계획에 의해서 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 李慶鎭 委員 :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봤을때는 날씨가라던가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서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관에서 적절히 작업을 유도 조정할수 있다라고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 住宅係長 朴鍾吉 : 그렇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봉평면 산업계장님하고 부면장님께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95년도 이겠지요. 년도는 없고, 11월 24일날 변훈남씨가 출장복명서 비슷한것으로 여신관리자금인출 서류 자금명세 확인서 해가지고 젓소경쟁력사업 육성사업해서 2,000만원을 인출요구해서 2,000만원을 내주신것을 두분 기억 하십니까?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네.

○ 禹康鎬 委員 : 면장님께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전혀 결재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 자료를 보여 드렸을때 그때서 서

명을 했는데 담당직원이 얘기를 안했기 때문에 하두 많은것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서명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면장님이 이 사실을 모를수가 있습니까?  
곽희중씨한테 2,000만원의 돈을 내준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면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수 있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많은 량의 결재를 하시다 보면 신경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禹康鎬 委員 : 부면장님은 기억 하십니까? 부면장님하고 면장님이 결재하는 회수가 똑같지요?

부면장님이 결재를 안하시는것을 면장님이 별도로 결재하시는것이 있습니까?

○ 蓬坪 副面長 李聖均 : 거의없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럼 면장님은 기억을 못하시는데 부면장님이 기억하실 정도면 확보한 면장님이 왜 기억을 못하실까요?

그다음 제가 하나더 질의를 하는데 광희중씨 실지 도장을 여기에 안찍었습니다. 안찍었는데 계장님하고 담당직원이나 면장님까지 결재를 다 하셨거든요. 자동인출요구서 확인서에 광희중씨가 날인을 안했습니다. 도장을 안찍었는데 어떻게 돈을 내주게 되었습니까?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그 부분은 제가 축산실무자에게 확인을 했고, 도장은 반드시 찍게 됩니다. 나가는 원본은 찍혔고, 그것은 또 1부 작성해서 결재받는것은 안찍은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 처리가 되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잘못 처리가 된것이 아니라 제대로 처리가 되었는데 도장을 안찍었는데 잘못처리된것은 아니잖아요. 도장 안찍힌것을 알고 그냥 서명해 주신것이 아닙니까?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원칙은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1부는 나가는것은 도장을 찍은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결재를 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제가 하나더 질의 하

겠습니다.

11월 14일 것은 돈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이 사실 결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12월 9일날 건축물착공 신고서 포함해서 소규모 건축신고서 부분에 대해서는 부면장님까지 서명을 하시고 면장님은 서명을 안하셨습니다. 아까 질의를 했더니 군수님하고의 관계, 속된 표현으로 죽일놈되고 병신되기 싫어서 서명을 안하셨다라는 얘기로 들을수 밖에 없었는데 11월 24일날 돈주는것은 결재를 하셨는데 12월 9일이면 몇일차이에 결재를 안하신 이유가 두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면장님 의견하고 같습니까?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그때 결재를 안하신것은 각서 정구를 당초에 받아가지고 오면 결재를 하시겠다고 해서 다시 각서를 축산담당직원이 받아가지고 각서 내용이 아주 제가보기에다 불충분 합니다. 그러니 면장님은 각서내용이 불충분하니 다시가서 받아오도록 해라 해가지고 일단 결재가 보류된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알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위생계장님이 답변하셔야 될것 같은데 사회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고래벳속 일반음식점 구조변경 허가에 대해서 위생계장께서 수차에 걸쳐서 봉평면에 가서 중용을 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社會課長 金榮柱 : 위생계장이 먼저 전임 위생계장이 8월 13일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7월 21일 이전에 민원서류가 접수되기 전에는 지금 보건소에 있는 계장이 위생계장으로 재직했고 지금현재 최진순 계장은 8월 13일자로 위생계장으로 인사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8월 1일자로 왔고, 위생계장도 8월 13일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업무를 처리한 위생계장은 출장을 나가지 못한것으로 생각 됩니다.

○ 禹康鎬 委員 : 생각이 아니고 9월 13일날 구조변경 허가처리가 되었는데 8월 1일날 오셨는데 모르면 안되잖아요.

○ 社會課長 金榮柱 : 위생계장이 8월

13일날 왔습니다.

○ 禹康鎬 委員 : 8월 13일 이라도 9월 13일이면 한달인데요.

○ 社會課長 金榮柱 : 그런데 와서 업무 파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서류에 대한 마지막 처리한 날짜가 9월 13일이니까 9월 12일날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1차 보완을 했으니까 마지막 13일날 되면 민원서류를 반려해야 하기 때문에 민원서류가 들어온것을 반려하게 되면 사실 저희들도 왜 반려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려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도 받고 저희들은 나중에 행정감사를 많이 받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이 부분은 제가 황보한 면장님께 대질질의를 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해서 물었던 내용인데 위생계장께서 군수님 지시라고 그러셨습니다. 중용을 상당히 여러번 했다고 여기에 녹취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 社會課長 金榮柱 : 저한테는 직접 그런 얘기를 한적이 없고요.

○ 禹康鎬 委員 : 그럼 과장님께서는 군수님께서 그렇게,

○ 社會課長 金榮柱 : 저에게는 직접 한 사항이 없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러면 구조변경 허가 처리가 9월 13일자로 통보가 되었는데 10월 21일까지 민원인에게 지연통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허가서를 군에서 가지고 있었습니까.

○ 社會課長 金榮柱 : 그렇지 않습니다. 9월 13일날 해서 직접 허가통보서를 면사무소에서 수령하라고 해서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면사무소로 수령하라고 했는데 실지 공문은 면사무소로 가지 않고 민원인에게 바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통례적으로 군에서 면을 통해가지고 공문을 시행해서 면허세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면허세를 징수받고 허가서를 내줘야 되는데 무슨 특별한 연유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 社會課長 金榮柱 : 공문시행은 전부 다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에다

즉시로,

○ 禹康鎬 委員 : 허가증을 직접 민원인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확인하고 사진찍고 직접 전달해 주었습니다.

○ 社會課長 金榮柱 : 그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일단 13일자 문서는 읍면까지 직접 시행이 되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과장님은 군수님한테 특별히 하라는 내용을 못받았습니까? 위생계장이 직접 받았나요?

○ 社會課長 金榮柱 : 저는 그런 사항을 받지 못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산업계장하고 부면장님, 황보한 전면장님께서 군수님한테 질책을 많이 당하시고 부면장님하고 계장님들 오시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군수님이 나한테 했다라는 하소연을 들으신적이 있습니까?

○ 蓬坪 副面長 李聖均 : 회의석상에서 한번 들은적이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아까 황보한 전면장님께서 부면장님하고 계장들을 불러서 이렇게 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셨

는데 전해들은 내용이 있으시면 잠깐만 소개를 해주시지요.

○ 蓬坪 副面長 李聖均 : 회의석상에 군수님 하고는 마음이 안맞으니까 일을 못 하겠다는 얘기는 한번 들은 기억이 납니다.

○ 禹康鎬 委員 : 그 내용을 포함해서 군수가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했다 라는 그런 하소연 섞인 내용을 계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하신적이 있습니까?

면장님께서는 그렇게 꾸밈을 분명히 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과장님께 다시한번 질의를 해 봐야겠는데 다른예도 군에서 직접 민원인에게 허가증을 줬다준 적이 있습니까?

○ 社會課長 金榮柱 : 제가 알기로는 지금 7~8개월이 되었는데 문서에다 면을 통해서 그곳에 면허세도 내고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 禹康鎬 委員 : 그런 예가 없는데 이 고래뱃속에 대해서는 왜 특별히 위생계장님께서 나가셔서 주었을까요?

○ 社會課長 金榮柱 : 민원서류를 처리

할때마다 공무원 개개인 마다 다른데 지금 위생계장은 지금 근무를 같이 해보니까 상당히 민원업무처리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려고 애쓰는 분입니다.

○ 禹康鎬 委員 : 아무리 적극적이라도 기본행정처리 틀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면사무를 통해서 면허세를 징수하지 않고 바로 위생계장이 민원인에게 주었는데 그것은 민원인을 위한 공무원의 자세는 좋다고 보아지지만 그 절차가 다른 사람에게는 안그랬는데 왜 고래뱃속에만 그랬습니까?

○ 社會課長 金榮柱 : 문서는 읍면에 직접 시행하고 위생계장이 갔다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 禹康鎬 委員 : 위생계장이 갔다줘도 허가서 받을때 일단 면허세를 내야지 허가서를 주잖아요.

○ 社會課長 金榮柱 : 면허세를 줄때 재무계와 협조를 해서 주도록 합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런데 돈도 안받고 위생계장이 허가증부터 먼저 줬다 주었습니까? 황보한 면장님 얘기에 의하면

위생계장께서 상당히 군수님이 많이 중용하는 것으로 군수가 허가를 빨리 내주라고 몇번이나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한적도 있고 여러번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 社會課長 金榮柱 : 저는 그런애기를 지금껏 듣지 못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위생계장님 계시면 정말로 그랬는지 제가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오셨는데 계장님께 반드시 이것을 확인해서 의회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 社會課長 金榮柱 : 저희 위생계 민원서류가 정선이나 영월보다 평창군이 민원처리가 상당히 많습니니다.

○ 禹康鎬 委員 : 면허세를 받았는지도 모르실것 아닙니까?

○ 社會課長 金榮柱 : 알아보겠습니다.

○ 金斗經 委員 : 김두경 위원입니다. 장시간 협조해 주신 실과소장님 및 계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시간을 오래 끌어서 간단히 얘기 하겠습니다. 아까 광희중씨 축산농가에 대해서 앞으

로 행정조치가 되면 철거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 地域計劃係長 李永範 : 건설과 지역계획계장 이영범입니다.

김두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천부분에 있는 공작물이라던지 건축물에 대해서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 지시를 3월 4일날 내린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1개월을 철거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 金斗經 委員 : 현재 그분의 여러가지 경제적 여건으로 봐가지고 또 일기로 봐가지고는 당장이라도 할수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연기가 합법적으로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計劃係長 李永範 :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할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분이 축산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다 이축을 하신다고 하면 부지정리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럴 경우는 지금 땅이 얼어있는 상태에서 지금 뜯어

다 그곳에다 지으라, 또 콘크리트 시공을 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내려가지고 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만일 그렇다면 본인이 그런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추진 한다면 저희들이 일정연기에 대해서는 재검토 해야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 金斗經 委員 : 어차피 그분은 피해가 오고 또 철거를 해야될 입장인니까 그점을 유의하셔서 적절히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광희중씨 측사 기초를 시작할때에 봉평면에서 직원 두분이 현지에 가셨을 때 도면이라던가 기타 제반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가서 확인을 해서 아예 하천이다 라고 했으면 이번에 이런 사태가 안생겼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봉평면 산업개발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저희 직원이 11월 10일경 착수가 되었을때 기초터파기를 하면서 가서 줄자를 가지고 확인 해준 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상황에서 도면은 아마 준비를 못한걸로, 만약에 그때 당시에 도면을 준비했었다라면 그런 문제가 없었지 않았나,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가 가보셨지만 옛날부터 하천의 성토한 부분보다도 원래부터 보기에 농지로 보이기 때문에 실무진들이 거기에서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 부분이 굉장히 미흡한 점이었다고 생각 합니다.

○ 金斗經 委員 : 앞으로는 이런일이 절대 두번다시 없도록 각별한 책임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주의 하겠습니다.

○ 金斗經 委員 : 아울러 황보한 전면장님이 사표는 본인의 자의에 의한것이 아니고 강요에 의한것이라 라고 아까 답변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李慶鎭 : 다음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시간이 18시를 지났으므로 금일예정

된 회의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회의일정이 남아 있는 관계로 회의를 연장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 " 동의합니다 " 하는이 있음 )

고맙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선 의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

고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李永德 : 조금전에 김두경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보한 면장님 사직원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했고, 감사과에서 왔을때에도 진술을 했습니다마는 그날 제가 가서 말씀 드린것은 지금 면장님이 지난 2월 1일 사직원을 써서 여직원에게 주고, 또 밖에 나가서서 술을 드시고 사직원을 냈다고 소문을 내시고 그런 사건과 광희중의 축사는 군수가 해

주라고 하는데 나는 위법이기 때문에 못해준다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소문을 퍼트리고 있으니까 그 진상을 파악해 보라고 군수님께서 24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 12시 20분경에 면장님실에서 면장님과 단둘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왜 그 지금 봉평면 문제가 시끄럽게 되었냐고 말씀드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군수님과의 관계를 면장님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알기는 황보한 면장님은 우리처럼 봉급을 타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면장님으로 나오실때도 그렇고, 지금 면장을 하시는 동안도 명예때문에 면장을 하시는걸로 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분이 저하고 옆에 같이 나란히 앉아 있다가 저쪽 자기 자리로 옮겨 가면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골치가 아파서 사표를 낼려고 그랬었는데, 직원들이 사표를 내지 않고 적어 놓고 말았는데,

이번 기회에 골치도 아프고 해서 사표를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종이를 꺼내서 쓰시더니까 흥분한 그런 상태이니까 찢어 내시더니까 다시 쓰시면서 과장님이 왔으니까 아주 가지고 가라고 써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여튼 과장님하고는 아무런 유감도 없고, 나중에 퇴직금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해 달라,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퇴직금은 전액 연금으로 받는 경우가 있고, 20년을 연금으로 받고, 나머지 일시금 받는 경우, 아니면 전액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내 건강도 그렇고, 나이도 지금 다 됐는데 연금을 타겠느냐, 일시금을 타도록 해 보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시자고, 그런 다음에 제가 그것을 받아서 면장님 자의로 써 주셨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온것은 65년 8월25일자로 봉평면 초임 발령을 받았습니

그리고 그후에 76년도에 가서 봉평면 총무계장을 할때 황보한 면장님은 재무계장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계장도 같이 근무를 하였고 해서 사실 내가 이걸 와야 되나, 안와야 되나 하다가 아무래도 면장님이 직을 마치시는데 명예롭지 않은 일이 생길것 같아서 왔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유감이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난번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할때에는 내가 사표를 안내면 직위해제나 파면을 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사표를 냈다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저하고 3시간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되어 면장님 의견은 의견대로, 제 의견은 의견대로 조사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제가 지금까 살아오면서 남을 강압적으로 한적은 제 양심으로 그런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여튼 그문제에 대해서 절대 강압적이 아니고 그분의 자의에 의해서 사표를 써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사표를 써주시고서 제가 사표를 받

아 그곳에서 면장님이 식사를 하시자고 해서 이 기분에 식사를 하겠습니까? 나가다 먹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나와 장평에서 점심을 먹고 2시경에 군청에 도착하여 행정계 직원이 있기 때문에 행정계 직원에게 주고 조금 있다보니까 군수님이 출장가셨다가 전화연결이 되어 봉평나갔더니 면장님이 사표를 써 주셔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군청조축회 회원들이 용평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고 축구회에 가서 축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 제가 집에 가서 짐을 챙겨서 갈려고 그러다 보니까 주태원 의원님한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왜 사표를 받냐고 해서 그것은 글썽, 사표는 접수를 했다고 말씀드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5시경에 산정회관에서 우리 직원들을 만나 저녁을 먹고 밤에 같이 있다가 밤 11시경에 제가 집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날 25일 오후쯤인가 제가

그날 몸이 안좋아 집에 계속 들어 앉아 있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몇시 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한테서 그문제 때문에 전화가 왔고, 오전에 군수님을 찾는 김두경 의원도 하셨고, 변영희장님도 하셨고 해서 그때 사표를 말씀 하시길래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렇게 말씀 드렸고, 황보한 면장님도 오후에 사표를 내 심경에 변화가 왔으니까 사표를 되들려 주었으면 좋겠다. 하셔서 사표를 어떻게 한번 냈는데 벌써 군수님까지 보고가 되었는데 되들려 줄수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내가 돈을 받아 먹고 그만 두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내가 지금 사표를 내면 안되겠다고 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황면장님이 돈을 받아 먹었다고 하시겠냐, 그러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하여튼 사표를 되들려달라고 하셔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26일 아침에 출근을 할러

고 하는데 8시경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황면장님이 전화 하셨길래 사표를 되돌  
려 달라고 해서 글썽, 사표를 내맘대로  
돌려 줄수 없고 군수님한테 전화 하십시  
요,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 하여 회의 들어 가기 전에 군수님  
한테 황면장님한테 전화 왔습니까?

하니까 안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황면장님이 토요일날 낸 사표를  
되돌려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되돌려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하니까, 이사람 사표 내는것이 장난이나  
지난번에도 사표를 냈었는데, 무슨 사표  
를 또 되돌려 주느냐, 그러시면서 그냥  
수리 하라고 하셔서 수리하게 되었습니  
다.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사표는 자의로 써  
주셨고, 단 한가지 제가 사표를 받아오  
지 말고 서류로 전달하게 하거나, 면장  
님이 직접 내시게 하시면 이런 일이 없  
었을지도 모르고, 또 한가지는 군수님한  
테 강력하게 건의 못한것에 대해서는 죄  
송하게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 金斗經 委員 :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  
다.

전 황보한 면장 얘기는 직위해제 운운,  
으로 인하여 내가 직위해제를 당하므로  
써 더 불이익이 오지 않냐, 명예문제도  
그래서 사표를 냈다.

그런데 인사규정에 별정직 5급 공무원  
의 직위해제 대상이란 규정이 있습니까?

○ 內務課長 李永德 : 직위해제 문제는  
별정직은 직위해제가 없습니다.

그 슬어는 실무진에서 조금 잘못 파악  
한 것 같습니다.

○ 金斗經 委員 : 제가 어차피 이 말씀  
을 드리는데, 그후에 변영희장이 여기에  
나왔다가 군수님을 뵈었는지, 과장님을  
뵈었는지, 그래서 황면장 사건에 나와서  
직위해제 대상의 명분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봉평 면민한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과장님이 직위해제 명  
분이 있다.

서두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내용이

포함되어 설명을 하셨는데, 그외에 강 목사라든가, 그분들 말씀이 황면장이 비 리가 있느냐, 비리가 없다, 이 명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군의 인사위원회에 거 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말씀 하셨는 데, 그때 까지만 해도 이것을 전혀 모르 신 거죠? 인사 규정을,

○ 內務課長 李永德 : 인사규정은 그때 가서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처음에 봉평 양근영 변영희장님이 여기 에 오신 것은 26일 오후 저녁때쯤 양근 영 회장님이 오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서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봉평면장님은 아무런 죄가 없다는데, 왜 군에서 사표를 받았느냐? 그렇게 말씀 하시길래 분명히 봉평면장님은 직위해제나 징계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 다.

그래서 뭐냐 해서, 첫째는 2월 1일날 사표를 내실려면 사표를 써서 면장님이 군수님한테 내든지 아니면 계장님을 통해서 군에 전달 하든지, 아니면 본인 이 와서 군수님한테 군수님 사실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내가 이러면 면 장으로써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표를 수리 하든지 나는 이렇게는 못하 겠다고 하시면 되는데, 9급 여직원 한테 사표를 내놓고 계장님들을 모아 놓고 내 가 사표를 냈다, 또 밖에 나가셔서 주민 들하고 술을 드시면서 군수의 부당한 지 시 때문에 사표를 냈다고 소문을 퍼트리 고 다니셨고, 또 약주를 드시고 다음날 오전까지 못나오시고 한 사항은 공무원 은 특별권력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더 군다나 면장님은 일개 기관의 기관장이 기 때문에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데, 특 별권력 관계에서 품위 유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직위해제나 징계사유가 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둘째는 축사사건은 면에서 면장님이 건 축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군수가 불법 을 묵인해 주라고 했는데, 군수님은 그 축사에 대해서 불법을 묵인해 주라고 하 신적도 없고, 군수님은 그때까지 축사를 짓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단지 소를 방목하는 과정에서 방목을 못

하게 하여 소 다리를 다쳐 두마리가 폐사되어 팔다보니까 농가가 500만원을 손해를 보니까, 왜 이렇게 농가에 손해를 끼치냐고 말씀하신것 밖에 없는데, 이렇게 젓소경쟁력제고 사업은 면에서도 알고 있는 사업이고, 면에서 지역주민이 하는 사업이면, 그것을 잘 지도하여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농가에 손해가 안가도록 지도를 잘 해야 하는데, 또 신고사항인데 신고도 안받고 건축을 하게 하였고, 더군다나 하천에 불법으로 하도록 놔두어서 농가에 엄청난 피해가 났으니까, 분명히 이것도 면의 면장님의 책임이 아니겠냐, 이렇게 두가지는 분명히 면장님의 죄가 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양근영 회장님이 그렇겠지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알기로는 거기서는 면장님의 얘기만 들어 보니까 면장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군에서만 죄가 있는걸로 들었다. 그러면 알았다. 가서 그대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전부 해산 시키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셨는데, 다음날 번영회장님이 가셔서 얘기해서 안들으니까, 내무과장이 와서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그날 가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날도 김의원님도 계셨지요.

그때 면장님의 상황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것이지, 직위해제를 시키겠다는 것은 면장님한테 사표를 안내면 직위해제를 시키겠다고 한것은 하지 않았습니니다.

이상입니다.

○ 金斗經 委員 : 두분의 말씀이야 서로 했다고 하고, 안했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두분의 말씀이고, 그래서 직위해제 대상이 된다는 바람에 대표자 10여명이 모였다가 분명히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명분이 바로 그것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참고인 진술을 다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자꾸 질의해서 여러가지 미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은 군수님

한데 말씀드릴 사항이지만, 인사가 지난 번에 비밀 인사도 있고 흐름의 인사도 있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군수님이 지난 24일 봉평면 한마당어울림잔치에 오셔서 인사를 운운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어느 위원이나 저에게 와서 그 대표자 위원한테 일체 말없이 다른 분한테 운운했다는 점, 저는 다시 한번 섬섬하고 유감스럽게 생각 합니다.

○ 內務課長 李永德 : 그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金斗經 委員 : 이상입니다.

○ 李洙現 委員 : 이수현 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건축물 2건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을 우선 면사무소는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농지전용, 건축신고등 제반행정사항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의 과도한 시설투자 방지지도 사후관리 지도철지, 기 지시된 사업추진 단계별 유의사항 이행철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면에 대해서 1차적으로 책임은 면사무소 관계 직원및 행정책임자에

있다고 생각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면장님하고 산업개발계장님은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1차적인 책임은 면사무소에 있다라고 생각 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 蓬坪 産業開發係長 柳永換 : 예

○ 李洙現 委員 : 그다음 지도기관, 다시 말해서 군청 축산과인데, 시설의 적정배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설의 적정배치, 사양관리기술및 경영개선지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한번도 가보지 않았습나다 여기에 대한 2차적인 책임 역시 지도기관인 군청축산과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축산과장님 별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간단하게, 없습니까?

○ 畜産課長 鄭義秀 : 예

○ 李洙現 委員 : 그다음 김두경 위원님께서 몇가지를 내무과장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그 단원서에 보면 몇가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사표를 반려하여 달라고 하였다.

이영덕 내무과장 답변은 사표를 반려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습니까?

○ 內務課長 李永德 : 25일날 사표를 반려해 달라고 하셔서 내함으로 되겠느냐, 얘기를 하다 안되어 계속 말이 전화상으로 길어 지고 하여 그러면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李洙現 委員 : 그러면 검토하겠다고 말씀 하신 부분이지 탄원서 내용대로 사표를 반려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은 아니죠?

○ 內務課長 李永德 :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벌써 보고가 되고, 접수가 되었는데 어떻게 줄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계속 이런 저런 말씀을 하시길래 나중에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李洙現 委員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慶鎮 :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본특위 활동에 관련하여 박용강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副郡守 朴容康 : 부군수 박용강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11일 불법건축물에 대한 진상파악특별위원회가 구성된후 현장확인 활동등 진위파악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신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동기 중의 하나로 사례되는 슬기롭지 못한 행정처리나 신속하지 못한 행정처리부분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지난해 7월 1일 민선자치시대가 시작된 이후 많은 지역에서 분출되고 있는 집단 민원은 순수한 지역발전을 위한

민원이 있는 반면 지역 이기, 개인 이기의 성격도 다소 포함되어 있음은 심히 유감된 사항이며, 이는 우리군이 풀어나갈 과제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그간의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심기일전하여 군정을 추진하겠다는 각오의 말씀과 함께 금번 진상 파악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심도있게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거나 개선 보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시키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특위운영기간 위원님들께서 베풀어주신 군정에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군정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李慶鎭 :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불법건축물처리등진상파악을 위한 특위활동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본 특위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은 내일 이

곳에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간사와 협의작성 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1시까지 이곳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에 적극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18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불법건축물처리등진상파악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時 25分 散會)

○ 出席委員

- |     |     |
|-----|-----|
| 委員長 | 李慶鎭 |
| 幹事  | 禹康鎬 |
| 委員  | 劉燾文 |
| 委員  | 李相薰 |
| 委員  | 李洙現 |
| 委員  | 金斗經 |
| 委員  | 金鍾永 |

○ 委員 아닌 議員

議 長 金 樂 雲

○ 出席公務員

副 郡 守 朴 容 康

內 務 課 長 李 永 德

社 會 課 長 金 榮 柱

畜 産 課 長 鄭 義 秀

建 設 課 長 洪 基 杓

都 市 課 長 權 純 喆

蓬 坪 副 面 長 李 聖 均

蓬 坪 産 業 開 發 係 長 柳 永 煥

○ 參 考 人

前 蓬 坪 面 長 黃 普 漢

蓬 坪 面 蒼 洞 里 文 鍾 玉

蓬 坪 面 坪 村 里 郭 喜 中

○ 議 會 事 務 課

事 務 課 長 李 京 植

議 事 係 長 咸 京 鎬

地 方 行 政 主 事 補 邊 相 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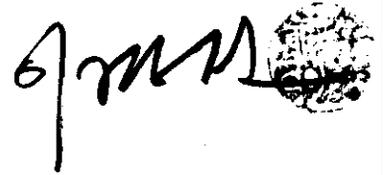
【 議 席 】

○ 議 席 表 ( 43 面 에 실 음 )

平昌郡議會 會議規則 第59條의 規定에  
의거 署名捺印함.

1996年 3 月 日

委 員 長



專 門 委 員

## 질 의 . 서 면 답 변 서

질 의	이 상 훈 위 원	답 변	평창군수(축산과장)
회 의	제3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불법건축물처리등진상파악특위 ('96. 3. 15)		
<p>&lt; 질 의 요 지 &gt;</p> <p>○ 축산농사(봉평면 광회중) 젓소경쟁력사업계획서 제출</p>			

< 답 변 >

○ 별 침

평 창 군

우·232-800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 - 2 / ☎ (0374) 30 - 2394 / 전송 33 - 6356

문서번호 축산 51521 - 915  
 시행일자 1995. 10. 30 (1 년)  
 경유  
 받음 : 내 부 결 제

취급		군 수	
보존	3 년		/
부군수			
과 장	전 결	축산 계장	 
		가축위생계장	
기안	안재구 	낙농초지계장	

제목 : '95 젓소 경쟁력사업 추진 일제점검 결과보고

1. 축산 51521-895('95.10.24)호와 관련입니다.
2. 관련호에의한 '95 젓소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 사항을 다음과같이 현지확인및 농가 지도 하고 결과 보고합니다.

가. 기 간 : '95.10.25 - 10.27(3일간)

나. 점검 사항 : 사업 추진사항 및 용자금 대출사항 확인

다. 지도사항

- 사업 부진농가 결빙전 마무리 촉구
- 용자금 미대출농가 서류수속 조기 완료
- 시설물에 대하여는 건축물 대장 작성

붙임 : '95 젓소 경쟁력 제고사업 농가 점검및 지도내용 1 부 끝.

평 창 군 수

## '95 젓소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 확인및 농가 지도사항

사업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천원)				용자금 대출 (천원)	점 검 결 과	농 가 지 도 사 항	비 고
				보조	용자	자담	계				
대화면 상안미	최인선	축사시설 싸이로	120평 30본		33,600 2,100	14,400 900	48,000 3,000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자금 대출수속중</li> <li>○ 축사시설 미착공</li> <li>○ 싸이로시설 미착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자금 대출수속 조기완료</li> <li>○ 축사시설 조기 마무리</li> <li>○ 싸이로 시설 조기 마무리</li> </ul>	'96.10.25
하안미	이희영	축사시설	50평		14,400	6,000	20,000	14,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자금대출완료</li> <li>○ 축사 시설완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젓마무리 정리 철저</li> </ul>	'96.10.25
상안미	김중근	축사시설	100평		28,000	12,000	40,000	28,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자금대출완료</li> <li>○ 축사시설 완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젓마무리 정리 철저</li> </ul>	'96.10.25
개수리	최재연	초지조성	8ha	7,940	7,940		15,880	7,9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자금대출완료</li> <li>○ 시비과중 완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젓마무리 정리 철저</li> </ul>	'96.10.25
하안5리	이상국	축사시설	60평		16,800	7,200	24,000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자서류 미확수</li> <li>○ 기초 바닥콘크리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자금대출 수속 조기완료</li> <li>○ 결빙전 사업 조기 마무리</li> </ul>	'96.10.25
개수리	이근오	축사시설	60평		16,800	7,200	24,000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자서류 미확수</li> <li>○ 부지 정리 완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자금대출 수속 조기완료</li> <li>○ 결빙전 사업 조기 마무리</li> </ul>	'96.10.25
평촌리	곽희중	축사시설 착유기 냉각기	100평 1조 1기		26,891 56,000 35,000	13,109 24,000 15,000	40,000 8,000 5,000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자서류 미확수</li> <li>○ 각종사업 미확수</li> <li>○ 업체 선정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자금대출 수속 조기완료</li> <li>○ 결빙전 사업 조기 마무리</li> </ul>	'96.10.26
도암면 차암리	김무남	축사시설	50평		14,400	6,000	20,000	14,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자금대출완료</li> <li>○ 축사 시설완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젓마무리 정리 철저</li> </ul>	'96.10.27
	신영교	초지보완	6ha	2,610	2,610		5,220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자서류 미확수</li> <li>○ 시비 과중 완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자금대출 수속 조기완료</li> </ul>	'96.10.27
	서경환	축사시설	60평		16,800	7,200	24,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자 대출서류 검토중</li> <li>○ 축사시설 사업 미확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자금 조기 대출</li> <li>○ 축사시설 조기마무리</li> </ul>	'96.10.27

# 출장복명서

결 재	계 장	과 장	부 군 수	군 수
		1차 계		

1. 출 장 기 간	'95. 10.25 - 10. 27(3일간)			
2. 출 장 지 역	평창, 방림, 대화, 봉평, 도암			
3. 수 명 사 항	젓소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사항 확인 점검			
4. 복 명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장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진 사업 확인 마무리 촉구 로 년내 사업 마무리</li> </ul> </li> <li>○ 일정별 조사내역</li> </ul>			
일 정 별	확인 지역	확인 농가수	점 검 사항	비 고
'95.10.25	방림 대화	13호	단위사업추진사항	
'95.10.26	평창 봉평	5 "	단위사업추진사항	
'95.10.27	도 암	3 "	단위사업추진사항	
개	5개지역	21 "	단위사업추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융자금 대출 사항확인 : 평창축협 대출사항 확인.</li> <li>○ 농 가 지도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부진농가 조기 마무리 촉구</li> <li>- 융자금 미대출 농가 조기 대출수속 마무리</li> <li>- 시설 사업 농가 건축물 대장 정리</li> <li>- 사업 마무리농가 사후관리 철지</li> </ul> </li> </ul>				
붙임 : 농가별 확인 점검표 각1부 끝.				

상기와 같이 출장 하였고 복명 합니다.

1995. 10. 29 .

출 장 자 직 명 : 지방축산주사보 성 명 : 안 재 구 

# '95축산분야 농이촌발전 대책사업 추진점검표

[ ] 사업명: (한우, 젓소) 경쟁력 재고사업

[ ] 대상농가 주소: 평창군 영평 읍면 영호 1 리

성명: 곽희중 (전화번호: 32-0064)

[ ] 융자금 집행상황

지원 계획 총액	대출 수속			이신계좌 입금총액	농가 수령액	특기사항 (현.시.군.읍.면)
	미차수	집수기포중	대출결정			
32-PP1	0					56

[ ] 사업추진 상황

0 건축물(축사, 창고)

시설명	사업량 (평)	추진 상황						사용 개시	건축물 대장
		미차공	부지 정지	기초공사	벽체(기둥)	지붕	마감		
축사	100	0							

※ 미차공 및 사유: 사업자 재능 부족 (p. 10, 23) . 업체선정중.

0 부대 시설(싸이로, 하유시설, 운동장시설, 용수시설)

시설명	사업량 (톤, 두분)	형식	시공업체	추진 상황				비고
				미차공	계약완료	공사중	마감	

※ 미차공 및 부진사유:

0 조지조성 및 기성조지보완사업

사업구분	사업량 (ha)	추진상황				자재회보
		미착수	장애물제거	회입	시비, 파종	
						○비료: ○농용식회:

※ 미착수 및 부진사유:

0 기계 및 장비구입(농용트럭, 트랙터, 트랙터부속장비, 밧짚수거기, 애취기, 냉각기)

장비명	사업량 (대)	형식	제작업체	추진상황			사용개시
				미구입	계약완료	구입완료	
짚수거기	12			0			
냉각기	12			0			

※ 미착수 및 부진사유: 사업적용 지연 (10.23)

0 전입도로 및 목로개설, 목책시설사업

사업구분	사업량	시설장소 (지번)	시공업체	추진상황			
				미착공	계약완료	공사중	사업완료

※ 부진사유 및 대책:

□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건의사항:

점검일자: 1995. 10. 16.

점검자 소속: 홍산리 직명: 홍산 주사님 성명: 안래구 (인)

점검자 소속: 직명: 성명: (인)

평 창 군

우232-800/강원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0374)30-2392/전송33-6356/담당 김 용 원

문서번호 축산 51521 - 896  
 시행일자 1995. 10. 24 (3년)  
 경유  
 받음 받는곳참조  
 참조

취급	제 송	군 수
보존	5년	
부군수		
과 장	전 격	
기안	김용원 	축산계장  협조

제목 '95축산분야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지도 점검실시

1. 축산51521- 521 ('95. 7. 21)호 및 동51521- 735 ('95. 9. 1)호와 관련입니다
2. '95축산분야 농어촌 발전대책 사업으로 추진중인 축종별경쟁력 제고사업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것으로 사료되나
3. 일부농가에서는 아직도 사업추진이 극히부진하여 년내 사업마무리가 매우 우려되어 불임과같이 일제 점검후 미비사항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코저하니 읍,면에서는 농가 점검시 적극협조하기 바라며
4. 평창축협에서는 사업대상 농가별 용자금대출 현황을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며 감사하겠 습니다
5. 지도점검 계획
  - 가. 기간 : '95. 10. 25 - 10. 27 (3일간)
  - 나. 대상 : '95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 참여농가 34개소 (한우:11, 젓소:18, 양돈:1, 양계:2, 기타가축:1, 흑염소가공시설:1)
  - 다. 지도점검반 : 군 :2명(젓소:안재구, 한우, 돼지, 닭, 기타가축, 흑염소가공시설 : 김용원)
  - 읍면 : 각1명 (축산담당 실무자)

라. 읍,면별 실시일정

0 평창,미탄,방림 — 15개소 — '95. 10. 25

0 대화,봉평,용평 — 9개소 — '95. 10. 26

0 진부, 도암 — 10개소 — '95. 10. 27

마. 중점 지도점검사항

0 농가별 세부사업별 추진상황

0 농가별 용자금 집행상황

0 기타 사업추진상 문제점등

첨부 : 지도 점검표 1부. 끝,

평 창 군 수

받는곳: 도(1- 8), 평창축협장

# 축산분야사업신청서

주 소	평창군 봉령읍, 면 봉령 1 리			전화번호	32-0054
조직 또는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5-0309 -116613	성 명 (대표자)	곽희중
	신청사업명 '95년도 경영목차사업				
소 요 사 업 비 (천원)	총 액	중앙보조	중앙용자	지 방 비	자 부 담
	5,000		26,997		10,009
세부 계획	이 면 참 조				
사육 기반	사육 시설 : 축사- 90평, 창 고- 평, 싸이로- / 기				
	조사료기반: 초지- ha, 사료포- 3 ha, 기타- / ha				
신청 축종 사육 경력	1995년 5월 부터 95년 9월 까지 ( 11 년)		최종학력	년 월 일	
				봉령중학교	
축산교육 및 훈 련	기 간 (년월일)		교 육 분 야		실 시 기 관 명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림수산정책자금용자관련자료 1부. 끝

위와 같이 95년도 사업신청계획서를 제출합니다.

1995년 10월 일

신청자 :

곽희중



평창군 수 귀하

# 축산분야사업계획서

**현 황**

- 현축종 및 두수 : 축종 - 젖소, 사육두수 - 43 두
- 향후 사육 계획 : 100 두 (2년내)
- 노 동 력 : 가족노동력(남 / 명, 여 / 명) · 고용노동력      명

**사업계획**

- 사 업 명 : 양젖소양육사업
- 세부사업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중 앙 지 원			지방비	자부담
			소 계	보 조	응 자		
<u>축사시설</u>	<u>10실</u>	<u>40,000</u>	<u>26,991</u>		<u>26,991</u>	<u>13,109</u>	
<u>축유시설</u>	<u>1실</u>	<u>8,000</u>	<u>5,600</u>		<u>5,600</u>	<u>2,400</u>	
<u>별각기</u>	<u>1대</u>	<u>5,000</u>	<u>3,600</u>		<u>3,600</u>	<u>1,400</u>	
<u>계</u>		<u>53,000</u>	<u>36,191</u>		<u>36,191</u>	<u>17,909</u>	

- 자부담 자금 조달계획 : 유대금 및 농산물 판매대금
- 시설물의 경우 부지확보계획 : 공정면 경관 1차 289번지 내(경관차)  
(지용허가 완료)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부지관리, 10월 20일, 축사설치, 11월 20일, 축유시설, 11월 30일
- 기타특기사항 :

# 농림수산정책자금 용자관련 자료

( 96년 9월 29일 현재 )

1. 사업신청자 인적사항 및 사업신청 내용

주 소	경천군 본성면 경촌 1리			전화번호	32-0054		
주소·단체·회사명	주민등록(사업자)번호	52080P - 1165613		대표자(성명)	곽희중		
신청사업명	개인(소유)	연	40,000천원	법인·단체(자본금)	천원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조	용자	3,599	자부담	19,009

2. 재산상태

(단위 : 천원)

재 산 현 황 (담보제공가능물건)						예 금 (공 제) 현 황		
소재지	소유자명	종 별	면 적	예 상 평가액	기 담 보 실 정 액	기관명	종 류	금 액
경천 1리	곽희중	전	23,140㎡	140,000				
금융기관 부채현황								
						기관명	대출일	상 환 기 일
						축 2개	92.	금 액
								100,000

※ 재산현황에는 토지, 건축물, 선박, 공작, 가축부수 등 포함

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부 대출회명액 : 37,100 천원

작성 기 : 성명 곽희중

# 신용상태 및 대출가능액 검토의견서

( 2011년 10월 6일 기준 )

## 1. 사업신청자 인적사항 및 사업신청 내용

주 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대로 12			전화번호	32-0064	
조직·단체·회사명		주민등록 (사업자) 번호	50309 -1106613	대표자 (성명)	박 희 중	
신청사업명	'11년 10월 6일 신청					
소요사업비	총액	52,000천원	보조		융자	22,100
					지부담	16,900

## 2. 재산상태

자산종류	수 량	예상평가액	부채종류	차 입 처	금 액
전	03140	140,000천원			천원
계			계		

## 3. 조합 거래상황 및 신용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원여부 : 여 부</li> <li>○ 조합이용도 : 적극, 보통, 거래없음</li> <li>○ 과거 1년간 연체사실 : 유, 무</li> <li>(조사기준일 연체금액) : 천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도, 대위변제사실 : 유, 무</li> <li>○ 신용상태 : 양호, 보통, 불량 (개인신용정보 조회표 활용)</li> </ul>
--	--

## 4.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 량	대출가능액	담보물건소제지	소유자(권계)
신용대출			천원		
신용보증					
담보대출	전	287.2m	40,000		
합 계		287.2m	40,000		

※ 담보대출의 담보종류는 대지, 건물, 전답, 과수원, 임야, 공장, 선박등으로 구분

## 5. 종합의견

심사조각장 (인)

趙張秀哲



(인)